

2018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2018. 1.

취업성공패키지
취업



목차 CONTENTS



2018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 계획

1부

취업성공패키지 세부 운영

제1장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체계

I.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체계	21
1.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규모 및 전달 체계	21
2. 고용센터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1
3. 고용센터별 및 민간위탁기관 간 협의체 구성	22
II.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서비스 내실화	23
1.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 1인당 상시관리인원	23
2.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 지원체계 표준화	23
3. 각종 증빙자료 간소화 및 표준화	26
III. 2018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적용	27
<참고>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28

제2장 참여대상자 선정

I.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공통기준)	37
1. 참여자 선정 기준	37
2. 참여대상자 제외 기준	43
II.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Ⅰ 유형)	48
1. 저소득층	48
1.1. 생계급여수급자	48
1.2.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50
1.3. 취업맞춤특기병	50
1.4.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50
2. 특정계층	51
2.1.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51
2.2. 북한이탈주민	51
2.3. 신용회복지원자	51
2.4.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51
2.5. 위기청소년	52
2.6. 니트족(NEET)	52
2.7. 여성가장	53
2.8. 국가유공자	53
2.9.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54
2.10. 건설일용직	54
2.11. 장애인	54
2.12. FTA 피해 실직자	55
2.13. 미혼모·한부모	55
2.14. 기초연금수급자	55

Ⅲ.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Ⅱ유형)	56
1. 청년층(만18~34세 이하, 소득기준 미적용)	56
1.1.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56
1.2.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재학생	56
1.3. 대학교 및 대학원 마지막 학기 재학생	56
1.4. 대졸이상 미취업자 : 대학교(전문대 포함)를 졸업한 자	56
2. 중·장년층(만35~69세 이하)	57
2.1.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미취업자	57
2.2. 기타	57
Ⅳ. 참여대상자 선정절차 및 요건 확인	60
1. 참여대상자 선정 절차(Ⅰ·Ⅱ유형 공통)	60
1.1. 개 요	60
1.2. 참가신청서 접수	60
1.3. 사업 및 일정 등 안내	60
1.4. 참여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	61
1.5. 참여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62
2. 참여자격 관련서류 확인	62
2.1. 취업성공패키지Ⅰ	62
2.2. 취업성공패키지Ⅱ	66

제3장 단계별 취업지원 내용

Ⅰ. 제1단계 : 진단·의욕증진·경로설정	69
1. 1단계 과정의 의의 및 절차	69
1.1. 의 의	69
1.2. 취업활동계획 수립 절차	69

2. 1단계 운영원칙 및 운영기간	70
2.1. 운영 원칙	70
2.2. 운영 기간	71
2.3. 상담내역 기록	72
3. 1단계 세부프로그램 내용	72
3.1. 초기상담 및 구직등록	72
3.2. 참여자 취업역량평가	74
3.3. 직업심리검사 실시 및 결과 해석	80
3.4. 근로의욕 증진·취업기술 향상 프로그램 참여	83
3.5. 전문심리상담서비스(EAP)와의 연계	86
3.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비스 연계	88
3.7.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90
II. 제2단계 : 직업능력·직장적응력 증진	91
1. 개요	91
1.1. 의의	91
1.2. 운영 원칙	91
1.3. 2단계 운영기간	92
1.4. 2단계 연계 가능 프로그램의 종류	93
2.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과의 연계	94
2.1. 기본 원칙	94
2.2.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96
2.3. 폴리텍대학 훈련	100
2.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	101
2.5. 고용노동부 인증 훈련기관의 계좌적합훈련과정 외의 훈련과정(미인정훈련과정)	101

2.6. 청년취업아카데미	102
3. 해외취업(K-Move 스쿨, 해외인턴, 기타 해외취업 등)	102
4. 창업 지원 연계	103
4.1. 개 요	103
4.2. 창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조치	104
4.3. 창업지원 관련 유관기관에 대한 조치	104
5. 기타 훈련	105
6. 2단계 다양화를 위한 특례(만 34세 이하의 I, II유형 모두 적용) ·	105
7. 2단계 종료 및 행정 처리	105
7.1.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관련 전산 조치	105
7.2. 훈련참여지원수당 수급자 등에 대한 관리	106
7.3. 2단계 종료자에 대한 3단계 연계	106
Ⅲ. 제3단계 : 집중 취업알선	107
1. 집중 취업알선의 개념	107
2. 집중 취업알선의 의의	107
3. 집중 취업알선의 기본원칙	107
4. 집중 취업알선 실시시기	110
5. 집중 취업알선 실시방법	110
6. 집중 취업알선 실시 시 고려사항	112
7. 집중 취업알선 과정의 시스템 입력	112
8. 고교 재학생의 취업마감 처리	113

9.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등 사전안내 및 지급대상자에 대한 사전관리 철저	113
10. 고용촉진지원금 제도 안내(관련 고시 참조)	113
11.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안내(관련 지침 참조)	114
IV. 제4단계 : 사후관리	116
1.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116
1.1. 사후관리의 개념	116
1.2. 사후관리의 의의	116
2. 사후관리의 제공	116
3. 취업성공수당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117
V. 기타 : 일반계고 재학생에 대한 단계별 서비스	118
1. 추진배경	118
2. 주요 변경내용	118
3. 참여경로별 세부 운영방안	118
3.1. (1 경로: 일반계고 2학년생의 경우) 1→2→3단계 경로 ..	119
3.2. (2 경로: 일반계고에서 비진학이 既 결정된 3학년 대상) 1·2단계 통합운영 경로	119
4. 참여자 수당 지급	120
5. 기타	121
5.1. 참여자 모집	121
5.2. 단계별 운영 관련	121

제4장 단계별 수당 지급

Ⅰ. 사전단계 참여수당	125
1. 지급목적	125
2. 지급대상	125
3. 지급방법	125
Ⅱ. 1단계 참여수당	126
1. 지급목적	126
2. 지급대상 및 요건	126
3. 지급 금액	126
4. 지급시기 · 방법 및 절차	130
5. 유의사항	130
Ⅲ.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132
1. 지급목적	132
2.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대상	132
3. 훈련참여지원수당 부지급 대상	133
4.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액	135
5.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기간	135
6. 출석일 인정 및 출석률 산정	136
7. 수당지급일수 산정원칙	137

8.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시기·방법 및 절차	138
8.1.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시기	138
8.2.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단위기간 산정	138
9.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방법	139
10.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절차	139
11.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 시 유의사항	140
11.1. 훈련참여지원수당 신청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철저 ...	140
11.2. 여타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140
11.3.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기일 준수	140
11.4. 2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관련 신청시점 등 관련 사항 안내	140
11.5. 징구서류 : 훈련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141
12.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관련 전산 조치	141
13. 훈련참여지원수당 수급자 등에 대한 관리	141
14. 훈련참여지원수당 환수	141
IV. 3단계 참여수당	142
1. 지급목적	142
2.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142
V. 3단계 청년구직촉진수당	143
1. 지급목적	143
2. 지급대상 및 요건	143

3. 상호의무협약체결 및 구직활동이행	144
3.1. 상호의무협약체결	144
3.2. 구직활동이행계획 수립	144
3.3. 구직활동이행결과보고서 제출 및 점검	145
4. 구직촉진수당 지급	145
5. 자치단체 등 유사사업과의 중복방지 방안	146
VI. 취업성공수당	149
1. 취업성공수당의 의의	149
2.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자	149
3.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149
3.1. 취업의 경우	150
3.2. 창업의 경우	153
4. 취업성공수당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155
4.1. 취업성공수당 지급방법	155
4.2. 취업성공수당 지급시기	156
4.3. 취업성공수당 지급절차	156
5. 타 지원제도와와의 관계	157
6.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 등의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여부 ...	158
7. 취업성공수당 지급 시 유의사항	159
8. 취업성공수당 지급 관련 전산 조치	159
9. 취업성공수당 환수	159
VII. 타인명의의 계좌 사용	160

제5장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I. 취업지원 종료	165
1. 취업지원 종로의 의의	165
2. 취업지원 종료사유	165
3. 취업지원 종료절차 : 취업지원 종료사유별	165
3.1. 취업지원기간 만료자의 경우	165
3.2. 취업지원기간 중 취(창)업한 경우	166
3.3. 취업맞춤특기병 참여자의 군입대	166
4. 취업 후 1개월 미만 퇴사자에 대한 취업지원 종로의 특례 ..	166
4.1. 예외적 특례 적용	166
4.2. 특례 적용요건	167
4.3. 특례 적용효과 및 유의사항	167
II. 취업지원 중단	168
1. 취업지원 중단의 개념	168
2. 취업지원 중단의 의의	168
3. 취업지원 중단의 사유	168
4. 취업지원 중단의 절차	171
4.1. 민간위탁기관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 중단 절차	171
5. 취업지원 중단의 효과	171
III. 취업지원 유예	173
1. 취업지원 유예의 개념	173

2. 취업지원 유예의 사유	173
3. 취업지원 유예의 기간	174
4. 취업지원 유예의 절차	174
5. 취업지원 유예의 효과	175
IV. 취업지원 이관	176
1. 취업지원 이관의 개념	176
2. 취업지원 이관의 의의	176
3. 취업지원 이관의 기본원칙	176
4. 취업지원 이관의 절차	176
4.1. 민간위탁기관 참여자에 대한 이관절차	177
5. 취업지원 이관의 효과 및 후속조치	177
6. 행정사항	178
V.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부정수급 조치	179
1. 참여자의 부정수급 유형	179
1.1. 부정수급의 개념	179
1.2. 부정수급 유형	179
2. 부정행위에 따른 조치	180
2.1. 부정수급액 환수	180
2.2. 부정수급자의 재참여 제한	180
2.3. 자진신고자의 처리	180

2.4.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	180
2.5. 부정수급자 전산망 입력	180
2.6. 부정수급 규정 적용	180

2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운영 지침(개정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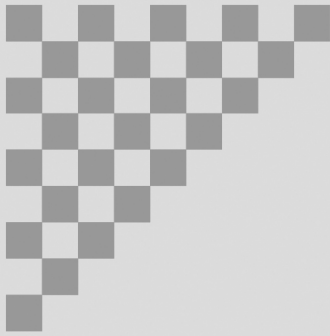
I.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개요	183
1. 추진배경	183
2. 실시 시기 및 지역	183
3. 단계별 운영 방안	183
II.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운영	185
1. 조건부수급자 고용센터 우선 의뢰	185
2. 사전단계 세부 운영 지침	186
3. 자립지원직업상담사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197
<참고 1> 취성패 사전단계 실시지역 및 자립상담사 취성패 운영 지역	199
<참고 2> (보건복지부) 자활근로 참여기간 제한기준 통보	202
III. 생계급여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204
<참고> 2인1조 밀착관리 서비스 가이드	207

I. 민간위탁사업 운영방향	211
1. 개요	211
2. 주요내용	211
2.1. (위탁사업비) ‘기본금’과 ‘성공금(인센티브)’으로 구성	211
2.2. 위탁사업자의 사무소 개설 관련	213
2.3. 공모대상 지역 및 선정기관 수	213
II. 민간위탁기관 선정 및 관리	214
1. 위탁기관 선정	214
1.1. 자격 요건	214
1.2. 시설 요건	215
1.3. 인적 요건	216
1.4. 취업지원프로그램 요건	217
1.5. 위탁기관의 소재지 변경	218
2. 위탁기관 관리	218
2.1. 고용센터 역할	218
2.2. 위탁기관의 사업추진	219
2.3. 추진상황 모니터링	219
2.4. 위탁약정 해지	219
3. 취업성공패키지 별칭, 로고, 간판 등 사용	220

Ⅲ. 참여자 모집 및 배정	225
1. 참여자 모집	225
2. 참여자 배정원칙 및 절차	225
Ⅳ. 위탁업무 처리 절차	226
1. 위탁절차 개요	226
2. 위탁기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용	226
2.1. 기본원칙	226
2.2. 취업지원 및 추진실적 관리	226
3. 직업훈련 참여 지원	227
3.1. 기본원칙	227
3.2. 훈련참여 요건 강화	227
3.3. 직업훈련 참여 지원 절차	228
4. 참여자 특성에 맞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28
5. 참여자 수당 지급	229
6. 행정사항 및 유의사항	229
6.1. 위탁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229
6.2.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 업무담당자 간담회 개최	229
Ⅴ.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세부 프로세스	230
1. 추진배경	230
2.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기본 운영방향	230
3. 참여대상 : '15년 추경 이후 Ⅱ유형 청년층 참여대상을 유지	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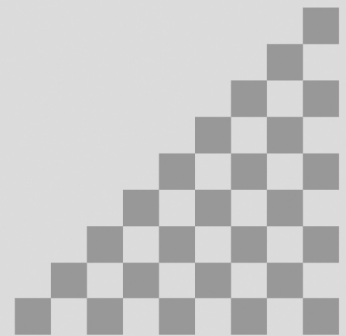
VI. 위탁수수료 지급	233
1. 위탁수수료 지급 기준	233
1.1. 기본금	233
1.2. 취업인센티브	236
2. 위탁수수료 신청 및 지급	238
2.1. 기본금	238
2.2. 취업인센티브	239
3. 위탁수수료 관리 및 사용	240
4. 위탁수수료 반환 및 회수	240
VII.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의 부정수급 조치	242
1. 위탁기관의 부정수급·부당인출 유형	242
1.1. 부정수급·부당인출의 개념	242
1.2. 부정수급·부당인출 유형	242
2. 부정수급 등 위탁약정서 위반에 따른 조치	243
2.1. 부정수급·부당인출액 반환	243
2.2. 부정수급·부당인출에 대한 조치	243
2.3. 형사고발	244
VIII.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245
1. 목적	245
2. 지도·점검 근거	245
3. 지도·점검 대상	245

4. 지도·점검의 종류	245
5. 지도·점검 절차	246
5.1. 지도·점검 절차	246
5.2.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통보	247
5.3. 지도·점검 사전 준비	248
5.4. 지도·점검 실시	249
5.5. 지도·점검 결과 보고	250
6. 자료요청 및 위원회	250
7. 위탁약정서 및 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	251
7.1. 일반기준	251
7.2. 개별기준	252
IX. 민간위탁사업 평가	254



2018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 계획**



I 2018년도 사업계획 주요 내용

1. 사업개요

- 참여자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 1년간 「상담·진단·경로 설정(1단계) → 훈련·인턴 등 직업능력증진(2단계) → 취업알선(3단계)」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만 18~69세 저소득층 및 미취업 청·장년 등 취업취약계층
 - (I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및 특정취약계층*
 - *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위기청소년(15~24세), 신용회복지원자, 노숙자, 결혼이민자 등
 - (II 유형) 청년(18~34세, 소득무관) 및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수당 지급

구분	1단계 (상담·진단)	2단계 (직업능력향상)	3단계 (취업알선)
패키지 I	● 3주~1개월 ●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 최장 8개월 ● 훈련비 300만원(내일배움카드, 자부담 최대 10%) ● 참여수당 최대 40만원(6개월)	● 최장 3개월 ● 취업성공 시 최대 150만원 지급 ● 청년 구직촉진수당 30만원, 최대 3개월
패키지 II	● 1주~1개월 ● 참여수당 최대 20만원	● 최장 8개월 ● 훈련비 200만원(내일배움카드, 자부담 5~50%) ● 참여수당 최대 40만원(6개월)	● 최장 3개월 ● 청년 구직촉진수당 30만원, 최대 3개월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개정시 자부담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목표 및 예산: 총 311,000명 (5,029억원)

- 지원 목표인원 311,000명, 5,029억원(청년구직촉진수당 1,728억원)
- 유형별 목표인원: I 유형 121,000명, II 유형 190,000명(청년 16만명, 중장년층 3만명)

3. 주요 내용

① 기본방향

- 취업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참여대상 조정
- 취업성과 제고(임금수준, 고용유지율 등)를 위한 위탁사업 효율성 제고
-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사 처우개선 및 교육확대
- 단계별(1, 2, 3단계) 프로그램 내실화

② 참여대상의 합리적 조정

- 실업급여 수급자는 수급기간 종료 후 참여 허용, 대학 재학생은 마지막 학년 2학기*부터 참여(現 1학기)
 - * 고등학생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직업훈련 지원 및 대학 비진학에 대한 숙려 기간 필요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마지막학년부터 참여 허용
- 조건부 수급자는 연구용역*을 통해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 참여기준 개편방안을 마련 후 별도 시달('18.上)
 - *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제도 개편연구(보사研-노동研 공동, '17.9~12월)
 - ** 개편안: 現) 모든 조건부 수급자의 고용센터 우선 의뢰 → 改) 조건부 수급자 중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가능한 자를 중심으로 이관대상 축소
- 어린이집 교사로 취업진로가 정해진 유아교육과 재학생 참여 제한
 - * '16년 의·치학, 간호학 재학생 참여 제한 → '17년 유아교육과 재학생까지 확대
- (재참여 제한 강화) 직전회차 취업성과(1년 이상 취업여부)에 따라 1년 또는 2년 6개월간* 재참여 제한
 - 시행시기 및 대상: '18.1.1. 이후 참여자부터 적용(초기상담일 기준)

* '17년도 이전에 초기상담일이 있는 참여자 중 既 공지된 재참여 제한 기간 보다 변경된 규정이 불이익한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18년도 이후 최초 참여신청시 1회만 적용)

- (중단절차의 실효성 제고) 현행 중단사유 중 '고용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중단 결정권한을 갖는 위원회 신설**

*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취업지원의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포함

** 외부위원이 다수로 구성된 위원회 개최 등 규정 신설

③ 단계별 프로그램 내실화

- 1단계 상담·진단의 질 제고

- 유형별(저소득층, 청·중장년층) 취업역량진단을 보다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형 취업역량평가 지표 시달('18.1월~)
- 취업역량에 따라 상담기간을 유연화하여, 취업역량이 높은 구직자의 조기 취업성공을 지원(21일 → 7일 이상으로 1단계 단축, II유형만 적용)

- 2단계 프로그램 다양화

- 참여자 수요의 정기적 조사,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빅 데이터, 스마트제조 등) 과정 확대*, 타 부처 훈련과정 등도 지속 연계
- * ('17년) 11개 기관, 24개 훈련과정, 626명 대상 교육·훈련 실시중 (예산 99.6억)
('18년) 20개 기관, 50개 훈련과정, 1,000명 대상 교육·훈련 실시목표 (예산 200억)
- 일경험 사업(예: 강소기업탐방, 중소기업 취업연수), 해외취업프로그램 (예: K-MOVE 스쿨), 중기부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발굴·연계(계속)

○ 3단계 취업알선 지원 강화

- 위탁기관 평가지표에 '1년 고용유지율'을 신설하여 장기 근속이 가능한 취업처로 연계 유도
- 고용촉진지원금,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강소기업 등에 알선 및 장기근속 유도

④ 청년구직촉진수당 집행 철저

○ 수당지급관련 서식* 통합 및 민간위탁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현장의 원활한 예산집행 지원

* 구직활동이행계획서와 구직활동이행결과보고서를 통합하여 월 1회 작성

** '상호의무협약 체결률' 및 '청년구직촉진수당 집행률'을 평가지표에 포함

○ 온·오프라인 홍보*를 연초에 집중 실시하여 조기집행 추진

* ▲홍보리플릿 배포 ▲버스·지하철 옥외광고 ▲SNS, 웹드라마 활용 온라인홍보

⑤ 상담사 교육확대 및 1인당 적정 관리인원 명시

○ (상담사 교육확대 및 우수사례 공유 확대) 상담인력에 대해 기본·심화 과정별 교육과정 설계 및 과정 개설확대

- 제2회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상담 우수사례 공유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우수 상담사례 확산을 유도('18.11월 예정)

○ (상담사 1인당 적정 상담인원 관리) 대상별·유형별 권장 상담 인원을 업무매뉴얼에 포함하고, 해당 기관의 적정 상담인력 운영을 유도

- 대상별 적정 상담인원은 조사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적정범위 설정
- 본부-고용센터 협의체를 구성, 모니터링·간담회 등을 통해 적정 인력 운영 유도

⑥ 취업성과 제고를 위한 위탁사업 효율성 제고

- (크림스키밍(cream skimming)¹⁾ 방지) 위탁비 성공금은 취업 역량이 낮은 참여자를 취업에 연계시킬 경우 지급액 인상*(취업역량이 높은 경우는 지급액 인하)
 - * 취업역량이 낮은(A, B 등급) 참여자: 취업처 임금수준 등에 비례하여 30~160만원 지급
 - 취업역량이 높은(C, D 등급) 참여자: 취업처 임금수준 등에 비례하여 10~140만원 지급
- (겸업기관 등의 위탁비 조정)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 직업훈련 겸업기관 및 대학내 분사무소에 대해 위탁비 기본금 축소
 - *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수익성 및 적정 위탁단가 분석('16.12~'17. 5)
 - 직업훈련 겸업기관: 3단계(취업알선) 중 중복되는 비중(1/3수준)을 고려하여 40만원 → 25만원으로 조정
 - 대학내 분사무소: 시설비·사업운영비 절감가능성을 고려해 40만원 → 30만원으로 조정
- (고임금 일자리 연계)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 위탁사업비 성공금은 165만원 이상(現: 140만원 이상) 취업처 연계 시 지급
 - 위탁기관 평가시 '취업처 임금수준' 관련, 가점확대 및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임금 상황*
 - * 案) 가점 확대: 現) 5점 → 改) 10점,
 - 기준임금(만원): 現) 160이상 → 改) 190이상 ('18년 최저임금의 120% 수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

1) 취업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참여자를 선별적으로 모집하여 위탁사업비 수입을 보다 수월하게 증가시키는 행위

- (위탁기관 선정시 취업성과 측면 평가 확대) '17년도 중장년층 모집 실적, 청년 구직촉진수당 집행실적 등을 정량지표로 포함
 - 이를 통해 정량지표의 비중을 현재 20% → 50% 이상 확대하여 선정의 객관성 제고(관련 실적이 없는 신규 기관은 기존 심사기준 적용)
 - * '17년도 선정심사기준: 사업계획의 타당성(30점), 사업계획의 독창성(15점), 사업수행 능력(35점), 인적자원 투자계획(20점) (밑줄: 정량지표)
- (위탁기관 퇴출기준 강화) 최하위 등급 비율 상향(10→15%) 조정하여 퇴출대상 확대
 - * '17년: 5등급(A 10%, B 25%, C 30%, D 25%, E 10%)
 - '18년부터는 4등급 체계(A 20%, B 40%, C 25%, D 15%)로 개편
- (파견업 취업연계 등 지양) 파견업체 채용 및 위탁기관 자체 채용*의 경우, 취업실적으로 불인정
 - * 취업실적 확보를 위해 단기고용 후 해고하는 부작용 방지목적
- 위탁비 성공금 지급요건 강화: 참여자가 파견업체에 취업한 경우, 사회적 기업(사회적협동조합)인 위탁기관에서 참여자를 자체 채용한 경우는 위탁비 성공금 부지급
 - * 현재 사회적기업 등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과다 지원논란 있음
- (상담사 처우개선) 현행 선정심사시 인적자원 투자계획(임금지급수준, 교육 계획 등) 지표의 비중 확대(案: 20점 → 30점)

II

대상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개요

구 분	사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사후관리	
생 계 급 여 수 급 자 (패 키 지 I)	고용센터 접근성 높은 지역	취업 가능자	최소 2주 집단상담프로그램 IAP 수립	6개월 자치단체 직업 훈련 적극연계	3개월 동행면접 강화 구직기술·이력서 컨설팅 지역 일 자리 센터 연계 구인 발굴	3개월 구인정보 제공 취업알선 탈수급 현황 관리 근속유도
		밀착 사 례 관 리 대 상 자	6주+예외적 4주 연장 단기문제해결·롤모델상담 직업-심리검사 (자존감·자기효능감 척도, 사회적 바람직성척도, 일반정신건강척도 등) EAP 연계 강화 취업애로요인 (양육, 돌봄, 주거, 건강 등) 파악 및 복지서비스 연계 - 취업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고용 센터·자치단체 사례관리 회의 - 취업애로요인별 특화 프로 파일링 실시 집단상담프로그램 원칙 취업애로요인 해소방안 포함 IAP 수립 ▲ 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와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2인 1조 밀착관리 → 주1회 대면상담 필수(1단계), 필요시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 지역 내 사회서비스 기관과 MOU 등 지청(센터)별 고용-복지 네트워크 구축 ▲ 민간자원(종교단체, 기타협회, 각종 사회공헌, 개인기부 등) 탐색 및 연계 ▲ 취업 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1단계 기간 연장(4주) 및 참여 유예 활성화	6개월+2개월 내일배움카드 우선 발급 청·장년 인턴 우선 연계 일학습 병행제 지원 확대 자치단체 직업 훈련 적극연계	3개월+3개월 알선 서비스 연장 지원 동행면접 원칙 구직기술·이력서 컨설팅 모의면접 강화 지역 일 자리 센터 연계 구인 발굴 지역내 틈새 일자리 발굴을 위한 일 자리 네 트 워 크 활용	3개월 구인정보 제공 취업알선 탈수급 현황 관리 근속유도
	고용센터 접근성 낮은 지역 사전 단계 미 실시	근로능력 미약자 → 자치단체 이관(자활근로 배치)				
		자활역량평가 실시 후 의뢰 → 취업가능자 프로세스 동일 ▲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직접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자 치 단 체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IAP 수립 등 전담 취업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지역 사회복지 자원 연계	기초훈련 상담 자치단체 훈련 및 지역 일자리 인턴지원	지역일자리지원센터 연계 알선 동행면접 실시
		고 용 센 터	1단계 서비스 현황 공유 집단상담 지원 수당지급, 행정 업무 지원	직업훈련 적정성 판단 내일배움카드 발급	알선 및 동행면접 지원	
일 저 소 득 중 및 특 정 계 층 (패 키 지 I)	-	3주~4주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프로그램 IAP 수립	6개월 국기·폴리텍기능사, 내일배움카드, 창업지원	3개월 취업알선 직업정보제공 동행면접	3개월 구인정보제공 취업알선 근속유도	
중·장년 (패 키 지 II)	-	3주~4주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프로그램 IAP 수립	6개월 국기·폴리텍기능사 내일배움카드 창업지원	3개월 취업알선 직업정보제공	3개월 구인정보제공 취업알선 근속유도	
청년 (청년 취업성공 패 키 지)	자가진단 취업지원 유형에 대해 자가진단 (On-Off line)	1주(상담 2회이상)~4주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프로그램 IAP 수립	6개월 국기·폴리텍기능사 내일배움카드 해외취업, 창업지원	3개월+3개월 취업알선 직업정보제공	3개월 구인정보제공 취업알선 근속유도	

III

'17년 대비 '18년 사업계획 주요 변경사항

구분	'17년	'18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체계		
운영규모	361,000명 * 저소득 13.6만명, 청년 19만명, 중장년 3.5만명	311,000명 * 저소득 12.1만명, 청년 16만명, 중장년 3만명
운영위원회	-	○ 고용센터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위원회(5~7명) 구성 * 업무매뉴얼 적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판단이 곤란한 사안(참여자격판단, 중단, 재참여, 이의신청, 위탁기관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심의·의결
협의체 구성	○ 지방관서별 재량 운영	○ 고용센터·위탁기관 간 협의체 구성 * 정책방향공유, 업무협의, 업무노하우공유, 지역 내 협력사업 추진 등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서비스 내실화		
관리인원	○ 생계급여수급자 전담반 담당자 1인당 연간 관리인원 상한 100명 (신규참여자 기준) ○ 민간 위탁기관 업무전담자 1인당 상시관리인원 120명 한도	○ 고용센터의 I 유형 상담담당자 1인당 권장 상시관리인원 100~120명 ○ 고용센터의 위탁기관 관리담당자 1인당 권장 상시관리인원 500~800명 ○ 민간 위탁기관 업무전담자 1인당 상시관리인원 120명 한도
단계별 서비스	○ I 유형에 대한 필수서비스 제공 ○ II 유형은 필수서비스 없음	○ 참여자에 대한 단계별 필수서비스 명확화(I·II 유형 동일) * 단계별 서비스주기, 상담방법, 서비스 제공내용 등
상담내역 입력	○ 3일 이내 전산 입력, 입력자료 수정은 3일 이내 완료	○ 3일 이내 전산입력, 입력일로부터 3일 이내 수정가능 ○ (신설)대면상담일시(일자, 시작시간, 종료시간) 즉시 등록→상담내용은 3일이내 등록 가능

구분	'17년	'18년
지출 증빙자료 간소화 표준화	○ 동일한 수당 지급시 고용센터별, 담당자별 각각 다른 증빙서류 제출요구 ○ 각종 수당지급을 위해 고용센터내부 결재 상신시 불필요한 증빙 자료 과다 첨부	○ 각종 수당지급을 위해 제출요구하는 증빙자료 간소화 및 표준화 * 수당지급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전산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 수당지급목록을 출력하여 지출증빙자료 활용, 결재 상신시 첨부 → 증빙자료 간소화 및 표준화
참여대상자 선정		
실업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중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종료 후 참여 가능
조건부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고용센터 우선의뢰	○ 조건부수급자 중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가능한 자를 중심으로 이관 대상 축소 검토 * 연구용역 완료 후 반영('18.上)
재학생 참여시기	○ 고등학교·대학(대학원)마지막 학년 재학생	○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재학생 ○ 대학(대학원) 마지막 학기 재학생 * 마지막 학기 기산: 5.1일 및 11.1일
	○ 약학(약학·한약학), 간호(간호학), 의료(의학·치의학·한의학·수의학) 학과 재학생 - 졸업예정연도 1.1일(7.1일) 이후 참여 가능	○ 약학(약학·한약학), 간호(간호학), 의료(의학·치의학·한의학·수의학), 교육(유아교육)과 재학생 * 졸업 예정연도 1.1일(7.1일) 이후 참여 가능
영세 자영업자	○ 연간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경우 I 유형 ○ 연간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은 II 유형	○ 가구원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60% 이하인 경우 I 유형 ○ 연간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 또는 가구원의 기준 중위소득 60%초과~100% 이하인 경우 II 유형
임대 사업자	○ 차차상위 이하 건강보험료 요건 충족시 I 유형	○ 가구원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60% 이하인 경우 I 유형 ○ 가구원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60% 초과~100% 이하인 경우 II 유형

구분	'17년	'18년																																																																																																				
희망리턴 패키지	○ 해당기관 추천시 연간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경우 I 유형 ○ 해당기관 추천시 연간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은 II 유형	○ 가구원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60% 이하인 경우 I 유형 ○ 해당기관 추천시 가구원의 기준 중위소득이 60% 초과~100% 이하이거나, 연간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은 II 유형																																																																																																				
니트족	○ 청년층 NEET 대상자 적합도 문답표 총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 청년층 NEET 대상자 적합도 문답표 총점이 21점 이상인 경우 * 문답표 측정문항 및 지표 수정																																																																																																				
II 유형 대상추가	-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이직자 (중위소득 120%이하) ○ 산재장해자(산재장해 10~12급)																																																																																																				
기준 중위소득	<table><tr><th>구분</th><th>1인 가구</th><th>2인 가구</th><th>3인 가구</th><th>4인 가구</th><th>5인 가구</th><th>6인 가구</th><th>7인 가구</th></tr><tr><td>중위소득 (A)</td><td>1,652,931</td><td>2,814,449</td><td>3,640,915</td><td>4,467,380</td><td>5,293,845</td><td>6,120,311</td><td>6,946,776</td></tr><tr><td rowspan="2">패키지 I</td><td>소득 인정액 (B=A×0.6)</td><td>991,759</td><td>1,688,669</td><td>2,184,549</td><td>2,680,428</td><td>3,176,307</td><td>3,672,187</td><td>4,168,066</td></tr><tr><td>보험료 (B×0.0306)</td><td>30,348</td><td>51,673</td><td>66,847</td><td>82,021</td><td>97,195</td><td>112,369</td><td>127,543</td></tr><tr><td rowspan="2">패키지 II</td><td>소득 인정액 (B=A×1)</td><td>1,652,931</td><td>2,814,449</td><td>3,640,915</td><td>4,467,380</td><td>5,293,845</td><td>6,120,311</td><td>6,946,776</td></tr><tr><td>보험료 (B×0.0306)</td><td>50,580</td><td>86,122</td><td>111,412</td><td>136,702</td><td>161,992</td><td>187,282</td><td>212,571</td></tr></table> *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1인 증가시 826,465원씩 증가(예 : 8인가구: 7,773,241원) * (직장가입자)보험료: 중위소득 100% 금액× 0.0306 (직장건강보험료율) * 직장가입자는 위의 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참여를 결정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에 1.2(조정계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참여를 결정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A)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패키지 I	소득 인정액 (B=A×0.6)	991,759	1,688,669	2,184,549	2,680,428	3,176,307	3,672,187	4,168,066	보험료 (B×0.0306)	30,348	51,673	66,847	82,021	97,195	112,369	127,543	패키지 II	소득 인정액 (B=A×1)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보험료 (B×0.0306)	50,580	86,122	111,412	136,702	161,992	187,282	212,571	<table><tr><th>구분</th><th>1인 가구</th><th>2인 가구</th><th>3인 가구</th><th>4인 가구</th><th>5인 가구</th><th>6인 가구</th><th>7인 가구</th></tr><tr><td>중위소득 (A)</td><td>1,672,105</td><td>2,847,097</td><td>3,683,150</td><td>4,519,202</td><td>5,355,254</td><td>6,191,307</td><td>7,027,359</td></tr><tr><td rowspan="2">패키지 I</td><td>소득 인정액 (B=A×0.6)</td><td>1,003,263</td><td>1,708,258</td><td>2,209,890</td><td>2,711,521</td><td>3,213,152</td><td>3,714,784</td><td>4,216,415</td></tr><tr><td>보험료 (B×0.0312)</td><td>31,302</td><td>53,298</td><td>68,949</td><td>84,599</td><td>100,250</td><td>115,901</td><td>131,552</td></tr><tr><td rowspan="2">패키지 II</td><td>소득 인정액 (B=A×1)</td><td>1,672,105</td><td>2,847,097</td><td>3,683,150</td><td>4,519,202</td><td>5,355,254</td><td>6,191,307</td><td>7,027,359</td></tr><tr><td>보험료 (B×0.0312)</td><td>52,170</td><td>88,829</td><td>114,914</td><td>140,999</td><td>167,084</td><td>193,169</td><td>219,254</td></tr></table>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8인가구: 7,863,411원) * (직장가입자)보험료: 중위소득 100% 금액× 0.0312 (직장건강보험료율) * 직장가입자는 위의 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참여를 결정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에 1.2(조정계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참여를 결정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A)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패키지 I	소득 인정액 (B=A×0.6)	1,003,263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4,216,415	보험료 (B×0.0312)	31,302	53,298	68,949	84,599	100,250	115,901	131,552	패키지 II	소득 인정액 (B=A×1)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보험료 (B×0.0312)	52,170	88,829	114,914	140,999	167,084	193,169	219,254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A)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패키지 I	소득 인정액 (B=A×0.6)	991,759	1,688,669	2,184,549	2,680,428	3,176,307	3,672,187	4,168,066																																																																																														
	보험료 (B×0.0306)	30,348	51,673	66,847	82,021	97,195	112,369	127,543																																																																																														
패키지 II	소득 인정액 (B=A×1)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보험료 (B×0.0306)	50,580	86,122	111,412	136,702	161,992	187,282	212,571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A)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패키지 I	소득 인정액 (B=A×0.6)	1,003,263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4,216,415																																																																																														
	보험료 (B×0.0312)	31,302	53,298	68,949	84,599	100,250	115,901	131,552																																																																																														
패키지 II	소득 인정액 (B=A×1)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보험료 (B×0.0312)	52,170	88,829	114,914	140,999	167,084	193,169	219,254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1단계 참여 제한, 사업내용에 따라 2단계 연계 가능 * 주 30시간 이상의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 제한	○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취성패 참여 허용하되, 수당지급 단위기간 중복시 취성패 수당 부지급 * 내일배움카드 훈련 참여자, 주 30시간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 제한																																																																																																				

구분	'17년	'18년
재참여 제한기간	○ 직전 회차 취업성과, 참여횟수, 생계 급여수급자 여부에 따라 3월~2년 6개월까지 달리 적용	○ 직전회차 취업성과가 1년 이상인 경우 재참여 제한기간 1년 ○ 직전회차 취업성과가 1년 미만인 경우 재참여 제한기간 2년6개월
	○ 기준일자: 직전 회차 취업성과에 따라 서비스 종료일 또는 퇴사 (폐업)일을 각각 적용	○ 기준일자: 서비스 종료일로 일괄 적용(취업일, 중단일, 기간만료일 등)
부정 수급자 참여제한	○ 부정수급 처분일로 부터 3년간 참여 제한	○ 부정수급 처분일로 부터 5년간 참여를 제한하되, 자진 신고시 3년으로 경감
단계별 취업지원 내용		
취업역량 평가 실시	○ 동일한 취업역량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역량평가 실시	○ 참여유형별 취업역량평가 기준을 세분화하여 유형별 역량평가 실시 * I 유형 3종(일반, 결혼이민자, 북한이탈 주민) * II유형 3종(청년일반, 청년재학생, 중장년) * 연도 중 모니터링 결과 평가기준 및 배점, 가중치 등 변경 가능
1단계 단축운영	○ II유형 청년층 중 취업역량평가결과 58점(C등급) 이상인 자	○ II유형(청년·중장년층) 중 취업역량 평가결과 C등급 이상인 자
2단계 운영	-	○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자의 경우 2단계 1회차 상담은 방문상담 필수 (1단계 기간중 카드발급 제한)
	○ 훈련참여지원수당 최종 회차 지급시 방문상담 필수	○ 훈련참여지원수당 최종 회차 지급시 방문상담 필수 삭제
3단계 운영	○ 1차 상담은 방문상담 원칙 * 참여자의 사정으로 불가피한 경우 유선 상담 대체 가능	○ 1차 상담은 방문상담 원칙 * 참여자가 방문상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출석통지 등 조치
	○ 월 2회 이상 취업알선·직업정보제공 ○ 월 1회 이상 취업알선 필수	○ 취업알선 또는 구인정보제공 월 2회 이상 필수 ○ 동행면접, 이력서·자기소개서·면접 클리닉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월 1회 이상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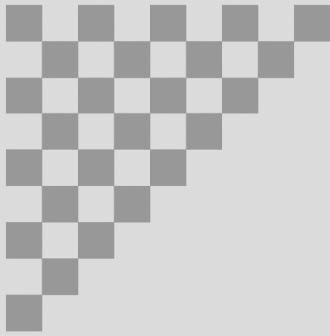
구분	'17년	'18년
청년구직 촉진수당	○ 매월 구직활동이행계획수립(3회)	○ 상호의무협약체결 후 1회 수립 필요시 변경계획 제출 가능
	○ 단위기간 산정 기준: 상호의무협약 체결일, 단계전환시 3단계 전환일자	○ 단위기간 산정 기준: 상호의무협약 체결일, 단계 전환시 3단계 전환일자, 취업·유예 후 재개자는 재개일자
취업 성공수당	○ 창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경우만 지급	○ 창업자의 경우 개인·법인사업자 지급 가능 * 법인사업자는 신규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만 해당되고, 기존법인의 대표자 취임시에는 부지급
타인명의 계좌사용	○ 타인명의 계좌로 각종 수당 지급 신청시 매번 타인명의 계좌이용 신청서 및 본인명의로의 계좌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각각 첨부	○ 타인명의 계좌로 각종 수당 지급 신청시 타인명의 계좌가 동일한 경우 본인명의로의 계좌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는 최초시만 첨부
민간위탁사업		
목표인원	청년 190,000명(추경 3만명 포함), 중장년층 35,000명	청년 160,000명, 중장년층 30,000명
사무소 선정방식	주·분사무소 구분 선정	주·분사무소 구분 없이 '취업성공 패키지 사무소'로 일원화하여 선정
기본금	모든 기관에게 기본금 40만원 지급	직업훈련겸업기관: 40만원 → 25만원 대학 내 사무소: 40만원 → 30만원
심사 위원회	○ 권역별(2~5개 지청 단위) 공동 심사위원회 운영 ○ 외부위원 과반수 구성	○ (지)청별 심사위원회 운영 ○ 타 지역출신(주요 업무장소가 타 (지)청 관내)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
상담사 자격요건	직업상담 관련 자격증 및 관련 경력 3개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해당자
선정 절차	A, B, C 중 별도 검증이 필요한 기관은 PT심사 진행	A, B, C 중 별도 검증이 필요한 기관 또는 개인정보보호의무 위반사항 등이 적발된 기관은 PT심사 진행

구분	'17년	'18년																																																																																				
심사기준 변경	○ 인적자원투자계획 20점	○ 인적자원투자계획 배점 확대(20→30점) ○ 청년구직촉진수당 집행실적 등 취업성과 지표 신설																																																																																				
취업 인센티브 지급방법	(단위: 만원)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기본금</th><th colspan="4">임금 연동 인센티브</th></tr><tr><th>~140 미만</th><th>~180 미만</th><th>~230 미만</th><th>230 이상~</th></tr><tr><td>6월이내 취업</td><td>30</td><td>60</td><td>80</td><td>100</td><td>150</td></tr><tr><td>12월이내 취업</td><td>40</td><td>40</td><td>60</td><td>80</td><td>130</td></tr><tr><td>15월이내 취업</td><td>40</td><td>20</td><td>40</td><td>60</td><td>100</td></tr></table>	구 분	기본금	임금 연동 인센티브				~140 미만	~180 미만	~230 미만	230 이상~	6월이내 취업	30	60	80	100	150	12월이내 취업	40	40	60	80	130	15월이내 취업	40	20	40	60	100	○ 취업역량평가(A,B등급-취업역량 낮음)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기본금</th><th colspan="4">임금 연동 인센티브</th></tr><tr><th>~165 미만</th><th>~200 미만</th><th>~230 미만</th><th>230 이상~</th></tr><tr><td>6월이내 취업</td><td>30</td><td>70</td><td>90</td><td>110</td><td>160</td></tr><tr><td>12월이내 취업</td><td>40</td><td>50</td><td>70</td><td>90</td><td>140</td></tr><tr><td>15월이내 취업</td><td>40</td><td>30</td><td>50</td><td>70</td><td>100</td></tr></table> ○ 취업역량평가(C,D등급-취업역량 높음)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기본금</th><th colspan="4">임금 연동 인센티브</th></tr><tr><th>~165 미만</th><th>~200 미만</th><th>~230 미만</th><th>230 이상~</th></tr><tr><td>6월이내 취업</td><td>30</td><td>50</td><td>70</td><td>90</td><td>140</td></tr><tr><td>12월이내 취업</td><td>40</td><td>30</td><td>50</td><td>70</td><td>120</td></tr><tr><td>15월이내 취업</td><td>40</td><td>10</td><td>30</td><td>50</td><td>100</td></tr></table> ○ 적용시점: '18년도 취업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부터 변경된 임금수준 적용	구 분	기본금	임금 연동 인센티브				~165 미만	~200 미만	~230 미만	230 이상~	6월이내 취업	30	70	90	110	160	12월이내 취업	40	50	70	90	140	15월이내 취업	40	30	50	70	100	구 분	기본금	임금 연동 인센티브				~165 미만	~200 미만	~230 미만	230 이상~	6월이내 취업	30	50	70	90	140	12월이내 취업	40	30	50	70	120	15월이내 취업	40	10	30	50	100
	구 분			기본금	임금 연동 인센티브																																																																																	
~140 미만		~180 미만	~230 미만		230 이상~																																																																																	
6월이내 취업	30	60	80	100	150																																																																																	
12월이내 취업	40	40	60	80	130																																																																																	
15월이내 취업	40	20	40	60	100																																																																																	
구 분	기본금	임금 연동 인센티브																																																																																				
		~165 미만	~200 미만	~230 미만	230 이상~																																																																																	
6월이내 취업	30	70	90	110	160																																																																																	
12월이내 취업	40	50	70	90	140																																																																																	
15월이내 취업	40	30	50	70	100																																																																																	
구 분	기본금	임금 연동 인센티브																																																																																				
		~165 미만	~200 미만	~230 미만	230 이상~																																																																																	
6월이내 취업	30	50	70	90	140																																																																																	
12월이내 취업	40	30	50	70	120																																																																																	
15월이내 취업	40	10	30	50	100																																																																																	
파견업 취업관련	○ 취업실적 인정 ○ 취업인센티브 지급	○ 취업실적 불인정 ○ 취업인센티브 부지급																																																																																				
기본금 인출	-	○ 위탁약정체결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2년 후 익월중 기본금 계좌에서 사용 잔액 인출 가능 * 인출가능금액(사용잔액): 해당연도 총 지급액-해당연도 총 지출액																																																																																				
지도점검 절차 및 조치기준 명확화	○ 담당자 개인의 역량에 따라 지도점검 실시 ○ 위탁기관의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담당자별 조치기준 상이	○ 지도점검 절차 및 방법 명확화 ○ 위탁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 방법 및 기준 명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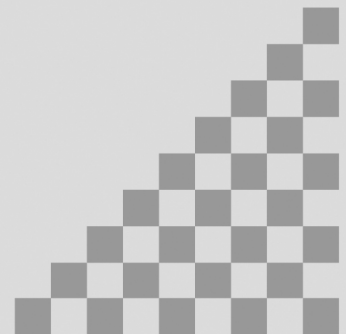


취업성공패키지 세부 운영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체계



I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체계

1부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 운영

1.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규모 및 전달 체계

- 2018년 패키지 사업 규모는 31.1만명으로, I 유형은 12.1만명, II유형 청년층은 16만명, II유형 중장년층은 3만명(민간위탁 사업규모는 19만명)
- 패키지 I 유형은 전부 고용센터에서 담당하고, 패키지 II유형은 전량 민간 위탁하여 서비스 전달체계 운영

2. 고용센터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에 따라 참여대상자를 선정하고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사업규모가 커지고 참여대상자가 많아짐에 따라 고용센터장의 재량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취업성공패키지 업무경력이 많은 내부 직원과 고용 및 노동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고용센터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센터별로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하되, 신속한 민원 해결 및 의사 결정, 회의절차 진행 간소화 등을 위해 ‘취업성공 패키지 운영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고용·노동관련 분야 외부전문가를 과반수이상으로 하여 구성하되, 운영위원회는 고용센터장(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수가 5~7명으로, 소위원회는 고용센터장(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으로 구성
 - * 고용센터에서는 고용·노동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풀을 구성·관리
-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사안이 있을 때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개최하되, 가급적 월 1회 이상 개최 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 심의로 대체 가능
- 운영위원회에 참석(서면심사 포함)한 외부위원에게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회의수당 지급은 공무원의 회의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센터별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해 자체 운영규정을 만들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는(이하 ‘운영위원회’)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의·의결할 수 있고, 지방고용관서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심의안건 검토시 해당 연도의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심의·의결하되, 참여자 개인에 대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일반 기준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고 동 결정은 해당 대상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3. 고용센터별 및 민간위탁기관 간 협의체 구성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센터와 민간위탁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센터와 민간 위탁기관이 같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 고용센터와 위탁기관 간 협의체는 취업성공패키지 및 기타 우리부 사업에 대한 정책방향 공유,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교환, 업무노하우 공유, 지역 내 협력 사업 추진 및 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을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협의회 개최
-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역 내 민간위탁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 협의체 운영은 지청별 또는 센터별 운영 가능

Ⅱ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서비스 내실화

1.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 1인당 상시관리인원

* 상시 관리인원은 특정시점에 1, 2, 3단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참여자를 의미

① 고용센터 담당자

- 고용센터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한 상담을 담당하는 담당자 1인당 권장 상시 관리인원은 100명~120명

* 다만, 특정 취약계층 관리인원, 저소득층(Ⅰ 유형)신청인원, 센터의 인력상황 등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운영 가능

- 고용센터에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위탁기관에서 진행하는 참여자를 기준으로 담당자 1인당 권장 상시 관리인원은 500명~800명

② 민간위탁기관 담당자

- 민간위탁기관에서 취업성공패키지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의 상시 관리인원 한도는 1인당 120명

2.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 지원체계 표준화

① 단계별 필수 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한 단계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상담 진행시 최소한 아래와 같은 내용과 절차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한 단계별 필수서비스 제공 】

□ 1단계 서비스(3회 이상, 21일 이상 2개월 이내, 3~5일 간격, 개별·대면상담)

- ▲ 상담 일자 및 상담개시 시간 워크넷 입력 ▲ 취업(근로제공) 및 창업 확인 ▲ 참여 경로, 가족사항, 건강상태, 학력, 과거직장경력, 희망직종 및 직무 등 구직신청내용확인
- ▲ 구직활동 등 과제수행 내용 확인 및 필요시 추가과제 부여 ▲ 1회차 상담내용정리 및 향후계획 협의 ▲ 상담종료 시간 워크넷 입력

○ 1회차 방문상담

- 취업성공패키지 개요와 진행절차 안내
- 내일을 위한약속과 구직신청 내용 확인 및 보완
- 취업역량평가지 작성, 고용촉진지원금과 취업성공수당, 구직촉진수당 등 안내
- 취업특강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제도 및 신청안내
- 직업심리검사 1회차 실시 또는 과제 부여

○ 2회차 방문상담

- 직업심리검사 결과 해석
- 진로 상담 및 과제(구직활동)에 대한 상담

○ 3회차 방문상담

- IAP수립 및 1단계 참여수당 신청
- 직업훈련 희망시 과제 부여(훈련과정 탐색표, 내일배움카드 동영상 시청 등)
- 3단계 진입 시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내일채움공제, 고용촉진장려금 안내

□ 2단계 서비스

(최대 8개월, 월 1회 이상 대면 또는 유선상담, 내일배움카드계좌발급 및 훈련과정 변경시 방문상담, 훈련과정 추가시 유선상담 후 팩스접수 가능)

▲ 상담일자 및 방문상담시 상담개시 시간 워크넷 입력 ▲ 취업(근로제공) 및 창업확인
 ▲ 워크넷 구직신청 유효여부 확인 및 구직신청 만료(예정)자 재등록 등 안내 ▲ 성실
 훈련참여여부, 훈련과정종료 여부, 자격증 취득여부 등 확인 ▲ 방문 상담시 상담종료
 시간 워크넷 입력

○ 1회차 방문상담(내일배움카드 발급 이외의 2단계 연계자 유선상담 가능)

- 내일배움카드발급 여부 결정을 위한 과제 확인
- 과제성신행 및 훈련필요성 인정시 내일배움카드발급 신청서 작성(즉시 발부가능)
- 기타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과정 탐색을 위한 상담
- 직업훈련참여시 유의사항 및 훈련참여지원수당 신청방법 안내

○ 2회차 이후(매월 1회 이상 대면 또는 유선상담)

- 직업훈련 등 2단계 프로그램 성실참여여부, 출결사항, 훈련종료여부 등 확인
- 2단계 직업훈련 등 참여시 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방안 지원
- 추가 프로그램 연계 필요성 등 상담
- 워크넷 구직신청 유효여부 확인 및 구직신청 만료(예정)자 재등록 등 안내

□ 3단계 서비스

(3개월 원칙, 청년층 등 3단계 특례자의 경우 최대 6개월 가능, 월 2회 이상 취업알선 및 구인정보제공, 개별·대면상담)

▲ 상담일자 및 방문상담시 상담개시 시간 워크넷 입력 ▲ 취업(근로제공) 및 창업확인
 ▲ 워크넷 구직신청 유효여부 확인 및 구직신청 만료(예정)자 재등록 등 안내 ▲ 본인 스스로 한 구직활동 내용 확인 및 취업상담 ▲ 구직신청내용에 적합한 취업알선 또는 구인정보제공(월 2건 이상 필수) ▲ 동행면접,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1회 이상 필수) ▲ 청년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내일채움공제, 고용촉진 지원금 등 제도안내 ▲ 방문 상담시 상담종료 시간 워크넷 입력

○ 1회차 방문상담(7일 이내, 대면상담)

- 청년층의 경우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제도 안내, 상호의무협약체결, 필요시 구직 활동이행계획서 점검 및 상담,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제출 및 수당신청방법 안내
- 워크넷 구직신청서 작성내용 확인 및 구직신청서 수정 필요성 상담
- 본인 스스로 한 구직활동 내용 확인 및 취업상담
- 워크넷 구직신청 유효여부 확인 및 구직신청 만료(예정)자 재등록 등 안내
- 취업성공수당, 내일채움공제, 고용촉진지원금 등 제도안내

○ 2회차 이후(매월 1회 이상 대면 또는 유선상담)

- 구직신청내용에 적합한 취업알선 또는 구인정보제공(월 2건 이상 필수)
- 동행면접,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1회 이상 필수)
- 본인 스스로 한 구직활동 내용 확인 및 취업상담

② 참여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 및 민간위탁기관에서는 단계별로 제공해야 하는 필수서비스 외에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개인의 구직의욕 및 취업역량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 특히, 민간위탁기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각종 직업심리검사, 집단 상담프로그램, 1단계 상담도구 이외에도 위탁기관의 특성과 역량, 취업지원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참여자의 특성에 적합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

- * 위탁기관이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1단계 상담도구 개발, 직종별 전문가 특강, 구직 기술 향상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2단계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 정보수집, 지역 내 고용동향 파악, 구인개척, 동행면접, 소규모 채용행사 등

③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내역 전산 등록 및 관리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단계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방문(대면)상담 일시는 즉시 입력**
 - 대면상담 시작시 상담시작 시간을 입력하고, 상담종료시 종료시간은 즉시 입력
 - * 워크넷 시스템 개발완료시('18.1월중) 부터 적용
 -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내역은 상담일로부터 3일 이내 전산시스템에 입력
 - 전산입력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입력일로부터 3일 이내 수정 가능
 - 서비스 제공내역 모니터링은 전산에 입력된 시기 및 내용을 기준으로 조치

3. 각종 증빙자료 간소화 및 표준화

① 참여자 수당 지급

- 고용센터에서는 사전단계 참여수당, 1단계 참여수당,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3단계 참여수당 및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할 때 참여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제출 요청
- 고용센터에서는 참여자 및 위탁기관에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요구를 지양하고, 워크넷 취업성공패키지 전산망으로 출력되는 각종 수당 지급총괄표의 내용과 위탁기관에서 입력한 전산망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후 수당 지급
-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 참여자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한 내부결재 상신시 워크넷 취업성공패키지 전산망으로 출력되는 각종 수당 지급총괄표를 첨부해 결재상신 하고, 그 외 첨부자료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에 대해만 최소화

② 위탁수수료 지급

- 기본금 및 취업인센티브 등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에 각종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때 고용센터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신청 서류 및 증빙자료에 대한 제출 요청
- 고용센터에서는 위탁기관에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요구를 지양하고, 워크넷 취업성공패키지 전산망으로 출력되는 각종 위탁수수료 지급총괄표의 내용과 위탁기관에서 입력한 전산망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후 위탁수수료 지급
- 위탁수수료 지급을 위한 내부결재 상신시 워크넷 취업성공패키지 전산망으로 출력되는 각종 위탁수수료 지급 총괄표를 첨부해 결재상신 하고, 그 외 첨부자료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에 대해만 최소화

Ⅲ 2018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적용

- 2018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은 2018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18년도 중 초기상담이 진행된 자)를 대상으로 적용
 - 2017년도 이전 참여자(초기상담일 기준)는 해당 연도의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적용
- 2018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은 2018년도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위탁약정이 체결된 기관을 대상으로 적용
- 2018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에 별도 적용시점 및 대상 등이 표기된 경우는 그에 따름

참고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 다만,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소위원회」(이하 '운영 소위원회')를 고용센터별로 둘 수 있다.
 - 운영위원회 및 운영 소 위원회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및 패키지 업무 매뉴얼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 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고용센터 소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및 담당 과(팀)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고용·노동 관련 외부전문가가 3명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 운영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할 고용센터 소장이 되며, 3인 이상 5인 이내로 운영할 수 있고, 고용·노동 관련 외부전문가가 과반수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전문가를 위원수의 2배수 내외로 인력풀을 구성하고, 위원회 및 소 위원회 개최 시 인력풀 중에서 외부위원을 지명(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는 제외)한다.
 - 특히, 위원장은 외부위원의 참여가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고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한다.
- ③ 운영위원회 및 운영 소위원회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5인 이상 출석의 대면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운영 소위원회는 3인 이상 출석의 대면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 소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외부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서면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도 공무원 회의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2. 내용 및 권한

-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운영 소 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및 운영 소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 가. (참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신청자의 참여자격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 나. (중단) 참여자의 중단사유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다. (이의신청)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라. (계좌발급) 반복적 훈련참여자의 훈련참여제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마. (위탁기관) 민간위탁기관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이 발생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운영 한 경우
 - 바. (기타) 기타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운영위원회 및 운영 소위원회는 필요시 심의 내용의 적절성을 조사할 수 있고, 관련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및 운영 소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3. 심의 절차

- ① 운영위원회 및 운영 소위원회는 심의 사안별로 관련 자료를 검토(31p 별지 서식1호)하고, '심의표'(32p 별지 서식2호)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 위원별 심의결과를 합산한 결과표(33p 별지 서식3호)에 따라 심의결과를 최종 결정
 - 위원별 심의결과를 합산한 결과,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고 기권 등으로 인하여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최종 결정
- ② 심의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안건을 제척 하게 할 수 있다.

4. 결과 통지 및 재심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심의가 결정된 이후 3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② 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당사자가 이의 또는 재심의를 요구할 시 운영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5. 심의 취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의내용을 취소 할 수 있다.

(별지 서식1호)

운영(소)위원회 검토서

심의건 명	(예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민원인의 참여 자격여부 심사		
대상구분	☐ 신청자	☐ 참여자	☐ 민간위탁기관 ☐ 기타
대상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 락 처	

심의 내용	* 작성예시
	○(쟁점)
	○(현황)
	○(관련근거)
	○(요구사항)

검토 의견	
2018년 월 일 검토자 (인)	

(별지 서식2호)

운영(소)위원회 심의표

심의 건명	(예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민원인의 참여 자격여부 심사		
대상 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 락 처	

의결 사항	(예시) 참여 신청자에 대하여 참여불가 심의 의결
-------	-----------------------------

심 의 요 소	심의 위원 평가 의견	
○ 심의안건에 대하여 쟁점사항, 현황, 관련근거,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		
심의 결과	☐ 수용	☐ 불수용
기권 또는 제척 여부	사유: 해당 없음	
※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심의위원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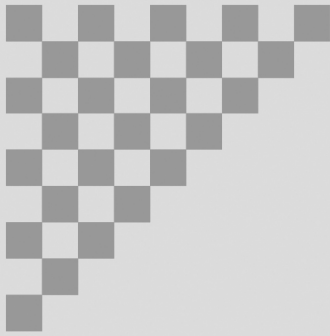
(별지 서식3호)

심 의 결 과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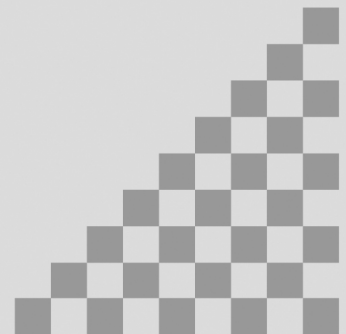
심의건명 : (예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민원인의 참여 자격여부 심사

위원명	수용	불수용	제척여부	기권여부	위원서명
홍길동	1		-	-	홍길동
김철수		1	-	-	김철수
이영희	1		-	-	이영희
합 계	2	1			
※ 위원별 심의결과를 합산한 결과,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고 기권 등으로 인하여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최종 결정					
최종 심의결과	☐ 수용		☐ 불수용		
※ 기타사항					

집계자	성명	서명	확인자	성명	서명
-----	----	----	-----	----	----



참여대상자 선정



I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공통기준)

1부

1. 참여자 선정 기준

- ① (참여자격 등 판단 시점)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신청서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자격 여부 및 참여유형 판단

* 인터넷 신청자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인터넷 신청서를 접수처리한 날을 기준 판단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유형은 참가신청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참여 도중 가구원수 또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등이 변경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형변경은 불가함
- 다만, 생계급여수급자로 자치단체로부터 의뢰를 받는 경우에 한해 의뢰시점을 기준으로 I 유형으로 변경 가능

- ② (미취업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적극적인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고,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를 성실히 참여할 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함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신청일 이전 상용 및 일용(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는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일자리로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다만, 주 30시간 이상의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참여자가 더 나은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지원을 지속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취업처리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 근로제공(아르바이트 등)은 무조건 안된다'는 안내가 되지 않도록 유의

- ③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대학교 및 대학원 등 마지막 학기 재학생의 경우 졸업 전 신속한 취업을 희망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 허용

- 고등학교 마지막학년 재학생
 - * 마지막 학년이 되는 해의 1.1일 이후부터 참여 가능(고교 재학생 참여자는 나이 무관)
- 대학교 및 대학원 등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
 - * '18년도 중 졸업예정자는 '18년 중 당연참여 가능
 - * '19년 2월 졸업예정자는 '18.5.1일부터 참여 가능(5월부터 마지막 학기로 간주)
 - * '19년 8월 졸업예정자는 '18.11.1일부터 참여 가능(11월부터 마지막 학기로 간주)
- 교육 편제 단위 표준분류체계 중(소)분류 ①약학(약학·한약학), ②간호(간호학), ③의료(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④교육(유아교육) 분야 재학생은 졸업 예정년도 1.1일(또는 7.1일)부터 참여 허용
- 학점은행제·사이버대·방송통신대·야간대학(원)의 재학(휴학)생은 학업과 병행하여 취업이 가능한 경우 참여 허용
- ④ **(연령)** 참가신청서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만 18세 ~ 69세 이하
 - *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중 위기청소년의 경우는 만 15세 이상 ~ 24세까지 참여 가능
- ⑤ **(소득)** 최근 3개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는 I 유형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는 II유형으로 참여 가능
 - 다만, I 유형 중 일부 특정계층*과 II유형 중 34세 이하 청년층의 경우 별도의 소득요건은 없음
 - * (I 유형 중 특정계층)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여성가장, 신용회복지원자, 위기 청소년, 니트족, 미혼모·한부모, 국가유공자, FTA 피해근로자
- ⑥ **(사업소득자)** 영세자영업자,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 기타 사업소득자의 경우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I 유형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II유형으로 참여자격 및 참여유형 결정
 - * 기타 사업소득자: 저작권료, 계약유지 또는 영업실적에 따른 소득 발생, 프리랜서, 강사 등과 같이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증은 없지만 일정한 소득이 주기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자
 -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 또는 친목단체설립 등과 같이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추구 및 사업소득 발생과 무관한 고유번호증 소지자의 경우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참여자격 검토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참여자 (만18세 ~ 만69세)	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청·장년층) 참여자	
	청년층(만18~34세 이하)	중·장년층(만35~69세 이하)
1. 생계급여수급자 2.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5. 북한이탈주민 6. 신용회복지원자 7. 결혼이민자 8. 위기청소년 및 니트족 9. 여성가장 10. 취업맞춤특기병(중위소득 60% 이하) 11. 미혼모·한부모 12. 국가유공자 13. 건설일용직 14. FTA피해근로자 15. 기초연금수급자	1.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2. 고교 마지막학년 재학생 3. 대학·대학원 마지막학기 재학생 4. 대졸이상 미취업자	1.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2.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 영세자영업자 3.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이직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4. 기업활력제고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5. 조선업종종사자(특별고용지원업종 운영기간 중 한시적 참여 가능) 6. 산재장해자(10급 ~ 12급)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 대상자> 1. 취업자(주30시간)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로서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직장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를 허용하고, 취업패 참여 중 주 30시간 이상 일용근로 제공시 참여자가 더 나은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계속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실업급여 수급종인자 3. 대학교 재학생 참여자로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체계의 중(소)분류 ①약학(약학·한약학), ②간호(간호학), ③의료(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④교육(유아교육) 분야 재학생 4. 무급휴직자 5. 참여유예기간 미경과자, 주 30시간 이상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외국인, 정상적인 참여가 곤란한자 등 기타 참여제한사유에 해당 되는자		

* 기타 세부 참여유형 및 구체적 판단기준은 유형별 참여대상자 관련 내용 참조

⑦ (거주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은 참여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참여자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자가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신청 가능(당연의뢰 대상인 조건부수급자는 제외)

- ⑧ (가구원 수)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기재된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포함 또는 제외

포 합	❶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기재된 자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❷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기재된 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 *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통·반장 확인서 등) 제출
제 외	❶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 ❷ 외국에 3월 이상 체류하는 자 ❸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 ❹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1월이 경과되었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확인한 자 ❺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확인한 자 ❻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피부양자자격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에 기재된 이외의 자

- ⑨ (건강보험료 납입액)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로 참여대상자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에 직장가입자 개인부담비율(3.12%)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지역가입자에게도 준용

*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자의 경우 참여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차등 적용

* 미납자는 부과액을 납입액과 동일하게 적용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상한 (원/월)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A)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패키지 I	소득 인정액 (B=A×0.6)	1,003,263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4,216,415
	보험료 (B×0.0312)	31,302	53,298	68,949	84,599	100,250	115,901	131,552
패키지 II	소득 인정액 (B=A×1)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보험료 (B×0.0312)	52,170	88,829	114,914	140,999	167,084	193,169	219,25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8인가구: 7,863,411원)

※ (직장가입자)보험료: 중위소득 100% 금액× 0.0312(직장건강보험료율)

※ 직장가입자는 위의 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참여를 결정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에 1.2(조정계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참여를 결정



1가구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접수

- ⇒ 가구당 참여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음
- ⇒ 동일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의 참여도 가능



8인 이상인 가구의 보험료 기준 산정

- ⇒ ‘8인’ 가구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836,052원씩을 더하여 중위소득을 산정하고, 동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납입상한액 산정
- ① 패키지 I 【8인 가구의 보험료 납입상한액】
⇒ $[7,863,411(7,027,359+836,052) * 0.6] * 0.0312 = 147,203\text{원}$
- ② 패키지 II 지역가입자 【8인 가구의 보험료 납입상한액】
⇒ $[7,863,411(7,027,359+836,052) * 1] * 0.0312 * 1.2(\text{조정계수}) = 294,406\text{원}$
- ③ 패키지 II 직장가입자 【8인 가구의 보험료 납입상한액】
⇒ $[7,863,411(7,027,359+836,052) * 1] * 0.0312 = 245,338\text{원}$



1가구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 보험료 산정기준

- ⇒ ‘가구’단위를 기준으로 판단. 즉,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납입상한액 초과여부 결정
- ⇒ 1가구에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
- ⇒ 패키지 II 신청자의 경우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존재할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가구원수별 지역가입자 선정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적용



1가구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접수

-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의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부과통지서)」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 ⇒ 1가구에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



‘참가신청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 ⇒ 신청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과 직장가입자 명의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부과통지서)을 제출하도록 함
- ⇒ 당해 가구에 지역가입자 내지 또 다른 직장가입자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부과통지서)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부과통지서)의 산정기간

- ⇒ 참가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부과통지서)을 제출하도록 함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수혜가구인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부과통지서) 제출여부

- ⇒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의 수혜가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관련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함



기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확인 기준

- ⇒ 참여자가 세대를 달리하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는 동일 세대의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만을 산정
 - * 세대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만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제출
- ⇒ 이혼가정의 부 또는 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녀가 세대를 달리하는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 자녀와 세대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의 참여 신청시 자녀를 가구원수에는 포함하되 자녀의 건강보험료는 제외
 - * 세대를 달리하는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자녀의 참여 신청시 세대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만을 산정
- ⇒ 이혼가정의 자녀가 부·모 모두와 세대 및 건강보험료를 달리하는 경우는 부·모의 건강보험료는 제외 후 산정

- ⇒ 「세대분리 여부에 따른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참조(부록 1)
-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부록 2)
- ⇒ 「가구원수 변동 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참조(부록 3)

- ⇒ 무급휴직 중인 자는 재직자의 신분으로 참여 불가
 - 다만, 실업자인 신청자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가 무급휴직 등의 사유로 0원인 경우에는 무급휴직 직전 3개월의 건강보험료로 참여 결정

2. 참여대상자 제외 기준

① 직전 회차 취(창)업성과에 따른 참여 유예기간 설정

직전 회차 취(창)업성과	
미취업 또는 1년 미만 취(창)업	1년 이상 취(창)업
2년 6월	1년

- * 취업의 기준: 고용보험가입 일자리로 동일 사업장에서의 1년 이상 근무가 유지된 경우 (사학연금 가입자 등과 같이 고용보험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

- * 미취업: 중도탈락, 기간만료 포함
- * 재정지원일자리 취업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취업으로 보지 않음
- * 산정 기준일: 취업성공패키지 종료(중단, 기간만료, 취업 등)일의 다음날
- * 창업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가 종료된 자의 경우는 초기상담일 이후 신규 창업된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창업유지기간을 판단하고, 창업유지의 종료 시점은 폐업일(폐업사실증명원으로 확인)을 기준으로 판단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법무부의 일자리허그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심층 지원을 위해 각기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바, 동 사업 참여자는 해당 프로그램 참여기간 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참여유예기간 적용

- 다만, '17년도 이전에 초기상담일이 있는 참여자 중 既 공지된 재참여 제한기간 보다 변경된 규정이 불이익한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18년도 이후 최초 참여신청시 1회만 적용)

- 비자발적 이직 등으로 직전 회차 취업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 등 참여자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고용센터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위원회를 통해 재참여 제한기간 완화 적용(2년6개월→1년) 가능

②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참여신청시 고용노동부, 타 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허용하되, 정부지원 직업훈련 수강자 및 주 30시간 이상의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참여를 제한

- * 자활사업 참여자는 주 30시간 미만자도 참여 제한
- * 정부지원 직업훈련과정 수강자는 훈련종료 후 참여 가능하고, 6개월 이상의 국기훈련 수료자는 수료 후 6개월 이후 참여가능
- 다만,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로 소정의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 지원하는 각종 수당은 부지급하고, 수당지급 단위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 *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비, 수당, 교재비, 수강료, 취업 관련 학자금 및 장학금, 바우처 등 명칭 불문

- 대학교 마지막 학기 재학생이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링크사업, 프라임사업 등과 같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지원대상자인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는 허용하되,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소정의 수당과 취업성공패키지 각종 수당은 중복지원불가
-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서 지원하는 각종 수당지원에 대한 내용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시스템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이 해당기관에 직접 확인하거나, 참여자가 확인서(증명서 등)로 입증 가능
- * 재정지원일자리 수당지급 종료 후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수당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원단위 이하 금액은 절사)

※ (1단계 참여수당) 각종 수당이 지원되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1단계 참여기간을 1단계 최소 운영기간(21일 또는 7일)을 기준으로 월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다만, 1단계 참여수당 중 추가지급액은 1단계 전체 운영기간 동안의 세부 프로그램 이수여부에 따라 지급

<예시> I 유형 참여자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1단계 운영 기간이 5일인 경우 기본지급액 35,710원 지급
($5/21 \times 150,000\text{원} = 35,714\text{원}$)

※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각종 수당이 지원되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가능일자에 대해 월 최대 284,000원 한도 내에서 1일 18,000원씩 지급

※ (3단계 방문참여자 실비) 3단계 방문참여자 실비 지급단위기간 중 각종 수당이 지원되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 이후 방문상담일자가 있는 경우 실비 2만원 지급

※ (3단계 구직촉진수당) 3단계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기간 중 각종 수당이 지원되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 이후 3단계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월의 구직촉진수당 전액 지급

<예외> 자치단체의 청년층 지원 사업 참여자에 대한 참여자격 판단

-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사업 종료 후 **6개월 이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가능

- * 예: 서울시 청년수당, 인천시 청년진출사업,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대전시 청년 취업희망카드, 부산시 청년구직활동비 등 구직활동에 소용되는 경비 지원
- 자치단체 청년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경우는 중복 참여를 허용하되, 취업성공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청년근로자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자치단체 예산과 민간기부금 등을 추가 적립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유의사항>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 훈련 수료자는 수료 후 **6개월 이후부터 참여 가능**
 - * 단,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훈련 중단·미수료자는 참여 가능(개정 2012.4.2.)
 -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구직촉진수당과 유사중복사업인 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해당사업 종료 후 **6개월 이후 참여 가능**
 - * 참여자 본인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원 종료사실 확인증 등을 통해 입증
 - * 자치단체 사업 종료 후, 구직노력 등 자기주도적 후속활동을 하는 기간 부여 필요
 - 참여 신청시 중복참여 제한 사실을 사전 반드시 안내하고 상담, 일모아시스템, 고용보험전산망 등을 통해 타 사업 참여여부 등을 확인하되, 전산상 참여여부가 실시간으로 조회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상담시 수시 확인
 - 패키지 참여 및 중단을 결정하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직접일자리사업 또는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이 참여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일자리 해당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
- ③ **(취업자)** 취업한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하되, 다만 사업참여신청일 이전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자로서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직장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중 참여자의 주 30시간 이상 일용근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참여자가 더 나은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지원을 지속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취업처리

- ④ **(실업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에는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
- ⑤ **(정상적인 참여가 곤란한 자)** 심신상의 이유 및 기타 고용센터장이 판단하기에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다만, 판단이 곤란한 경우 고용센터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위원회 심사를 통해 참여여부 결정
 - 정신보건센터 등 관련 의료기관으로 연계하여 치료 후 완치된 것이 확인되면 참여 가능
- ⑥ **(외국인)**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참여 불가
- ⑦ **(기타)** 취업의사가 없거나, 훈련참여 및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 등 고용센터장 또는 고용센터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자

Ⅱ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Ⅰ 유형)

- ◆ 취업성공패키지 Ⅰ 참여대상자는 “만 18~69세 이하의 생계급여수급자, 차차상위(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구직자”가 원칙
- 다만,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니트족, 미혼모·한부모,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FTA 피해 근로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은 개인적 특성을 감안,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허용
 - 영세자영업자,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 등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참여 가능
- 대학교 및 대학원 등 재학생의 경우 최종학년의 마지막 학기 부터 참여 가능
 - * 다만, 참여자가 신속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경우 2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5월1일 부터, 8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11월1일 부터 참여 가능
-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마지막 학년이 되는 해의 1.1일 이후 참여 가능(고교 재학생 참여자는 나이 무관)

1. 저소득층

1.1. 생계급여수급자

- ① (조건부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중점 서비스 대상으로서 자치단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우선 참여 대상으로 선정

*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 다만, 조건부과제외자*는 조건부수급자로 전환된 자에 한해 참여 허용

* ①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자, ②대학생, ③ 장애인, ④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6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 ⑤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기타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등

📁 조건부과제외자의 조건부수급자 전환 조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11.9.8)으로 월 60만원 미만 소득, 주 22시간 미만 근로 등 불안정 취업으로 인해 조건부과제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조건부수급자로 전환 가능('12.1.1 시행)
- 따라서, 자치단체(자립 상담사)와 협조하여 불안정 취업으로 인한 조건부과제외자를 조건부수급자로 전환하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토록 노력할 필요

- ② **(일반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불가. 다만,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허용가능

* 패키지 참여대상자가 아님에도 자치단체에서 의뢰한 경우 또는 일반수급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희망하여 참가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수급자의 취업의사와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여 참여여부 결정

** 근로능력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고용센터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참여자격 여부 결정 가능

***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과제외자, 자활특례자, 취창업수급자 등

- ③ **(보장시설수급자)** 장애인, 노숙인, 성매매 피해 여성 등 보장시설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자치단체, 보장시설기관,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의 추천을 받아 참여



전산의뢰수급자 이외의 참여자 등록

⇒ 조건부수급자로 전산의뢰 되지 않는 생계급여수급자는 전산 등록시 “**비의뢰수급자**”로 등록 관리하고 훈련참여지원수당 부지급



근로무능력자의 참여 제한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시설보장수급자를 의뢰·추천을 받아 참여시 취업의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반려 또는 미참여 조치 가능

1.2.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차차상위계층)의 구성원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여부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통해 확인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상한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A)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소득인정액 (B=A×0.6)	1,003,263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4,216,415
보험료 (B×0.0312)	31,302	53,298	68,949	84,599	100,250	115,901	131,552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8인가구: 7,863,411원)

1.3. 취업맞춤특기병

-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참여 요건을 갖춘(가구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18~24세의 육·해·공군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고졸 이하자(대학중퇴자 포함), 폴리텍대학·학점은행 등을 통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방통대 재학 또는 졸업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의 추천(의뢰)을 받은 자

1.4.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 이미 폐업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연 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의 영세자영업자 중 취업의사가 있음이 확인되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 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에서 추천대상자의 연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임을 확인(추천서에 명기)한 후 추천한 경우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서는 연매출액에 대한 추가확인 생략
 -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지 여부만 추가 확인

2. 특정계층

2.1.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 부랑하거나 쪽방 및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 노숙인(부랑인 포함)이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노숙인 쉼터 등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제2조(정의)

2.2.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부터 보호 및 지원을 받는 자로서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 거주지 보호기간은 북한이탈주민 확인서에 기재된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간을 말하며,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일이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으면 참여 가능

2.3. 신용회복지원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회복 지원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조정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국민 행복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파산선고 등을 받고 면책(복권) 결정이 되지 아니한 자

2.4.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부 또는 모가 결혼이민자로서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된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로서, 취업성공 패키지 신청일을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를 부여받은 자

· 지원가능 연령 :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 확인방법 : 결혼이민자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외국인등록증 등을 통한
체류자격 확인

* 출생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서류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등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중도입국)자녀의 경우 고용에 필요한 최소 한국어능력을
갖춘 자로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위한 “한국어기초능력진단”의 초급 1급
이상의 한국어 수준에 준하는 자여야 함

- 따라서 『한국어기초능력진단 평가기준』에 준하여 ‘자기소개하기, 물건사기,
음식주문하기 등’과 같은 ‘생존에 필수적인 기초 대화’를 질문하여 답변할 능력이
있는지 상담사가 질의하여 판단한 후 참여 여부를 결정

- 다만, 한국어기초능력진단 초급 1급 이상 이나 상담사가 판단하기에 실제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등 참여 자격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고용센터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판단

- 언어능력이 부족하여 패키지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한국어능력 함양 등과 같은
다른 연계 서비스 수료 후 참여하도록 안내 → 유예제도 적극 활용

2.5. 위기청소년

○ 학교 중도탈락, 가출, 폭력, 학대피해·범죄피해·성매매 등 제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 검정고시 학력인정자나 고교 조기 졸업자로서 만 15~18세의 비진학 청년

*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및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도 제적증명서
또는 자퇴서 등의 증명서 제출시 위기청소년 유형으로 참여 허용 가능

2.6. 니트족(NEET)

○ 최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만 18~34세 이하)

※ 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 대상자 적합도 문답표(부록 5)를 작성하여 21점 이상이면 니트족으로 판정

2.7. 여성가장

- 가족 또는 동거인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가장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면서, ①만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 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②55세 이상의 (시)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또는 ③장애인인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무관)을 부양하는 여성 가장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복지법상 3급 이내 장애인
 - 미혼자이나 동거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준하되, 자녀가 아닌 동거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로 포함

2.8.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다음의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2.9.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연속, 비연속 불문) 특수형태근로에 종사중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자
 - ① 화물자동차 운전자, ②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③ 학습지교사, ④ 골프장 경기보조원, ⑤ 보험설계사 ⑥ 택배·퀵서비스 기사 ⑦ 신용카드모집인 ⑧ 대리운전원 ⑨ 대출모집인
 - 소득세납세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상 월 평균소득(세전)이 250만원(연 3,000만원) 미만인 자(확인 불가시 참여불가)
- *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소득세납세증명원, 미 등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2.10. 건설일용직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직전 180일 중 30일 이상을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자

2.11. 장애인

- 2017년부터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의 경우 공단으로 우선 연계
- 다만, 장애인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 정한 I 유형 또는 II유형에 해당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고용센터(I 유형) 또는 위탁기관(II유형)에서 진행 가능
- * 예) I 유형 참여대상인 여성가장이 장애인인 경우 우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연계하되, 참여자가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진행 가능
- 또한, 자치단체에서 의뢰되는 조건부수급자는 고용센터에서 사전단계 진행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 조치

2.12. FTA 피해 실직자

- 자유무역협정이 원인이 되어 생산량·매출액 등이 감소하여 실직한 자
 -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1조에 따른 폐업 사업주 및 실직근로자
 -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폐업지원을 받아 폐업한 농어업인

2.13. 미혼모·한부모

- 미혼모 시설 또는 한부모 시설에 입소해 있는 미혼모 또는 한부모로 미혼모 시설 또는 한부모 시설의 추천을 받은 자
- 미혼모 또는 한부모 시설에 입소하지는 않았지만 고용센터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사실상 미혼모·한부모로 인정되는 자

2.14. 기초연금수급자

- 65세~69세 장년층 중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인 자)로
 -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하는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를 통해 참여자격 확인

Ⅲ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Ⅱ 유형)

1. 청년층(만18~34세 이하, 소득기준 미적용)

1.1.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 대학 중퇴자는 고졸이하 비진학자로 간주
- '18년 2월말 고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18. 1. 1. 이후 참여 시 참여유형은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미취업자로 분류

1.2.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재학생

- 고등학교 마지막학년 재학생
 - * 마지막 학년이 되는 해의 1.1일 이후부터 참여 가능(고교 재학생 참여자는 나이 무관)
 - * 패키지 참여 중 상급학교 진학시 중단으로 종료처리

1.3. 대학교 및 대학원 마지막 학기 재학생

- 대학교 및 대학원 등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
 - * 참여자가 신속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경우 2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5월1일 부터, 8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11월1일 부터 참여 가능(예: '19년 2월 졸업 예정자의 경우 '18.5.1부터, '19년 8월 졸업자예정자의 경우 '18.11.1부터 참여 가능)
 - * 패키지 참여 중 상급학교 진학시 중단으로 종료처리
 - * 교육 편제 단위 표준분류체계 중(소)분류 ①약학(약학·한약학), ②간호(간호학), ③의료(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④교육(유아교육) 분야 재학생은 졸업 예정년도 1.1일(또는 7.1일)부터 참여 허용
-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원) 학생 참여 허용

1.4. 대졸이상 미취업자 : 대학교(전문대 포함)를 졸업한 자

- 대학 수료자는 졸업자로 간주하되, '18년 2월말 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18. 1. 1. 이후 참여 시 참여유형은 대학(원) 졸업(예정)자로서 미취업자로 분류



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 중 청년층에 대한 참여유형입력(워크넷)

- ⇒ 워크넷 전산망상 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청년층) 참여자로 구분된 취업맞춤특기병,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특별고용지원업종(조선업종)종사자,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등의 세부 참여유형은 통계 관리 목적으로 계속 유지
- ⇒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층의 경우도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고교·대학(원) 재학생, 대졸이상 미취업자 중 어느 하나의 유형으로 입력

1부

취업성공패키지 세부 운영

2. 중·장년층(만35~69세 이하)

2.1.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미취업자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상한(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A)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소득인정액 (B=A×1)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보험료 (B×0.0312)	52,170	88,829	114,914	140,999	167,084	193,169	219,254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8인가구: 7,863,411원)
- ※ (직장가입자)보험료: 중위소득 100% 금액× 0.0312(직장건강보험료율)
- ※ 직장가입자는 위의 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참여를 결정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에 1.2(조정계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참여를 결정

* 35세 이상 69세 이하인 고교 마지막학년 및 대학 마지막학기 재학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인 경우 참여 가능

2.2. 기타

2.2.1. 사업자등록자, 임대사업자 등

-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사업자등록자의 경우 개업한지 1년 이상(과세표준증명원 확인)이고, 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참여 가능
- * 다만, 사업자등록자, 임대사업자 등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는 '2.1.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으로서 미취업자' 요건으로 참여 허용

2.2.2.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 이미 폐업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연 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의 영세자영업자 중 취업의사가 있음이 확인되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 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가 35세 이상 69세 이하인 경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에서 추천대상자의 연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임을 확인(추천서에 명기)한 후 추천한 경우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서는 연매출액에 대한 추가확인 생략

2.2.3.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으로, 1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로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 가구원
 - 단,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1개월 미만 고용유지 근로자는 제외
 - 근속기간 및 임금지급 금액 등에 대한 확인은 고용보험 전산망을 기준으로 하되,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최종 이직 당시 급여지급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급여지급명세서 등으로 증빙 필요

2.2.4. 산재 장해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 10~12급 실업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자
(아래 대상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임)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무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2.2.5.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관리 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6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당해 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이직 후 실업상태인 자

2.2.6. 기업활력제고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기업활력법에 따른 실직자의 참여 신청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중위소득 150% 이하 중장년까지 참여 허용
 -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명단은 추후 별도 통보

2.2.7.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로 경영악화에 의한 고용조정실직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근무하다 경영악화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로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중 참여 신청자
-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은 사업으로서 매출액의 1/2이상이 지정업종과 관련된 기업에서 근무하다 경영악화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로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중 참여 신청자

IV 참여대상자 선정절차 및 요건 확인

1. 참여대상자 선정 절차(Ⅰ·Ⅱ유형 공통)

1.1. 개 요

- 참여대상자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증빙자료 확인 내지 선정·제외기준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결정
- 참가신청서 접수 시, 관련요건 충족여부 등을 신속히 확인·판단하여 참여대상자에게 7일 이내 통지

1.2. 참가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패키지 전산망 또는 고용센터 직접 방문
 - (On-Line) 유선으로 참여대상 요건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시 초기상담 일정과 관련서류 제출을 안내
 - ※ 생계급여수급자(조건부수급자·조건부과제외자)도 초기상담 시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접수 처리
 - (Off-Line) 참가신청서(서식 1) 및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
 - 관련 서류 일부가 누락된 경우 고용센터를 재방문하여 제출토록 하기 보다는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 받아 신청서를 보완한 후 접수 처리
 - ※ 접수 시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관련 서류 간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 기재사항은 즉시 보완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작성)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하여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2)도 작성토록 안내

1.3. 사업 및 일정 등 안내

- 신청인에게 패키지 주요 내용과 참여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의 취업지원 일정 등을 안내

- **(직업훈련)** 신청자 중 직업훈련 희망자가 많고, 훈련수료 후 다시 패키지에 참여하는 자가 많으므로 신청서 접수시 아래 사항을 충분히 설명
 - ① 이미 일반 내일배움카드(200만원 한도, 자부담 5~50%)를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계좌 전환 가능*
 - * HRD-Net에서 처리 가능하나, 불가할 경우 한국고용정보원 능력개발팀(내일배움카드 시스템 담당) 공문 조치 요청
 - 이 경우 기 발급된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1년) 내에서 패키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내일배움카드 한도(200~300만원)에서 이미 사용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사용 가능
 - ※ (예시) 먼저 일반 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하여 4개월 동안 50만원을 사용한 A가 패키지에 참여시 잔여 8개월간 250만원 사용 가능
 - ② 훈련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훈련이 종료(수강포기 포함)된 경우 전환
 - ③ 참가신청서에 현재 일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한 경우, 고용보험 전산망 확인을 통해 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상세히 안내
 -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도 추후 고용보험 전산망 확인을 통해 '계좌중지' 처리됨에 유의 → 실업자가 아닌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적용
 - ④ 패키지 사업 대상자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중단,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 처리되었을 경우 계좌 유효기간(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일반 계좌로 전환 가능
 - ※ 이 경우 일반 계좌 한도(200만원) 내에서 사용 가능
- **(불성실 참여자에 대한 제재)** 불성실하게 참여할 경우 취업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전 회차 취업성과에 따라 최대 2년 6개월간 재참여 할 수 없음을 상세히 안내

1.4. 참여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

-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선정결과를 유선 통보하고 상담 참여일정 통보서 송부(서식 6)

※ 참여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등)인 경우에도 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참여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서를 수급자에게 송달하고, 해당 자치단체에도 문서로 통지

- 관련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
- 온라인 신청자의 경우 참여대상자 선정결과 통보는 초기상담 시 관련서류 확인 후 통지
- 신청인이 참여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1.5. 참여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는 고용센터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접수증을 발급하고,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 ※ 이의신청서 접수시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보완 조치
 - ※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사유를 기재하여 민원인에게 연장 통지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

2. 참여자격 관련서류 확인

2.1. 취업성공패키지 I

- ① (생계급여수급자) 자치단체에서 전산으로 의뢰되는 조건부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는 관련서류 불요
 - 다만, 패키지 중단 내지 종료 경력이 있는 자는 재참여 제한 규정이 있으므로 중단, 종료 또는 유예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참여 여부 결정
 - * 자치단체 의뢰없이 본인이 직접 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급적 해당 자치단체에 전산으로 의뢰를 요청

- 보장시설수급자는 보장기관(자치단체)의 추천서 또는 보장시설기관장(복지시설 등)의 추천서(전산의뢰자 제외)

②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아래의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할 경우 ①·②·③ 자료 제출 불요(신청자에게 동의서 징구)

①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고,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한 경우 요청

② 건강보험증 사본

③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또는 납입고지서(미납자)

④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수혜대상 가구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시 ②·③ 자료 제출 불요

〈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현황 〉

사업명	소관부처 (집행기관)	적용대상	지원내용
의료급여패키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중위소득 40 - 50% 이하 가구	- 의료급여 1종 : 비급여항목 제외 의료비 전액 - 의료급여 2종 : 비급여항목 제외 의료비 90%
장애(아동)수당 패키지	보건복지부 (자치단체)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경우> - 장애수당 : 4만원 - 장애연금 : 4~22만원 - 장애아동수당 : 중증(15만) · 경증(10만)
한부모가족 패키지	여성가족부 (자치단체)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10만) · 고교생 학비 - 복지자금 융자 등
방과 후 보육료	보건복지부 (자치단체)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일반아동 10만원 - 장애아동 21만9천원
고교생 학비 지원	교육부 (교육청)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고교생 학비 지원
저소득층 · 농산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	교육부 (교육청)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학교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연탄보조 쿠폰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광해관리공단)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연탄보조 쿠폰 지급
심야전력 요금 할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생계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심야전력요금 할인 * 수급자 : 20%, 차상위계층 : 18%

③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관련기관 확인(추천)서(서식 3)

참여대상자	관련기관명	비 고
비주택거주자	부랑인복지시설 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 국토교통부 · 행정자치부	•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확인(추천)서 • 노숙인쉼터 입소자 확인(추천)서 • 상담보호센터 보호자 확인(추천)서 • 비주택거주자 확인(추천)서 ※ 관련기관의 추천이 원칙이나, 추천이 없더라도 비주택 사실을 증명할 경우 참여 가능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담당관	• 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서
신용회복지원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회복지원 확정 승인통보서 또는 추천서

- ④ (결혼이민자) ① 외국인등록증(F-2, F-5, F-6로 참여하는 경우)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체류자격변경 귀화증명서(국적 취득한 경우)
 ③ 혼인관계 증명서(필요시)
- ⑤ (위기 청소년) ① 청소년상담 및 보호시설(소년원 ·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 보호관찰소 등 청소년 보호시설, 사회복지기관, 관련 민간단체 등)의 확인(추천)서
 ② 위기청소년 참여대상자 요건에 준하는 자로서 학교, 사회복지관 등 외부 관련기관의 의뢰가 있는 경우 또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참여 필요성을 고용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 참여 가능
 ③ 개별참여자의 경우 제적 증명서, 자퇴서 등의 증명서로 확인 가능
 *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및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도 제적증명서 또는 자퇴서 등의 증명서 제출시 위기청소년 유형으로 참여 허용 가능
- ⑥ (여성가장)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자료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가 없는 여성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배우자가 있는 여성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 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 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⑦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대상자) 아래 법령에 따라 보훈(지)청에서 발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서식 5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⑧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확인

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세납세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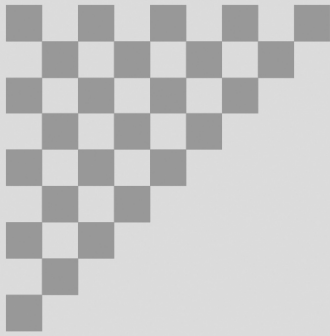
⑩ (FTA 피해 실직자) “FTA 신속지원팀”에 확인

⑪ (취업맞춤특기병)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취업맞춤특기병 지원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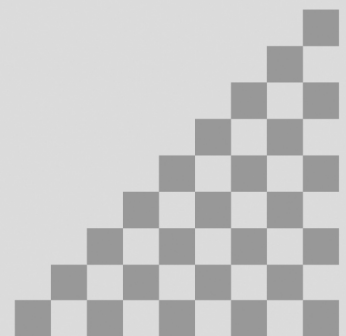
⑫ (미혼모·한부모) 미혼모·한부모 시설의 추천서

2.2. 취업성공패키지II

- ① (상급학교 비진학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학교장 또는 보호자 확인서
- ②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신분증
- ③ (대학·대학원) ① 마지막 학기 재학생 : 학교장의 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② 졸업생 : 졸업증명서
- ④ (중장년층) 아래의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할 경우
 ①·②·③ 자료 제출 불요(신청자에게 동의서 징구)
 - ①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고,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한 경우 요청
 - ② 건강보험증 사본
 - ③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또는 납입고지서(미납자)
- ⑤ (영세자영업자) 영세자영업자는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시 제출 불요(신청자에게 동의서 징구)
- ⑥ (취업맞춤특기병)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취업맞춤특기병 지원확인서」



단계별 취업지원 내용



I

제1단계 : 진단·의욕증진·경로설정

1. 1단계 과정의 의의 및 절차

1.1. 의의

- 취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개인의 취업역량, 적성 등을 진단하는 한편,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의욕을 높이고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 경로를 설정하는데 목적
- **(취업지원의 출발점)** 진단·의욕증진·경로설정 단계는 통합적 「취업지원」의 1단계 과정이며, 전체 패키지 운용의 첫 단계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
- **(취업지원의 전제조건)** 개인별 특성을 감안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진행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향후 진행될 취업지원의 기본설계도로서 기능
- **(참여자와의 신뢰 형성 과정)** 심층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참여자와의 라포(rapport) 정도에 따라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대한 신뢰 및 프로그램의 적극적 참여 여부를 좌우
- **(취업역량 파악)** 상담, 직업심리검사 등을 통하여 참여자의 취업역량을 파악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1.2. 취업활동계획 수립 절차

- 초기상담 및 구직등록 → 프로파일링(취업역량평가) →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상담 →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의 참여를 통한 취업의욕 향상 및 기술 습득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는 절차로 진행
- ① **(초기상담 및 구직등록)** 초기 기초상담을 통해 개인특성(특히 취업취약성)을 판단하고 ‘내일을 위한 약속’을 부과하여 참여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 구직등록 미등록자는 구직등록을 실시하여 취업(창업)에 대한 목표를 인지하게 함

- ② **(취업역량평가 실시)** 참여대상자의 취업취약성과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취업역량평가지에 따라 개인별 취업역량 평가(초기상담일에 실시)
- ③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상담)**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를 1종 이상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심층상담을 제공
 - 참여자가 자신에 대한 이해와 구직에 대한 의욕 정도를 알 수 있도록 지원
 - 다만, 참여자가 이전에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였다면 신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존 검사결과를 활용하여 심층상담을 하는 것도 가능
- ④ **(과제 제시 및 맞춤형 상담)** 참여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직의욕을 높일 수 있는 과제 ▲직업훈련 및 취업분야, 관심 직무와 직종 등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과제를 부과
 - 또한, 과제이행 결과를 토대로 하여 참여자의 취업취약성을 극복하도록 지원하고, 직업·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구직목표를 설정하도록 상담
- ⑤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제공)** 여타 구직자 또는 취업애로계층과의 교류를 통해 구직의욕을 높이고, 취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참여를 안내
- ⑥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1단계 과정 동안 참여자는 진단과 의욕증진의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취업(창업) 희망 분야를 결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
 - 자기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전담자는 실행가능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도록 조언과 상담을 제공

2. 1단계 운영원칙 및 운영기간

2.1. 운영 원칙

- 1단계는 개인의 취업의욕 및 역량에 대한 진단을 기초로 개인별 '취업지원경로'를 설정하는 과정

- 따라서 개인에 대한 진단이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워크넷에 있는 직업심리검사 중 1종을 필수적으로 실시
 - 다만, 참여자가 이전*에 워크넷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였다면 신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존 검사결과를 활용도 가능
 - * 참여자의 이전 직업심리검사 실시결과에 대한 활용여부는 상담자가 판단해 결정하되, 다만 초기상담일 기준 1년 이내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또한, 참여자의 취업의욕·역량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는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안내
- 고교 최종학년 및 대학(원)생 최종 학기 재학생 등 청년층이면서 I 유형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고용센터에서 I 유형 프로세스 및 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 낙인효과 등을 의식하여 또래와 동일한 II유형으로 서비스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동의서*(서식 52) 등 제출 후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서비스 받을 수 있음 (이때 각종 참여자 수당도 변경된 II유형 기준으로 지급)
 - * 민법에 따라 20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참여자의 동의 뿐 아니라 친권자(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도 받아야 함

2.2. 운영 기간

- ① 1단계는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등 IAP 수립을 위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
 - 초기상담일부터 IAP 수립일까지 3~5일 간격으로 개별 대면상담 최소 3회 이상 실시하되 최소 21일간은 운영
 - 유예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장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
- ② 다음과 같은 참여자는 **최소 1주(대면상담 2회) 운용가능**
 - 패키지 재 참여자(2회 이상)의 직전 회차 취업성과가 '6월 이상 취업'인 자
 - II유형(청년 및 중장년) 참여자로서 취업역량평가 결과 C등급 이상인 자

2.3. 상담내역 기록

- 전 단계에 걸쳐 참여자와의 상담 및 지원 내역을 철저히 전산에 입력 관리
- 담당자 변경, 참여자 이관, 재참여 등의 사유 발생시 참여자의 서비스 내역을 충분히 파악,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

3. 1단계 세부프로그램 내용

3.1. 초기상담 및 구직등록

□ 의 의

- 참여자의 ① 취업관련 특성과 제반 여건에 대한 기본 정보 파악 및 ② IAP 수립을 위한 제반절차 안내 등을 통해 참여자와 라포 형성

□ 초기상담 실시시기

- 선정된 참여자는 유선통보 또는 「상담 일정 통보서」(서식 6)상의 상담일시에 초기상담 실시
 - 가능한 한 고용센터 최초 방문일에 참여자 확정 및 초기상담을 실시하여 참여자 편의 제공
- 다만, 참여자가 상담일 3일전*에 상담일시 변경을 희망할 경우 당초 지정된 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재지정
 - * 따라서, 상담자는 초기상담일 3일 전에 참여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초기상담일시에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
 - * 참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상담일시 변경의사를 상담 3일 전 이후 알려진 경우도 적극적 참여의사를 감안하여 변경·조치
- 만약, 참여대상자가 초기상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2차 통지를 하고, 2차 통지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중단 조치

□ 초기상담 실시요령

- 초기상담은 최소 30분 이상 실시



초기상담 전 확인사항

⇒ HRD-Net(내일배움카드 발급여부 및 유효기간, 수료 및 수강포기 횟수), 고용보험 전산망(피보험자격취득), 복지연계전산망(복지사업 참여여부), 일모아시스템(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작성 여부, 선정된 참여자의 결격사유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청년층의 경우 자가진단 결과를 확인, 상담에 활용

- 상담시 참여자의 가정환경, 직업이력과 취업역량 등의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내실 있게 실시
 -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1단계(진단·의욕증진·경로설정) 과정이 갖는 의미와 내용, 진행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과정 진행에 앞서 상세히 설명*
 - * 과정진행절차 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민원(계획 하나 만드는데 왜 자꾸 오라고 하느냐는 불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상담분위기)** 참여자와의 라포 형성을 위한 편안한 상담분위기 조성
 - **(상담시간)** 참여자의 취업관련 제반 여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담시간을 충분히 확보
 - **(참여자 적극적 참여 유도)** 상담이 개인 신상파악에 그치지 않도록 참여자에게 취업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 제공**
 - * 희망하는 직업 내지 직종, 희망직종 취업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등등
 - ** 초기상담 중간 또는 말미에 질문을 하거나 다음 상담일까지 생각해 볼 과제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
 - **(내일을 위한 약속 작성)** 담당자는 내실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는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상호 약정인 「내일을 위한 약속(서식 15)」을 작성하고, 참여자에게 1부 배부

※ 참여자가 '내일을 위한 약속'을 본인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사업 참여를 담보하기 위한 일종의 '각서'로 인식하지 않도록 유의

※ 참여 도중 자격 변경(조건부수급자를 제외한 I 유형 및 II 유형 ⇔ 조건부수급자)이 있을 경우 사전 고지토록 안내

○ 상담완료 후 상담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 참여자를 앞에 두고 상담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은 지양

□ 구직등록

○ 구직등록은 기본 인적사항과 직업이력 및 희망직종 등에 대한 개략적 구직정보를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

○ 초기상담과 엄격히 분리하여 실시할 과정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초기상담과 동시에 실시

- 다만, 담당자의 상담 편의 등을 위해 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먼저(先) 등록하는 것도 가능

- 그러나 온라인으로 신청한 자는 구직등록을 전제로 접수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구직등록은 필요하지 않으나, 구직등록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 확인하여 수정 입력

○ 구직등록은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가 종료될 때까지 유효한 상태로 유지

○ 구직등록은 관련 지침 또는 매뉴얼에 따라 입력

3.2. 참여자 취업역량평가

□ 개 요

○ 취업역량평가는 사전에 취업역량을 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조기 진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 1단계 초기상담일에 취업역량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IAP를 수립하여 참여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실시 원칙

- 1단계 초기상담시 취업역량평가 실시
 - 참여자의 정확한 취업역량평가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만 활용
- 취업성공패키지 I·II 유형 모두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가 직접 실시
 - * 인턴, 공익요원, 업무지원자(민간기관) 등 비전문가의 취업역량평가 실시 금지
- ▲구직욕구 ▲건강상태 ▲연령 ▲학력수준 ▲미취업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자격증 보유 ▲경제적 취약성 ▲취업준비기간 등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유형(저소득층, 청년층, 중장년층)에 따라 해당 유형별 취업역량평가 설문지를 참여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여 상담자의 개입 최소화
 - ※ 다만, ▲구직욕구, ▲건강상태는 가능한 상담사가 직접 질문하여 기입

□ 취업역량평가 실시 및 채점방법

* 참여자에 대한 취업역량평가 배점 및 평가등급 기준 점수

- 실시 방법
 - (1단계) 구직욕구 및 건강상태 설문 항목 질문 및 응답
 - (2단계) 연령대, 학력수준, 미취업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취업관련 자격증 유무 등 유형별 판정기준 질의 및 응답
- 취업역량평가(사전진단) 채점 방법(판정기준 및 배점표 참조)
 - ① (구직욕구) Σ [1~8 문항 선택 값](합) / 40점(만점) × 유형별 가중치
 - ② (건강상태) Σ [1~3 문항 선택 값](합) / 15(만점) × 유형별 가중치
 - ③ (기타) ▲연령, 학력수준, 미취업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취업관련 자격증 유무, 취업관련 직업훈련 경험 등은 해당항목에 체크

□ 취업역량평가 활용

- 취업역량 판정 기준 점수에 따라 4가지 수준의 취업역량 집단으로 구분하고, 평가 등급을 참고하여 IAP 수립 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 취업역량평가 등급 구분 〉

등급		점수구간					
		I 유형			II 유형		
		일반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청년 일반	청년 재학생	중장년
A등급	매우 낮음	44점 이하	42점 이하	43점 이하	42점 이하	43점 이하	43점 이하
B등급	낮음	45~62점	43~53점	44~60점	43~54점	44~50점	44~60점
C등급	보통	63~74점	54~71점	61~73점	55~67점	51~60점	61~74점
D등급	높음	75점 이상	72점 이상	74점 이상	68점 이상	61점 이상	75점 이상

- A등급 : 집단상담프로그램, 직업훈련, 동행면접 등 적극 제공
- B등급 : 집단상담프로그램 적극 제공
- C·D 등급 : 가급적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참여 제한, 직업훈련 관리 강화

〈 I 유형 참여자 취업역량평가 기준 및 배점〉

판정기준	세부기준	배점			기준에 대한 설명
		일반	결혼 이민자	북한이탈 주민	
구직욕구	설문지	13	12	12	• 취업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의미하며, 구직욕구진단(지필)을 통해 평정
건강상태	설문지	15	14	14	• 취업하기 위한 신체 및 정서적 건강상태를 의미하며, 간편 근로능력검사 통해 평정
연령	15~19세	1	1	1	• 참여자 연령
	20~34세	5	5	5	
	35~49세	3	3	3	
	50~64세	2	2	2	
	65~69세	1	1	1	
학력수준	중졸이하	1	1	1	• 참여자 최종 학력
	고졸	3	3	3	
	전문대졸이상	6	5	5	
미취업기간	1년이상	3	2	2	•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참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내 미취업 기간
	6개월~1년 미만	9	8	8	
	6개월 미만	13	11	11	
고용보험 가입기간	없음	3	3	3	• 참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
	6개월~1년미만	11	10	10	
	1년이상	17	15	15	
취업관련 자격증 여부	-	11	10	10	• 취업희망 직종과 관련 자격증(국가(기술) 자격, 국제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등) 보유 여부
미취학자녀 유무	없음	7	7	7	• 미취학(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유무
	있음	3	3	3	
취업준비 기간	1개월미만	4	3	3	• 참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내 취업을 준비한 기간
	1~6개월미만	10	9	9	
	6~12개월미만	13	11	11	
	12개월이상	8	7	7	
한국어 능력	매우 잘함		10		• 한국어 구사능력
	잘하는 편		8		
	보통		5		
	서툰 편		3		
	매우 서툰		1		
대한민국 거주기간	3년 미만			3	• 대한민국에서의 거주기간
	4~6년			6	
	7년 이상			10	

〈 II유형 참여자 취업역량평가 기준 및 배점 〉

판정기준	세부기준	배점			기준에 대한 설명
		청년일반	청년재학생	중장년	
구직욕구	설문지	12	16	11	• 취업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의미하며, 구직욕구진단(지필)을 통해 평정
건강상태	설문지	10	13	15	• 취업하기 위한 신체 및 정서적 건강상태를 의미하며, 간편 근로능력검사 통해 평정
연령	15~19세				• 참여자 연령
	20~34세				
	35~49세			3(35-49세)	
	50~64세			2(50-64세)	
	65~69세			1(65-69세)	
학력수준	중졸이하			1	• 참여자 최종 학력
	고졸			3	
	전문대졸이상			6	
미취업기간	1년이상	2		2	•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참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내 미취업 기간
	6개월~1년 미만	6		8	
	6개월 미만	9		12	
고용보험가입기간	없음	3		2	• 참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
	6개월~1년미만	6		7	
	1년이상	11		14	
취업관련 자격증여부	-	8	11	10	• 취업희망 직종과 관련 자격증(국가(기술)자격, 국제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등) 보유 여부
미취학자녀 유무	없음	3		3	• 미취학(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유무
	있음	1		1	
취업준비기간	1개월미만	3	5	3	• 참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내 취업을 준비한 기간
	1~6개월미만	10	13	12	
	6~12개월미만	12	15	16	
	12개월이상	7	10	8	
취업희망시기	3개월이내	10	13		• 취업을 희망하는 시기
	6개월이내	8	10		
	1년이내	4	5		
취업희망기관유형	중소기업	10	13		•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 유형
	중견기업	8	10		
	대기업 또는 공기업	5	6		
어학연수경험 또는 어학점수 유무	유	7	8		• 어학연수경험 또는 참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내 취득한 공인외국어능력시험점수(등급) 유무
	무	3	4		
대학전공 (고교유형) * 대학원생은 -1점	의·약·간호·유아교육	8	11		• 대학재학생(졸업생): 대학전공 고교재학생(졸업생): 고교유형
	사회·공학·자연·교육	6	9		
	인문·예체능	5	7		
	특성화고	4	5		
	일반계고	3	4		
	중졸이하	1			
가구소득 (중위소득기준)	60-80%			10	• 중위소득 기준 가구소득
	80-100%			7	
	100%이상			4	

〈 취업역량평가 판정 설문지 : 구직욕구 〉

항 목	전혀 안함	3개월에 한번	1개월에 한번	2주에 한번	1주일에 1회 이상
1. 인터넷, 신문, 잡지, 생활정보지, 책자 등을 통해서 최근 취업 정보를 수집한다.	1	2	3	4	5
2. 고용센터나 지방자치단체 취업센터, 취업소개소를 방문하여 취업정보를 수집한다.	1	2	3	4	5
3. 구인구직 만남의 날, 취업박람회에 참석한다.	1	2	3	4	5
4. 내가 일하고 싶은 회사에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한다.	1	2	3	4	5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취업할 수 있다.	1	2	3	4	5
6. 대부분의 사람이 기피하는 일이라도 일단 취직하겠다.	1	2	3	4	5
7. 제시된 임금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선 취업하겠다.	1	2	3	4	5
8. 나는 일자리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취업하겠다.	1	2	3	4	5

〈 취업역량평가 판정 설문지 : 건강상태 〉

문1. 다음은 귀하의 근로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진술문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해당란에 “√” 표시 해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 근로능력이 있다	1	2	3	4	5
2) 나는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1	2	3	4	5
항 목	1주에 한번 이상	2주에 한번 정도	1개월에 한번 정도	3개월에 한번 정도	없음
3) 질병(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병원(약국) 방문횟수는?	1	2	3	4	5

3.3. 직업심리검사 실시 및 결과 해석

□ 개 요

- 참여자의 직업선택 및 직업생활 관련 심리적 속성을 파악하여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데 목적
- 직업심리검사는 워크넷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검사 가운데 대상자 특성에 맞는 최소 1종을 선택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필수적으로 실시
- 직업심리검사 종류는 대상자 특성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나, 구직준비도검사 → 직업선호도검사 순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 먼저, 구직준비도검사를 통해 대상자의 구직의욕과 능력수준을 진단한 후 다음 회차에 직업선호도검사(L형)를 통해 구직자가 흥미를 느끼고 잘 적응할 수 있는 업무를 설명하여 동기 부여하는 맞춤형 상담 실시
- ☞ 직업심리검사별 특징과 해석 방법 등은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를 위한 1단계 도구·자료 가이드> 참조(별책 자료 참조)

〈 워크넷 성인용 직업심리검사 종류 〉

검 사 명	내 용	방법	소요 시간
구직준비도검사	실직 후 사회적·심리적으로 적절하게 적응하고 있는지, 재취업 의지와 재취업에 필요한 구직기술이 있는지 평가	지필 · 인터넷	20분
직업가치관검사	직업 및 직장선택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측정하고 적합한 직업분야를 탐색할 수 있음		20분
직업선호도검사 (S)	성인이 좋아하는 활동, 관심 있는 직업, 선호분야를 측정, 수검자의 흥미유형에 적합한 직업들을 제공		20분
직업선호도검사 (L)	성인의 직업흥미, 일반성격, 생활경험을 측정, 수검자의 심리적 특성에 적합한 직업들을 제공		60분
직업전환검사	직업을 전환하여 재취업하고자 하는 현직자나 구직자에게 전환 후 적응성공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 추천		20분
창업적성검사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사업가적 적성이 있는지를 진단하고 어떤 업종으로의 창업이 적합한 지 판정		20분
직업적성검사	11가지 기초적성을 평가하여 수검자가 어떤 능력에서 뛰어난지 또는 취약한 지를 탐색, 수검자의 적성에 적합한 직업을 안내		90분

* ‘구직준비도검사·직업전환검사·창업진단검사’는 일반적 소요시간(제한시간 없음)
 * 기존 구직효율성검사는 2012년 이후 구직준비도검사로 개정됨

□ 실시시기

- 직업심리검사는 초기상담일 이후, 가급적 2~3차 상담일에 실시

□ 실시방법

- **(사전 안내)**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검사의 의의와 종류, 실시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
 - 다만, 참여자가 직업심리검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검사 취지 및 검사 필요성 등을 설명하여 설득
 -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업심리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을 중단
- **(검사종류 선택)** 참여자로부터 파악하고자 하는 속성 및 참여자 수준(인지·정서적 발달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택
 - ※ 검사의 종류는 대상자 개인별 특성을 감안하여 판단하고, 워크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검사 중 선택하여 실시
 - 1차적으로 시간, 채점 등의 측면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검사를 선택하되,
 - 과거 유사 직업심리검사를 받았던 이력 등을 감안하여 구직준비도검사(구직 효율성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직업선호도검사 등 대상자에 적합한 직업심리검사 추가 실시
 - ※ 직업선호도검사 L형은 실시에 60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참여자 의사를 사전에 파악, 시간을 미리 예약하여 실시
- **(검사 실시)** 검사 종류별 검사시간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되, 수검자 입장에서 판단·조치
 - 직업선호도검사 L형 같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검사는 가급적 독립된 공간에서 실시되도록 조치

□ 직업심리검사 실시 시 고려사항

- 담당자는 직업심리검사 목적과 장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수검자가 자발적으로 검사에 참여하도록 동기 유발

- 직업심리검사 결과는 수검자의 심리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편안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도록 조치
 - 일반 민원접수대나 필경대에서 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에 대한 안내 없이 녹음 테이프만 틀어주고 수검자 혼자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양
- 검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저항감을 가지고 검사에 임할 경우 성실한 응답을 할 확률이 낮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음에 유의
- 아울러, 대상자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검사에 대한 저항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검사를 진행하기보다 검사를 보류하거나 중단하고 상담 실시
 - 상담진행이 어려운 경우 전문심리 상담 위탁 고려

□ 결과해석 시 고려사항

- 검사결과 해석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전문교육 내지 다양한 사례경험을 갖춘 상담자가 진행
 - * 각종 검사내용과 하위요인, 검사점수의 의미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
 - *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를 위한 1단계 도구·자료 가이드(별책 배포)>의 직업심리 검사 부분을 참고하여 직업심리검사에 대한 이해 제고
- 직업심리검사 결과 해석이 어려운 경우 유경험자 등의 협조를 받아 조치
- 검사결과 해석시 단순히 심리검사 결과만을 해석하지 말고 참여자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가지고 실시

〈 직업심리검사 해석 시 유의사항 〉

- ❶ 스스로 심리검사의 피검자가 되어보기
- ❷ 검사의 종류별로 전문 매뉴얼 숙지하기
- ❸ 심리검사의 한계를 인식하고 참여자를 검사결과만으로 단정하지 않기
- ❹ 상담의 목적을 고려하여 검사결과를 통합적으로 전달하기
- ❺ 참여자의 인지적 능력을 확인하기
- ❻ 참여자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검사결과 및 한계를 이해시키기
- ❼ 결과해석 후에는 직업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하기

3.4. 근로의욕 증진·취업기술 향상 프로그램 참여

□ 개 요

- 참여자의 근로의욕 증진, 취업기술 및 취업자신감 향상 등을 위해 (단기)집단상담 프로그램 또는 취업특강 실시
- 참여자가 다른 구직자와의 집단 활동과 교류를 통해 심리적 취약성과 구직스트레스를 극복하고,
 - 구직의욕과 취업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가급적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고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하되, 고용센터는 센터 내 팀간 협조를 통해 최대한 많은 대상자들이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위탁기관의 경우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한 집단상담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참여자의 구직의욕과 취업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운영

〈 집단상담프로그램 종류 및 운용 현황 〉

■ 집단상담프로그램 종류

구분	프로그램명	목표 및 주요 내용	적합대상	시간
1	성취프로그램	● 구직동기 부여와 구직기술 향상에 따른 장기실업의 가능성 예방, 상실된 자신감과 자존감의 회복을 통한 재취업 능력 제고	장기 구직자	5일 30시간
2	취업희망프로그램	● 자신감 향상 · 근로의욕 증진 ● 사회성(대인관계) 향상	심리적 취약계층	4일 22시간
3	행복내일프로그램	● 취 · 창업의욕 증진 및 대인관계 향상 ● 강점 파악 및 생애설계, 구직기술 강화	경제적 취약계층	4일 24시간
4	성실프로그램	● 고령자 취업 자신감 제고 ● 고령자 구직기술 향상	50세 이상	4일 24시간
5	주부재취업 설계프로그램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분야 설정 ● 선정된 분야에 재진입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천방안 모색	경력단절 여성	4일 24시간

구분	프로그램명	목표 및 주요 내용	적합대상	시간
6	결혼이민자취업지원 프로그램(WIND)	• 한국사회에서 취업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취업정보 제공	결혼 이민자	3일 12시간
7	청년층직업지도 프로그램(CAP+)	• 청년층의 합리적 진로직업 선택 지도 • 구직기술(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등) 향상	청년층	4일 24시간
8	청년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allA)	• 자기이해 심화, 인간관계 확장 • 삶에 대한 적극성 강화	청년 니트	4일 24시간
9	청년취업역량(청취력) 프로그램	• 역량기반 채용관행에 적합한 구직기술 강화 및 역량개발계획 수립	청년구직자	4일 24시간
10	Hi프로그램	• 고졸미취업청년을 위한 취업의욕 제고 취업기술과 직장적응력 강화	고졸미취업 청년층	2-3일 12시간
11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프로그램	• 북한이탈주민의 자기이해 • 남한의 직업세계 및 기업 이해 • 경력개발계획 수립	북탈이탈 주민	4일 28시간
12	WIN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분야 설정 및 계획 수립	경력단절 여성	1주 20시간
13	WIN+ (경단여성 직장적응 프로그램)	• 취업을 앞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자선감 및 직장적응 지원	경력단절 여성	4일 20시간
14	RE-WIN (경단여성 직장 재복귀지원 프로그램)	• 경력단절여성 대상 생애설계, 자신감 향상, 이미지 메이킹 등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	경력단절 여성	2-3일 12시간

※ 각 프로그램별 운영시간은 해당 프로그램 운영지침(매뉴얼)에 따라 운영

□ 기본원칙

-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취업의지·능력이 낮은 자를 대상으로 1단계(필요시 2·3 단계 중)에서 1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참여자가 2회 참여를 희망할 경우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참여를 허용하되 동일 프로그램 참여는 지양

- 다만, 집단상담프로그램 진행이 곤란할 경우 단기집단, 취업특강, 취업설명회, 과제부여 등 취업의욕 및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타 프로그램 사용 가능

- 집단상담프로그램·단기집단·취업특강에 참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취업 설명회, 과제부여 등 고용센터 내 활용 가능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연계 제공

□ 조치사항

① 참여자에 대한 조치 사항

- 프로그램과 관련한 오해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참여 예정 집단상담프로그램 명칭, 일정, 운용 절차 및 방식,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을 상세히 설명
- 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과정별 신청인원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됨을 정확히 안내 (참여과정 변경 가능성 포함)
- 프로그램 참여 여부 결정 및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 등은 프로그램 담당자가 수일 내 별도 연락함을 안내
- 참여자에게 1단계 참여수당은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짐을 안내
-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거나 출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취업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반드시 설명

②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용팀 등에 대한 조치사항

- 참여자가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용팀 등에 대상자를 통보하고,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전산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에 참여토록 조치
- 만약 해당센터에서 직접 운용할 수 없거나, 인소싱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취업지원집단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다른 센터에 의뢰
-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참여기간 중 가급적 1회 이상 연락
- 무단결석 등 프로그램 참여 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관련 사실이 즉각 통보되도록 프로그램 운용팀 내지 운용기관 담당자에 대해 사전 요청
- 1단계 운영 중 적절한 구인처가 확인된 경우에는 취업알선 희망 여부를 파악하고, IAP 수립 전이기 때문에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반드시 고지

□ 기타

- 1단계 운영 중 '중소기업탐방'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시 1단계 수당을 지급하고 참여결과를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반영

3.5. 전문심리상담서비스(EAP)와의 연계

□ 시기 및 대상

- 참여자 가운데 전문심리상담가에 의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서비스를 연계 제공
-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
 - ※ 심리상담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2·3단계 과정 중에도 지원 가능
- 전문심리상담은 참여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 대상으로 고려
 - ① 최근 2년 이내에 갑작스러운 생활여건상의 변화를 겪으면서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
 - ②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에 대한 의지가 상당 수준 약화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자
 - ③ 대인관계 등에 있어 상당한 불안 증세 등을 보임으로써 정상적인 과정 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④ 기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연계 방법

- 전문심리상담서비스는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
 - 전문심리상담을 받고 있음을 이유로 상담 등 다른 취업지원서비스를 기계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지양
- 참여자의 동의를 전제로 심리상담 추천(추천시에는 서식 16 활용)
 - 1단계 상담일정이 남아 있는 참여자는 상담일을 감안하여 심리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심리상담사와 협조)
 -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위탁 시 패키지 참여자에 대한 심리상담 진행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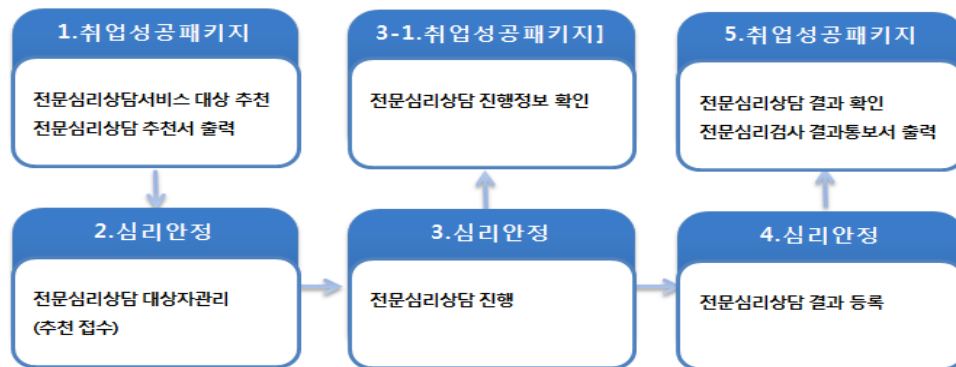
- 아울러, 참여자에게 단계별 진행에 관계없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개인당 최대 8회차까지 심리상담 가능

〈전문심리상담 전산 의뢰·실시 개관〉

- **(심리상담 추천)**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는 1단계 참여자가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EAP 상담사에게 전산으로 대상자 추천
- **(심리상담 실시)** 심리상담사는 상담을 실시하고 매 회기별로 상담내역을 EAP 전산 시스템에 입력
- **(결과 통보)** EAP 상담사는 상담결과를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에게 전산으로 통보
 - 심리상담이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에 완료되지 않더라도 그 때까지의 상담결과를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에게 전산 통보
- * 사전단계 참여자는 사전단계에서 전문심리상담 실시 가능
- **(상담결과 활용)** 전문심리상담 결과는 1단계의 IAP 수립에 활용

<취업성공패키지-심리안정프로그램 흐름도>



- 기타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심리상담이 가능한 기관 활용가능 (부록 10.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현황)

□ 전문심리상담 제공 전·후의 고려사항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이전에 전문심리상담의 의의 등을 참여자에게 자세히 안내

- 참여자 및 전문심리상담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함으로써 전문심리상담을 통한 참여자의 심경변화 등 파악
- 특히, 여타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간 중 심리상담 서비스를 센터에서 지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 심리상담사와 당일 상담내용 및 분위기 외 참여자의 상담기간 중 변화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

3.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비스 연계

※ 고용복지+센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복지+센터 표준운영 매뉴얼」을 참조

□ 서비스 연계의 의의

- 고용복지+센터는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서비스기관이 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한 번 방문으로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운영
- 고용복지+센터의 각 참여기관은 복합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해당기관으로 연계하도록 노력할 필요
 - 특히, 고용복지+센터에서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고용센터에서 취업성공 패키지 등을 제공받는 민원인 중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

-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참여자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연계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복지서비스 수요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연계
 - ※ 취·창업을 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사업인 희망키움통장1(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과 희망키움통장2(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안내를 위해 복지지원팀으로 연계
 - 특히, 취성패 1단계 참여자 중 복지서비스 등의 연계가 가능한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복지, 금융서비스 등 서비스 수요 파악 후 적극적으로 연계

- 서비스연계는 고용복지+센터 전용 전산망(<http://www.workplus.go.kr>)을 이용하여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연계

- ‘의뢰할 기관선택(업무구분) → 의뢰할 서비스 선택(서비스) → 담당자 선택(담당자)’의 프로세스이며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연계 가능

■ 서비스 연계

업무구분	서비스	담당자
고용센터	복지 초기·종합 상담	전 (남양주 복지지원팀)
복지지원팀	맞춤형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주 (남양주고용센터)
일자리센터	긴급지원	
여성새일센터	차상위지원	
자활센터	공과금 감면해택	
서민금융센터	보육료지원	
	초·중고 교육비지원	

복지지원팀 (긴급지원) / 주 (남양주고용센터) 1차 ×

- 3회 이상의 서비스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 복합장애요인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복지+센터 내 사례관리협의체를 통해 해결방안 논의

* 취업문제와 함께 주거문제, 신용회복문제, 아이돌봄문제 해결 등이 필요한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 복지서비스 연계 사례>

(사례1)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위해 방문한 60세 여성 남○○씨

- 남○○씨는 이혼 후 지인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며 비정기적으로 식당 주방 보조일을 하다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성공패키지1에 참여 ⇒ 복지지원팀으로 연계
- 복지지원팀에서는 남○○씨에게 무한 돌봄 생계비 지원을 받도록 도와주었고, 동시에 수급자 신청을 위해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단절에 따른 심의절차 진행

(사례2) 남편의 불규칙한 수입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자녀(2명)를 양육하고 있는 48세 경력단절 여성

- 재취업을 위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1월, 고용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 집단상담 및 직업선택도 검사를 통해 희망직업(직업상담사) 선택(2월) → 직업상담사 및 컴퓨터 활용능력 훈련과정 참여(3~5월) → 구직활동 시작(6월~)
-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복지지원팀으로 연계(8월) → 심층상담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 푸드마켓 부식지원(8~9월에 반찬, 생필품 등 지원) 서비스 받음
- 경제적·정서적 안정을 바탕으로 취업활동에 집중 → ○○시청 아동복지교사로 취업(10월)

3.7.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개 요)** 취업역량평가 및 심층상담, 직업심리검사 결과 등을 감안하여 개인별 특성이 반영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
- **(수립시기)**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은 상담 완료 후 1단계 최종단계에서 수립
- **(주요 내용)** 참여자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내용 공유)하되,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
 - ▲ 인적사항 ▲ 주요 경력 ▲ 취업희망 직종·분야 내지 창업희망 업종 ▲ 직업훈련 계획 ▲ 참여자의 취업지원 경로 등
- 특히, 2단계 연계시 ‘직업훈련’을 희망할 경우 개인의 희망직종 및 현재 직업능력 수준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훈련과정,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등을 탐색할 수 있도록 과제*부여 필요
 - * 훈련과정 탐색표 작성, 내일배움카드 동영상 시청 등
- **(IAP 수립시 고려사항)** 상담 등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과 내용을 공유하여 참여자의 수용 가능성을 제고
 - 참여자의 욕구와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하되 불합리한 주장이나 요구를 단순 수용하는 것은 지양
 - 3단계 집중 취업알선 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계획 상세 일정을 수립
- **(IAP 배부)** IAP를 수립한 경우 참여자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1부 출력·배부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참여자의 취업지원 경로를 변경할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담을 거쳐 계획내용을 변경 조치

Ⅱ 제2단계 : 직업능력·직장적응력 증진

1. 개요

1.1. 의의

- 1단계에서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취업기술을 익힌 참여자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를 습득하고,
 -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창업프로그램, 인턴 등 IAP 이행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과정
- 2단계는 참여자의 실질적 취업역량을 제고하는 핵심과정이나 참여 프로그램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참여자의 실업기간을 장기화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 참여자 취업역량 및 취업희망 직종, 참여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창업 등의 프로그램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업무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2단계 연계 가능 사업은 해당 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참고하여 상담 및 민원안내

1.2. 운영 원칙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기본적인 운영 목적은 참여자가 신속히 취업에 성공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므로, 1단계 상담 결과 직업능력 및 직장적응력 증진을 위한 훈련과정 참여가 필요한 경우 2단계 운영
 - 1단계 종료 후 3단계 구직활동기간 중 효율적인 취업준비를 위해 직업능력 및 직장적응력 증진을 위한 훈련과정 참여가 필요한 경우 IAP 변경 후 2단계 운영
- 따라서, 1단계 운영을 형해화하는 아래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참여자에 대한 서비스 중단, 관련 직업훈련기관 등에 취성패 참여자 2단계 연계 제한 등의 조치 가능

- 내일배움카드 자비부담액 면제(자비 부담을 축소) 또는 훈련참여지원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경우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일 부터 특정 훈련기관의 특정 훈련과정만을 수강할 목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1단계 참여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 직업훈련기관 등이 훈련생을 모집한 후 훈련과정 개강일자가 도래하기 전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수당을 받고 오라는 식으로 안내한 후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 훈련생을 연계시키는 경우
- 직업훈련기관 등이 자체 모집한 훈련생에게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홍보하여 훈련 참여 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경우 1단계 상담결과에 따라 2단계 연계 여부 및 연계할 수 있는 훈련과정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1단계가 종료되면 마치 해당 훈련기관에 참여자를 당연히 보내야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익을 제기 (민원성 항의)하는 경우

○ 월 1회 이상 대면 또는 유선상담을 실시하여 참여자의 적정 훈련수강여부 확인

1.3. 2단계 운영기간

○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운영기간은 최대 8개월이 원칙

다만, 2단계 기간 중 고용노동부에서 인지정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 연계 되는 경우 훈련기간은 2단계 기간 중 최장 6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

이는, 취성패 참여자의 경우 일반실업자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보다 자비부담액이 작거나 면제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I 유형의 경우는 훈련비도 높게 지원하는 만큼 취업에 꼭 필요한 훈련과정을 신속히 탐색하여 단기에 효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고, 이를 통해 3단계 구직활동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어 6개월 범위 내에서 훈련참여 허용

※ 2단계 기간(8개월) 경과 후에도 훈련을 원하는 경우 취업성공패키지를 중단하고 일반 계좌로 전환 후 수강 가능

- 2단계 시작일 : IAP 수립 다음 날

- 2단계 초기 상담실시 : 2단계 연계를 위한 과제이행여부 훈련과정탐색 결과 등을 토대로 대면상담을 실시

다만,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2단계 초기 상담은 대면상담으로 하고, 초기상담 완료 후 당일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서 제출 가능

- ※ 2단계 초기상담일은 IAP 수립 다음날로 부터 3일 이후 부터 지정 가능
- ※ 2단계 직업훈련 연계를 위한 과제부여 및 훈련과정 탐색 방법 등은 1단계 IAP 수립일에 미리 안내하거나 IAP수립 후 유선상담을 통해 안내가 가능하고, 이행여부는 2단계 초기상담일에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 필요
- ※ 단계를 유연하게 운영한 경우(예: 1단계→3단계→2단계)도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2단계 초기상담을 진행해야 함(방문상담 원칙)

- (2단계 운영기간의 특례) 청년층(만 34세 이하 I·II유형 참여자) 및 장년층(만 65세 이상 I·II유형 참여자)의 경우 2단계 최대 8개월 범위 안에 마지막 프로그램(직업훈련 등 2단계 연계 가능 프로그램)의 개시일이 포함되면, 마지막 프로그램의 종료시까지 참여 가능

1.4. 2단계 연계 가능 프로그램의 종류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2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취(창)업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의미하고, 다만, 2단계 시작일 이후 취(창)업 희망 직종에 대한 훈련과정 탐색 결과 등을 토대로 상담사와 상담을 실시한 후 참여여부 최종 결정
- ※ 실업자 등 직업훈련과정, 청년취업아카데미, 고용디딤돌, 인턴,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 훈련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인증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계좌적합훈련과정 이외의 (비인정) 훈련과정, 기타 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훈련(자비부담 일반 학원 수강 포함)

2.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과의 연계

2.1. 기본 원칙

- **(훈련 상담)** 고용센터 패키지 담당자가 훈련상담을 병행하며, 희망직종에 취업하기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직업훈련으로 연계
 - 민간위탁 참여자도 위탁기관으로부터 훈련참여 추천서를 받아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 참여 적정성 판단 후 내일배움카드 발급
 - ※ 민간위탁 참여자가 훈련을 희망할 경우 위탁기관에서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추천서를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안내)** 최초상담 또는 직업훈련 상담시 훈련일수 및 결석일수 등을 고려하여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함을 안내
 -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관련 지침』 내용 참조
- **(훈련 종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2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①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② 한국폴리텍대학 1년 이하 비학위 과정 직업훈련 ③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 ④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포함) ⑤ 양성훈련(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⑥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공단이 직접 실시하는 직업훈련 ⑦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 ⑧ 청년취업아카데미 ⑨ 고용디딤돌일자리 ⑩ 일학습병행제 ⑪ 고용노동부 인증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계좌적합훈련과정 이외의 (비인정) 훈련과정
 - ※ 주 3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대상임에 유의(다만,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 및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등 재직자 카드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자 카드 발급 가능)
- **(훈련 기간)** 2단계 기간(최장 8개월) 중 최장 6개월
 - 훈련기간 산정시 신청인원 부족 등의 사유로 폐강되었거나 개강이 연기된 경우 새로운 과정 참여시까지, 6개월(8개월) 기간 산정시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 총 수강과정이 3개(인터넷 원격훈련 1회 및 훈련 1회 추가 수강 포함시 총 5회) 이하이고, 마지막 훈련과정이 2단계 시작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시작하는 과정에 한해서 해당 훈련과정까지 참여 허용(이 경우에도 실제 훈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 2단계 훈련가능 기간(6개월)과 훈련참여수당 지급기간(최초 훈련참여일로부터 6개월)이 다름에 유의
 - ※ 참여자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최초 훈련참여일로부터 최장 6개월 간 지급
- 단일 훈련과정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에 한해 해당 훈련과정 종료시까지 참여 허용(최초 1개의 훈련과정에 한함)되며 다른 훈련과정은 수강 불가
 - ※ 2단계 기간(8개월) 경과 후에도 훈련을 원하는 경우 취업성공패키지를 중단하고 일반 계좌)로 전환 후 수강 가능



참고 : 2단계 초기상담일 이전 개강한 훈련과정 참여 가능 여부

- 직업훈련은 1단계 상담결과 희망직종에 취업하기 위해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단계 진행이 결정되고, 그 후 훈련 직종 및 과정 탐색을 통해 실제 훈련 참여가 가능하므로 2단계 초기상담일 이후 개강하는 훈련 과정 참여가 원칙임
 - 다만, 부득이한 사정(1개월 이내에 동일·유사 훈련과정이 개설되지 않거나,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 훈련기관의 훈련만 있거나, 자격증 시험 일정상 신속한 훈련과정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고용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다음의 각호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해 2단계 초기상담일 이전 개강하는 훈련과정에 참여를 허용할 수 있음
 - ①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34조」의 훈련생 등록기간 내이고,
 - ② 소정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 출석이 가능한 경우이고, ③ 초기상담 후 최소 2회 이상 1단계 상담이 정상적으로 진행 경우
- 이때,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기간 및 지급단위기간 산정은 참여자가 훈련과정에 등록한 날이 아니라 인정받은 훈련과정이 시작한 날 이고, 훈련개시일 부터 훈련 등록일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포함된 소정훈련일수는 단위기간 내 출석률 산정시 결석으로 산정됨에 유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743호, 2016.3.3. 질의회시 참조)

- **(훈련 간 중복 참여)**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훈련과정에 한하여 동일기간 내 2개 이상 동시수강을 허용(1일 8시간 한도 내)
- **(위탁기관과 훈련기관 간 MOU)** 패키지 위탁기관과 훈련기관이 본부 담당부서 승인 없이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거나 참여자 모집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
 - 이는, 직업능력 및 직장적응력 증진을 위해 2단계 진행이 필요한 참여자의 취업 희망 직종을 고려한 적정 훈련상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또한, MOU 체결이 되지 않았더라도 위탁기관이 특정 훈련기관과 연계하여 참여자 모집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참여자 몰아주기 등) 행위 금지
 - 위탁기관과 훈련기관 간 MOU 체결 및 참여자 몰아주기 등의 사례 발견 시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에 주의조치하고 직업능력개발부서에 통지

2.2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훈련 참여 희망자에 대한 내일배움카드 발급 등의 업무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여 처리하되, 고시·지침 등 개정·변경가능성을 고려하여 **참여자의 계좌발급 신청일 현재 유효한 규정 및 지침 등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

- **(개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5조에 따라 국가경제에 근간이 되는 산업이나 전략산업, 그 밖에 산업인력 수요 증가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대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함
 - ※ [부록 8]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별표1 참조
- **(훈련대상자 선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전문계, 이공계 친화적 제조업 중심의 훈련이고, 3개월 이상 중장기 훈련과정이 많으므로 참여자의 취업희망 직종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정

- **(훈련참여 기간)** 단일 훈련과정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 기간까지 참여 허용(원칙 1개 과정)
 - 훈련과정이 짧아 2개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참여 허용기간 내에서 인정
 - 다만, 도과 기간이 1~2개월 내이면 담당자가 취업가능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허용 여부 결정
- **(훈련 중 타 훈련 참여)**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중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수강 훈련 시간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 동시 수강 가능
 - 이 경우 패키지 유형별 계좌한도(200~300만원) 및 훈련참여 허용기간 내에서 가능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패키지 담당자(민간위탁 참여자는 센터 위탁기관 담당자 또는 직업훈련 담당자)는 HRD-Net을 통해 훈련과정, 개설일자, 모집현황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훈련대상자에 대하여 취·창업에 필요한 적합훈련과정을 선택·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직업능력개발계좌발급 포함)
- **(유의 사항)** 계좌사용 중지 및 수강평 미입력 시 훈련장려금 부지급 등 관련사항을 반드시 계좌발급자에게 안내하고 필요시 직업훈련 담당자와 협의·조치
- **(훈련참여자 관리)** HRD-Net을 통해 참여자의 훈련실시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월 1회 이상 유선으로 애로사항 등을 확인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내일배움카드제)

- **(개 념)** 실업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여 취·창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로서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
- **(훈련대상자 선정)** 훈련 참여이력, 자격증 여부, 취업희망직종 등을 고려하여 훈련대상자 선정
 - 계좌카드 발급절차, 소요기간 및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

- 계좌카드 발급 의뢰 전에 훈련대상자의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 등 연락처, 주소를 구직자에게 재확인*

* 연락처, 주소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계좌카드 발급 및 수령이 지연되어 훈련이 늦어질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반드시 고지

- 훈련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 및 훈련계획 수립 전까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지식포털 HRD-Net(hrd.go.kr)에 개인회원으로 가입, 본인 아이디로 접속(로그인)하여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동영상을 반드시 수강토록 안내

○ (카드 한도) 패키지 유형에 따라 훈련비 지원 한도 차등

-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 300만원, 취업성공패키지 II 참여자는 200만원

○ (자비부담) 패키지 I 유형의 경우 직종별 취업률 35% 이상인 과정은 자비부담 면제, 직종별 취업률 35% 미만인 과정은 10% 자비부담, 패키지 II는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5~50% 자비 부담

* 취업률에 따른 직종군별 지원율 참조

취업률 유형		70% 이상	55%이상 70%미만	45%이상 55%미만	35%이상 45%미만	35% 미만
일반실업자		95%	90%	70%	50%	20%
취성패	II 유형			80%	70%	50%
	I 유형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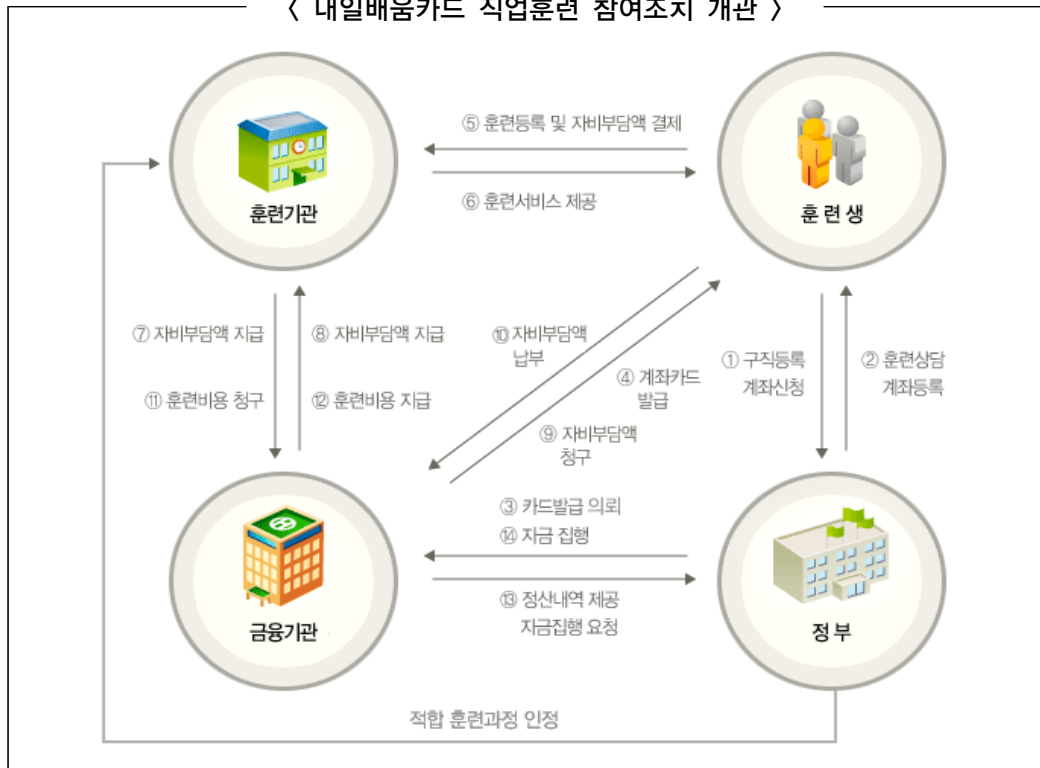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훈련참여 기간)

- 패키지 I·II : 최장 6개월
- 단일 훈련과정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훈련기간까지 허용(최초 훈련 1개 과정에 한함)
- 최장 허용 훈련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일반 계좌(한도 200만원, 자부담 적용)로 전환한 후 가능

- 다만, 도과 기간이 1~2개월 내이면 담당자가 취업가능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허용 여부 결정
- **(훈련과정 수 제한)** 수강 가능한 훈련과정 수는 3개로 제한하되 단, 인터넷 원격 훈련에 한하여 1회 추가 참여 가능
 - * 일반훈련 2회 + 인터넷 원격훈련 2회, 일반훈련 3회 + 인터넷 원격훈련 1회, 인터넷 원격 훈련만 4회 참여 가능
- 성실하게 훈련을 수강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규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에 따른 재취업활동을 2회 이상 거친 경우 훈련 1회 추가 수강 가능(인터넷 원격훈련은 제외)
- **(직업훈련과정 변경)** 훈련과정 변경은 2회에 한하여 가능
- **(훈련 중 타 훈련 참여)**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 수강 중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과정은 훈련시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 동시 수강 가능
 - 이 경우 패키지 유형별 계좌한도(200~300만원) 및 훈련참여 허용기간 내에서 가능
- **(훈련참여자 관리)** HRD-Net을 통해 참여자의 훈련실시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월 1회 이상 유선으로 애로사항 등을 확인
 - 훈련과정 만족도와 훈련내용 이해 등 과정 이수에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확인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에 직접 방문을 요청하여 과정변경 등에 대한 상담 실시
- **(카드발급 관련 조치사항)** 카드사에 전산상으로 「계좌카드 발급의뢰」 조치
 - 계좌카드 발급의뢰일 기준 10일 전후로 대상자에 대한 TM 실시 여부 등 카드 발급 상황을 카드사에 확인

〈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참여조치 개관 〉



- (유의 사항) 훈련 참여자에 대해서는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필요시 직업훈련 담당자와 협의·조치

☞ 반드시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부록 8) 참조

2.3. 폴리텍대학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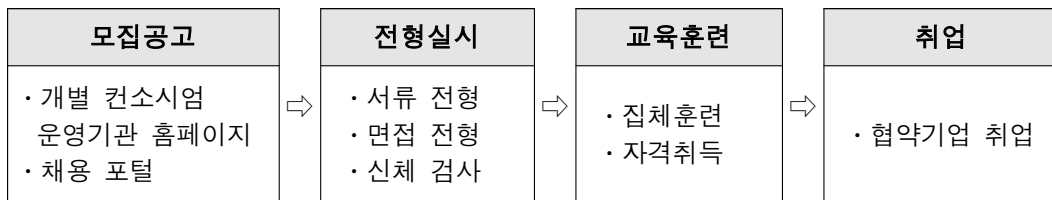
- (개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40조에 따라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 고학력 미취업자, 실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기능사과정, 베이비부머훈련, 경력단절 여성훈련 등을 말함
- (훈련대상자 선정 및 모집) 한국폴리텍대학 1년 이하 비학위과정 양성훈련은 국가 기간·전략산업직종 중심 2개월 이상 중장기 훈련과정이 많으므로 취업희망 직종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정

- 한국폴리텍대학 훈련과정은 대부분 정기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고용 센터-폴리텍대학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패키지 1단계 참여에 필요한 1개월을 감안하여 참여자 모집
- ▶ 기능사과정 입학자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만 15세 이상

2.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

- **(개요)** 고질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인력수요를 파악,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해 현장 기술인력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 **(훈련실시주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 **(훈련대상)** 만 15세 이상 미취업자로서 컨소시엄 협약기업 채용예정인 자
- **(훈련방법·훈련과정정보)** 1개월(120시간) 이상의 집체훈련을 실시하며, 개별 훈련 과정정보는 해당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기관 또는 채용포털사이트에서 검색

〈 채용예정자 훈련 참여 방법 〉



2.5. 고용노동부 인증 훈련기관의 계좌적합훈련과정 외의 훈련과정(미인정훈련과정)

- **(개요)** 고용노동부 인증 훈련기관이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지는 않았으나, 지역 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 구직자와 구인 기업의 훈련수요를 반영하여 타부처 또는 자치단체 등 특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훈련과정이거나, 훈련기관이 자체적으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훈련 과정을 의미
-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인증 훈련기관

○ (훈련과정 정보 수집 및 공유)

- 고용노동부 훈련기관으로 인증 받은 기관이 타부처, 자치단체, 대학 등 타 기관의 요청으로 훈련과정을 개설하였거나, 훈련기관 자체적으로 참여자의 취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취업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개설한 경우 미승인 훈련과정 정보를 HRD-net에 등록

* 훈련정보 :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개강일시, 주요 훈련내용, 훈련비 지원여부 등

2.6. 청년취업아카데미

- (개요) 기업·사업주단체, 대학 또는 민간 우수훈련기관이 직접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업능력 및 인력 등을 반영하고 청년 미취업자에게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와 일반고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호) 등과 협력하여 연수과정 또는 창조적 역량 인재과정(이하 “창직과정”이라고 함)을 실시한 후 취업 또는 창직·창업활동과 연계되는 사업
- (운영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청년취업아카데미 위탁기관
- (훈련대상)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한자로서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
- (훈련시간 등) 장기과정의 경우 600시간 내외, 일반과정은 300시간 내외

3. 해외취업(K-Move 스쿨, 해외인턴, 기타 해외취업 등)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K-Move 스쿨, 해외인턴 및 기타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연계
 - * 해외취업 참여자가 K-Move 스쿨의 훈련을 받을 경우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 ☞ 구체적인 사항은 「2018년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의 해외취업 사업지침」 참조
- 청년희망재단, KOTRA, KOICA, 민간 해외취업알선 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 취업 희망 청년에 대한 해외취업 연계

- * 기관별 프로그램 : ▲(청년희망재단) 청년 글로벌 보부상, 청년 글로벌 취·창업 지원, 실리콘밸리 진출 프로젝트 등 ▲(KOICA) ODA 해외인턴 등

4. 창업 지원 연계

4.1. 개 요

- 참여대상자 중 창업을 희망하는 자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 대한 창업지원 강화

<예시>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 서비스

- ① 서울혁신센터 : 민간 창업지원기관 네트워크 활용
 - 9개 특화센터(문화, 예술, 소프트웨어 등)를 지정 협력 프로그램 운영
 - M&A 등 전문분야 전담부서 설치 및 컨설팅 강화
- ② 경기혁신센터 : 스타트업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집중 지원
 - Pre-acceleration 프로그램 지원확대, 글로벌 현지화를 위한 상호 스타트업 교류 프로그램(미국, 유럽 등의 관련 기관) 운영 등
 - IoT, 핀테크 등 우수 아이템 발굴, 전담기업(KT)과의 사업화 메칭 확대
- ③ 대구혁신센터 : 미래기술분야 창업 거점 구축
 - 미래기술(VR 등) 분야의 창업 거점화 → 해당 분야 전문인력 양성
 - 센터 졸업 기업에 대한 데스벨리 극복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서 운영(지자체, 타부처 지원 창업과정 포함)하고 있는 창업 프로그램을 적극 연계 제공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6개 지역본부, 58개 지역센터) ☎ 1588-5302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경우 사업별 창업교육 프로그램 일정 등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포털 홈페이지(<http://www.sbiz.or.kr>)를 방문하여 확인 후 안내

〈 '18년 소상공인 창업교육 프로그램 내용 〉

사업명	지원대상	시간	인원	교육내용
소상공인사관학교	유망아이템 분야 예비창업자	이론(150시간), 점포체험(16주), 개인별 멘토링	450명	유망 아이템 분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전문이론교육, 점포경영 체험, 창업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
신사업 사업화교육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과정당 60시간 이론·실습 교육	1,500명	최신 트렌드에 맞는 신사업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필요한 이론 및 실습 교육

* 소상공인사관학교, 신사업 사업화 교육 모두 교육생 자부담 없음

4.2. 창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조치

- 창업지원 대상자에게 유관기관의 창업지원 관련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
 - ※ 창업교육 일정 등에 따라 운용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음을 설명하여 이와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대상자 추천서(서식 29) 2부를 출력하여 1부를 배부하고, 나머지 1부는 창업교육 관련 유관기관에 송부
- 유관기관에 대상자 추천 후, 해당자의 창업지원 대상 확정여부를 확인
- 창업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교육과정 참여가 불성실한 경우에는 향후 취업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통지
 - 최소 월 1회 이상 참여자와 유선연락 등을 유지하면서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 창업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각 부처 내지 자치단체 등의 창업자금 지원제도(참고자료) 안내

4.3. 창업지원 관련 유관기관에 대한 조치

-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가대상자 추천서를 유관기관에 팩스로 송부한 후, 추천서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추천자의 창업교육 불참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유관기관으로부터의 즉각적인 통보 협조를 요청

5. 기타 훈련

- 참여자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취업 준비 교육 및 직업 훈련 등에 참여하는 경우

6. 2단계 다양화를 위한 특례 (만 34세 이하의 I, II유형 모두 적용)

- 2단계 기간 중 훈련, 청년취업아카데미 등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서 추가 프로그램 참여 시 2단계 최대 기간 8개월이 초과 되는 경우,
 - 2단계 최대 8개월 범위 안에 마지막 프로그램의 개시일이 포함되면, 마지막 프로그램의 종료시까지 참여 가능할 수 있도록 특례 적용(2단계 기간 특례 운영)
 - 2단계 기간 특례운영이 가능한 마지막 프로그램은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해외 취업(K-Move 스쿨, 해외인턴), 고용디딤돌, 청년취업아카데미, 중기청 및 미래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프로그램 및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제, 국기훈련 등) 등 2단계 참여가능 프로그램이 모두 해당
- * 예시: ①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5개월 훈련을 받은 참여자가 고용디딤돌 훈련 참여를 희망할 경우 마지막 프로그램 ‘고용디딤돌’은 2단계 최대 기간(8개월)을 초과해서 참여 가능
- ② 다만, 2단계 최대 기간 8개월이 경과된 이후 추가로 국기훈련 등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중단됨에 유의

7. 2단계 종료 및 행정 처리

7.1.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관련 전산 조치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에 따른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시,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의뢰 등 관련 전산조치 실시
- * 전산시스템 운영 매뉴얼 참조

7.2.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자 등에 대한 관리

- 사업 참여 문의 및 1단계 과정 운용단계에서 직업훈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조건과 지급단위기간 산정원칙을 정확히 안내·설명
-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받은 자(직업훈련 참여자 포함)에 대해서는 훈련 참여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
 - 최초 훈련과정 참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경과 시, HRD-Net을 통해 참여자의 직업훈련 참여현황을 파악하여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조건 충족 시 빠른 시일내 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

7.3. 2단계 종료자에 대한 3단계 연계

- 2단계 기간이 종료예정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3단계 집중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됨을 안내하고, 취업알선을 위한 3단계 최초 방문상담일을 협의
 - * 3단계 최초 방문상담일은 2단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

Ⅲ 제3단계 : 집중 취업알선

1. 집중 취업알선의 개념

- 집중 취업알선이란 취업성공패키지의 1~2단계를 마친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3개월간 취업알선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
- 이런 점에서 1단계 종료 이후, 의욕·능력증진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이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전후한 기간 중에 실시되는 일반적인 취업알선과는 차이가 있음

2. 집중 취업알선의 의의

- (취업지원의 마지막 과정)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의 마지막 과정으로 전체 프로그램 운용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기금자로서의 의미
-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평가기준) 집중 취업알선의 결과는 취업성공패키지의 1차적인 평가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동 과정의 중요성 존재
- (IAP의 타당성 평가과정) 집중 취업알선은 개인별 취업경로인 IAP를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으로 개인별 IAP의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과정으로서의 의미도 존재

3. 집중 취업알선의 기본원칙

- (개인별 특성을 감안한 취업알선) 직업심리검사 실시 결과, 2단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이력 등을 감안하여 적정 구인처를 발굴·알선
- (동행면접 실시) 일반적인 취업알선과의 개념적 차이를 감안하여 취업알선 시 동행면접에 대한 희망의사를 파악하여 대상자가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동행면접 실시
- (서비스 제공 횟수) 구직신청내용에 적합한 취업알선 또는 구인정보제공은 월 2회 이상 필수로 하고, 동행면접,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취업지원서비스는 3단계 기간 중 월 1회 이상 필수

- (3단계 시작일) 1단계 종료일 (IAP수립) 또는 2단계 종료일(훈련종료일 또는 IAP수립일 이후 최대 8개월)로부터 7일 이내에 3단계 진행을 위한 최초 방문상담일 7일 이내 방문상담일정을 잡았으나 참여자의 사정으로 늦어지는 경우 7일이 되는 날을 3단계 시작일자로 간주

* 다만, 3단계 최초 방문상담일은 3단계 수당지급단위기간의 기산일이 됨에 유의

- (취업알선 실시기간) 집중 취업알선은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취업성공패키지의 전체적인 지원기간을 감안하여 대상자별로 탄력적 운용

i) IAP 수립 시, 1단계 후 바로 3단계 과정 참여자로 설정된 자

⇒ 취업알선을 위한 3단계 최초 방문상담일*을 기준으로 최장 6개월간 실시하고 지원을 종료

* 3단계 최초 상담은 1단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실시하되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함

* 3단계 시작일자가 없는 경우 1단계 종료일(IAP수립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 되는 시점으로 간주

ii) 2단계까지의 수료기간이 9개월 미만인 경우

⇒ 1단계 시작일(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기간까지 실시하되, 취업알선 기간이 6개월 초과 시에는 6개월간 실시하고 지원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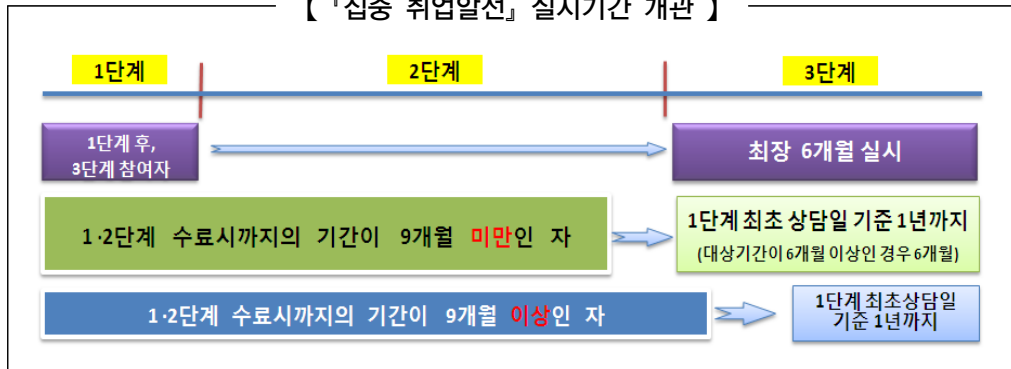
iii) 2단계까지의 수료기간이 9개월 이상인 경우

⇒ (원칙) 1단계 시작일(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기간까지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지원 종료

⇒ (예외) 참여자가 9개월 이상 훈련(간호조무사 훈련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3개월간 실시한 후 지원 종료

* 9개월 이상의 훈련에 참여한 경우 서비스 제공기간이 12개월이 초과하더라도 지속적인 취업지원 가능

【『집중 취업알선』 실시기간 개관】



- (취업알선 실시기간 특례) 기초수급자 밀착사례관리 대상자 및 청년층(I,Ⅱ유형 모두 해당, 만 34세 이하)에 한하여 취업알선 단계까지 성실하게 참여하였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자에 대해 필요시 취업알선 기간을 추가 최장 3개월 연장 가능
- 취업알선 실시기간 특례자의 경우도 3단계 취업알선 기간은 최대 6개월을 이내로 운영하되, 최종 3단계 기간은 최대 2개월 이상 확보 필요
 - * 3단계에서 2단계로 단계가 유연하게 운영된 경우도 3단계 기간의 총 합산기간은 최대 6개월 한도
- 또한,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재학생의 경우, 3단계 최대 6개월 서비스를 종료했으나 미취업중이고 여전히 재학생 신분인 경우, 필요시 3단계 기간을 추가로 더 연장하여 졸업일자가 포함되는 월의 말일까지 운영 가능
 - * 예: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재학생이 '18.9.1일에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18.9.25일에 IAP를 수립하고 3단계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 경우 동 대상자는 필요시 3단계를 6개월간 진행할 수 있는 특례대상자로 '19.3.25까지 3단계를 운영할 수 있는바, 동 참여자가 '19.2월중 졸업한다하여 졸업일자로 무조건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의미는 아님에 유의
 - * 취업알선기간 중 연락두절 등 불성실 참여자에 대해서는 중단 조치
 - * 무조건 모든 참여자를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지원특례가 필요한 대상자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임에 유의

4. 집중 취업알선 실시시기

- (1단계 완료자) 1단계 종료자 중 취업역량 등이 우수한 참여자로 2단계 없이 3단계로 경로설정이 이루어진 자에 대해서는 1단계 종료 후 집중 취업알선을 위한 초기상담 실시
- (1·2단계 완료자) IAP에 따라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과정 종료 이후에 집중 취업알선을 위한 초기상담 실시
- (2단계 재 실시자) 3단계 최초 상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기 전 2단계 참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재상담을 통해 IAP변경 후 2단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2단계 과정 종료 후 다시 집중 취업알선 실시(3단계 운영기간은 6개월 한도)

【 3단계 → 2단계로의 과정 운용 】

- (원칙) 3단계 중 2단계 참여자에 대한 3단계 운용은 전체 취업지원 기간의 원칙적 기간인 1년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다만, 최종 3단계 기간은 최대 2개월 이상 반드시 확보 필요**
 - ⇒ ① 1단계 → 3단계 → 2단계 → 3단계
 - ② 1단계 → 2단계 → 3단계 → 2단계 → 3단계
 - ⇒ 전산 시스템 : IAP 변경 조치 및 상담내역 입력 조치
- (예외) 대상자의 취업의지나 프로그램 참여의 성실성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1년이 초과되더라도 단계별 과정의 탄력적 운용 허용
 - 이 경우에도 전체 취업지원 기간은 15개월 내로 한정되나, 9개월 이상의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전체 취업지원 기간은 15개월 이상도 가능

5. 집중 취업알선 실시방법

□ 집중 취업알선을 위한 초기상담 실시

- 1단계 또는 2단계를 종료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집중 취업알선을 위한 초기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 1단계를 마친 대상자에 대해서는 IAP 수립 당일, 관련 직업정보와 집중 취업알선 실시내용 등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후 별도 상담일을 지정하여 실시

- 2단계 과정 참여자는 종료일 전에 유선연락 등을 통해 집중 취업알선 실시를 위한 초기상담일을 지정·통지한 후 초기상담 실시

※ 초기상담은 해당과정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

- 초기상담을 통해 '집중 취업알선' 기간 동안의 개략적인 진행절차와 실시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인별 직업선호도, 직업적성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력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취업알선 전략을 수립·공유

□ 직업정보 제공 및 동행면접 등 실시

- 집중 취업알선 대상자에 대하여 개인별 희망 직업 등을 감안하여 적정 구인처를 적극 탐색
 - 워크넷 상의 구인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적정한 구인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
 - 구인정보 제공 시에는 사전에 직접 구인처 담당자와 연락하여 '구인여부'를 최종 확인·조치
- 구인정보 제공과 동시에 대상자의 면접참여 의사를 파악하고, 동행면접 희망여부를 확인하여 동행면접 적극 실시
 - 가급적 면접에 임할 것을 적극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면접기법 등을 다시 체득할 수 있도록 조치
 - 동행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인처 담당자와 연락하여 면접일시를 정하고, 면접일 전에 면접당일 준비사항 안내 및 자신감 고취 등을 위한 모의면담을 실시

□ 참여자의 구직활동 실시상황 확인

- 집중 취업알선을 실시하는 동안 4주 단위로 참여자의 구직활동 사실 확인 및 애로 사항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취업알선 방향 등을 보완 내지 재설정하고, 참여자와 이를 공유(4주 단위로 확인)
 - ※ 확인의 방법은 유선 또는 방문상담을 병행하되, 집중 취업알선 기간 중 월 1회 이상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을 하도록 유도
- 참여자의 구직활동 노력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취업성공패키지 시스템에 추진 실적과 동일하게 입력

6. 집중 취업알선 실시 시 고려사항

□ 집중 취업알선 과정에 대한 인식 공유

- 집중 취업알선은 취업성공패키지의 결실을 얻기 위한 마지막 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 대해 인식이 공유될 필요

□ 지속적인 연락체계 유지

- 집중 취업알선 과정 중 적정 구인처 알선을 통한 취업이라는 결과만큼 중요한 것은 참여자의 취업을 향한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심표명과 노력임
 - 형식적인 구인정보 제공보다는 본인의 취업성공을 위하여 누군가가 늘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락과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할 필요

□ 취업에 대한 자신감 유지 지원

- 집중 취업알선 진행 과정에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참여자 스스로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할 가능성 증대
 - 따라서, 취업에 대한 희망을 북돋아주는 등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

* 필요한 경우 별도 면담일시를 지정·실시

7. 집중 취업알선 과정의 시스템 입력

- 집중 취업알선 과정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상담, 구인정보 제공 및 동행면접 실시 등 제반 지원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수시로 입력
- 취업으로 종료되는 경우 패키지 전산망 외 워크넷 채용마감도 함께 종료 처리

📁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를 구직신청 마감처리 시 워크넷의 팝업문구

-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입니다. 패키지 대상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시스템에서 먼저 마감 후 취업알선 시스템에서 마감처리 해야 합니다. 마감처리하시겠습니까?

8. 고교 재학생의 취업마감 처리

- 고등학교 재학생인 참여자가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행 중 취업되었으나, 졸업에 필요한 수업일수가 부족하여 교육부에서 정한 현장실습표준협약 체결 후 회사 출근일을 학교 출석일로 대체하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현장실습 기간은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기간으로 간주
 - 다만, 졸업(예정)자로 볼 수 있는 졸업연도 1.1일 이후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취업으로 마감 처리(워크넷 상 취업성공패키지 마감처리는 1.1일 이후 취업자로 처리 가능, 취업일자는 1.1일로 표기)하고, 1.1일부터 기산하여 취업성공수당 및 취업인센티브 지급 가능

9.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등 사전안내 및 지급대상자에 대한 사전관리 철저

-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서식 33)를 취(창)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사업참여기간 중 수시로 안내
 - 특히, 집중 취업알선기간 중에는 참여자에 대한 진행상황 모니터링 시 관련 사실을 재차 안내
- 아울러, 취업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참여자로 하여금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를 가급적 기한내 제출하도록 재차 안내
 - 만일, 1회 및 2회차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시한 5일전까지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참여자에게 유선연락을 취하여 신청서 제출시한을 재 안내
 - * 신청서 제출 관련 사실을 안내받은 바 없다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사전안내에 각별히 유의

10. 고용촉진지원금 제도 안내(관련 고시 참조)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여 아래의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참여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 대상 :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대상자로서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IAP 수립)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 대상자로서 종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3호, 2015.1.15. 일부개정)에 따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람을 사업주가 2017년 6월 30일 이전 고용한 경우 종전 고시에 의해 고용 촉진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적용 가능(경과조치)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범위에서 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 대상자는 제외되었음. 단, II유형 청년의 경우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지원되고 있음에 유의

- 지원내용 : 720만원(연간 지원 총액)
-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취업알선에 도움이 되므로 안내
 - ※ I 유형(저소득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는 현행 유지하되, II유형에 대해서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로 지원 변경
- 참여자의 구직등록이 유효하도록 계속 유지할 필요

11.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안내(관련 지침 참조)

-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
- 지원대상
 - (청년) 만 15세~34세 청년으로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지원방식(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600만원 목돈 마련)
 - (청년 본인)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적립(매월 12.5만원)
 - (정부→청년) 취업지원금 2년 900만원($1 \cdot 6 \cdot 12 \cdot 18 \cdot 24$ 개월 등 2년간 5회 분할지급)
 - (기업→청년) 채용유지지원금(2년 700만원) 중 청년 장기근속 기여금 2년간 400만원 적립(순 지원금 300만원, $1 \cdot 6 \cdot 12 \cdot 18 \cdot 24$ 개월 등 2년간 5회 분할지급)

IV 제4단계 : 사후관리

1.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1.1. 사후관리의 개념

- 사후관리란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를 마친 참여자를 대상으로 종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

* 취(창)업으로 종료된 경우 취(창)업일의 전날, 미취업자의 경우 단계별 서비스종료일

1.2. 사후관리의 의의

- (취업자의 취업지속 관리)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취업자의 직장적응 및 장기 근속 유도 기제
- (미취업자 취업의지 고취) 고용센터의 구인정보 등을 꾸준히 제공하여 기간 종료 이후에도 취업알선 서비스를 통해 취업의지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

2. 사후관리의 제공

- (정기적 관리) 종료일로부터 매월 1회 이상 참여자에게 유선 등의 방법으로 상담 서비스 제공
 - 취업자에게는 직장적응 시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여 근속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도
 - 미취업자에게는 구인정보 제공하여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독려
 - (취업지원 재개) 취업자로 종료된 참여자가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1단계 IAP 수립전 취업 종료자 포함)하는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재참여 가능
 - 사업 재참여 희망자는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취업지원 재개신청서 제출
- * 취업성공패키지 재개 신청서(서식 35) 참조
- * 다만, 재개처리는 전체 취업지원기간(12개월, 최대 15개월) 내에서만 가능

- 재개 후 요건에 따라 취업성공수당 일자리로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 (온·오프라인 종합적 정보제공) 미취업자의 경우 온라인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안내하여 고용센터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통해 본인 스스로 취업의지를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

3. 취업성공수당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근무상황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적응 지원
 - 취업일을 기준으로 처음 1개월 동안은 1~2주 간격으로 유선연락 등을 통해 직장 생활 적응상황 등을 확인하고, 3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빠른 시일내 취업성공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
 - ※ 필요한 경우 별도 면담일시를 정하여 개별 면담 시행
 - 취업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후 12개월 동안은 최소 월 1회 간격으로 유선연락을 유지하면서 참여자가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유지하여 나머지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 만일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취업성공패키지에 다시 참여할 수 있음을 안내
- 특히, 창업에 대해서는 영업활동 존속여부 등을 월 1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
 - 아울러, 각종 경영기법 교육(소상공인지원센터 협조) 등 성공적 창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일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

V 기타 : 일반계고 재학생에 대한 단계별 서비스

1. 추진배경

- 「일반계고 비진학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방안(17.3.8.)」 시행에 따라서, 일반계고 학생들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참여 경로 다양화 등 유연한 운영 필요

2. 주요 변경내용

	'17.6.1. 전	'17.6.1 이후
참여경로 다변화	• 단계별 순차적 진행 (先 IAP 수립, 後 직업훈련)	• 단계별 순차적 진행 (先 IAP 수립, 後 직업훈련) • (신설) 1·2단계 통합운영 (직업훈련 참여 후, IAP 수립도 가능)
취성패 참여시 2단계 훈련수당 지급대상 범위확대 (현행 II 유형 기준)	• 1단계: 최대 20만원 • 2단계 - 내일배움카드(일반계고 특화과정 포함): 11.6만원(훈련예산) + 20만원 (취성패 예산) - 국기훈련: 31.6만원(훈련예산) - 산업정보교: 없음	• 1단계: 최대 20만원 • 2단계 - 내일배움카드(일반계고 특화과정 포함): 11.6만원(훈련예산) + 20만원 (취성패 예산) - 국기훈련: 31.6만원(훈련예산) - (신설) 산업정보교: 20만원 (취성패 예산)
취성패 미참여시	• 내일배움카드(일반계고 특화과정 포함): 11.6만원(훈련예산) • 산업정보교 진학: 훈련수당 없음	

3. 참여경로별 세부 운영방안

- (기본방향) 일반계고 재학생이 산업정보교 입학 또는 내일배움카드 일반고 특화과정 참여를 희망하거나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2가지 경로(two-track)로 참여 가능

3.1. (1 경로: 일반계고 2학년생의 경우) 1 → 2 → 3단계 경로

- (오리엔테이션 단계: 2학기 예정) 일반계고 학생들의 산정교 탐방프로그램 일정*에 맞춰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내용 소개 및 수요조사 실시

* 탐방프로그램은 1일 3시간으로 구성 → 이 중 일부(1시간 이상)를 오리엔테이션 단계에 할애

- (1단계) 진로상담·직업심리검사, IAP수립(2학년 2학기 겨울방학(1월~2월))* → (2단계) 위탁 직업훈련 및 IAP 보완(3학년 3월~훈련종료시) → (3단계) 집중취업알선(2단계 종료후 3개월, 사후 관리는 3단계 종료 후 3개월까지)

* 산정교 입학 및 일반계고 특화과정 위탁이 결정된 후 2학년 겨울방학 동안 1단계를 수료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

- 1단계 운영기간: 대학교 비진학을 고민하는 일반계고 재학생의 진로지도 중요성을 감안, 개별 대면상담 최소 3회 이상 (집단상담, 단기집단, 취업 특강은 회수에서 제외) 실시하되 최소 3주 운영

* 1단계 상담기간 단축운영 규정 적용제외

** 참여자가 1단계 참여 후, 비진학이 아닌 대학교 진학을 결정한 경우, 고용센터는 참여자의 의사에 반하여無理하게 상담을 진행하지 않도록 지도

↳ 다만, 위탁기관 등에서 1단계 초기상담일 이전에 참여자와 충분히 상담한 후 1단계 진행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

- IAP 수립시점: 2단계 위탁훈련 실시 이전까지 완료

3.2. (2 경로: 일반계고에서 비진학이 既 결정된 3학년 대상) 1·2단계 통합운영 경로*

* 일반계고 3학년이 산업정보교 등에서 직업훈련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 (1·2단계) 직업훈련과 진로상담·검사 등을 통합실시*(3학년 3월~훈련종료시) → (3단계) 집중취업알선(2단계 종료후 3개월, 사후 관리는 3단계 종료 후 3개월까지)

- 1단계 운영기간: 대학교 비진학을 고민하는 일반계고 재학생의 진로지도 중요성을 감안, 개별 대면상담 최소 4회 이상 (집단상담, 단기집단, 취업 특강은 회수에서 제외) 실시하되 최소 4개월 운영

- 1·2단계를 통합 운영하되, IAP는 산업정보교 위탁 또는 일반계고 **특화직업훈련 과정이 종료되기 전까지** 수립

* 1단계 상담기간 단축운영 규정 적용제외

** 산업정보교 등에 진학한 이후에도 민간위탁기관에서는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여 내실있는 IAP 수립을 지원

4. 참여자 수당 지급

○ 1단계 수당

- 금액: **최대 20만원** (I 유형 및 II유형 모두 해당)
- 지급시점: 1경로(2단계 훈련개시 전 IAP수립자) 참여자는 1단계 종료시점에, 2경로(1·2단계 통합운영) 참여자는 **2단계 종료시점**에서 지급
- 위탁기관이 일반계고 또는 산업정보교에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은 허용하되, 이 경우 **참여수당은 부지급**
 - * 1단계 상담 전체를 위탁기관에서 하는 경우 참여수당 15만원 지급하되, 집단상담 등에 참여할 경우 업무매뉴얼에 따라서 추가수당 지급
(학교 및 위탁기관 상담 혼재시, 위탁기관 방문 상담에 한해 1일 2만원 지급)

○ 2단계 수당

- 일반계고 특화 직업훈련과정, 산업정보교 위탁교육 참여자에 대하여 **20만원/월*** (최대 6개월)
 -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개월(단위기간) 기준 소정 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시 월 최대 200,000원을 한도로 지원
- 2단계 훈련참여수당은 훈련이 실제 진행되는 기간에만 지급
 - * 산업정보교의 방학기간은 훈련참여지원수당을 부지급하고, 해당 기간은 훈련참여지원수당 최대 지급대상기간 6개월 산정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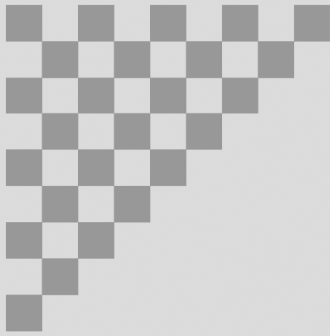
5. 기타

5.1. 참여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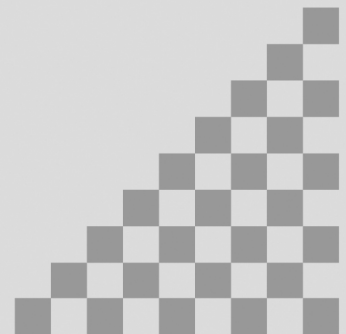
- 1경로 참여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시·도 교육청, 산정교 협조, 산정교 탐방 프로그램 등에서 실시 가능)
 - 참여를 원하는 일반계고 학생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으로 연계(시·도 교육청 및 산정교 협조)
- 산업정보학교 탐방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련 고용센터는 위의 사항을 홍보하고, 비진학 재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각 산정교 협조)

5.2. 단계별 운영 관련

- 2단계 훈련참여수당 마지막 지급 회차, 3단계(취업알선) 초기상담일에서 대면 상담을 통해 기존에 수립된 IAP를 점검·보완
- 1 및 2경로 참여자 모두, 2단계 훈련종료 후 3개월간 **집중 취업알선**을 제공하고, 미취업자는 3단계 종료 후 3개월간 **사후관리** 실시
 - * 고용센터에서는 취성패 위탁기관 등과 연계하여 홍보계획 수립
- 동 지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역별 고용센터-위탁기관-산정교 간 협의체** 구성하여 결정



단계별 수당 지급



I

사전단계 참여수당

1부

1. 지급목적

- 자치단체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참여를 의뢰한 조건부수급자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 관련기관에 출석한 날에 대해서는 교통비, 식비 등 실비 보상차원에서 사전단계 참여수당 지급

2. 지급대상

- 조건부수급자가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의뢰한 고용센터 또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기관에 출석한 날에 대해서는 교통비, 식비 등 실비 보상차원에서 1일 20,000원의 참여수당 지급
 - * 1일 2회의 상담 또는 서비스에 참여하더라도 2만원만 인정
-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출석한 날도 수당지급일수에 포함
- 사전단계 참여 중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하여 사전단계를 모두 수료하지 않은 취업자도 취업일 이전 수당지급 대상일자가 있는 경우 참여수당 지급

3. 지급방법

- 참여수당은 사전단계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에게 사전단계 서비스 종료 후 수당지급 신청서를 받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 중도탈락자는 사전단계 참여수당 부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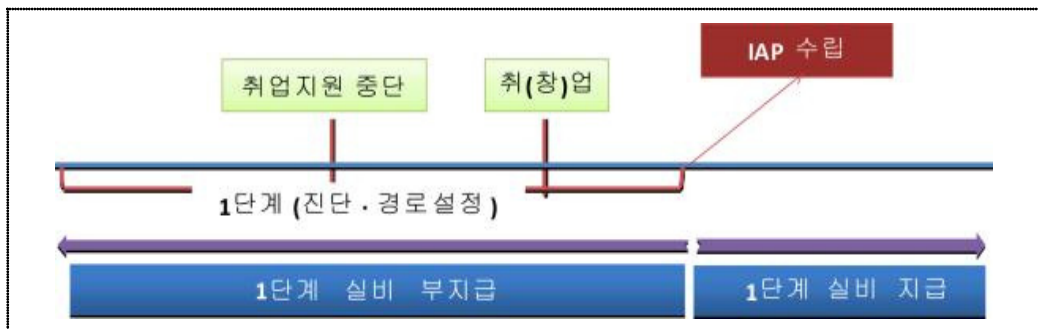
Ⅱ 1단계 참여수당

1. 지급목적

- 참여수당은 패키지 1단계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IAP를 수립하고 1단계를 수료한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함
- 참여자의 경제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생계유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비 보상적 지원 기제이며, 성실한 1단계 참여를 유인하는 의미도 존재

2. 지급대상 및 요건

- (지급대상) 패키지 참여자 중 1단계 과정을 수료한 자
- (지급요건) 1단계 과정 수료자는 동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IAP(개인별 취업 활동계획)를 수립한 자를 말함
 - 따라서, 1단계 과정 참여자라도 IAP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 등의 사유로 취업지원이 종료 내지 중단된 경우에는 부지급



3. 지급 금액

- (원 칙) IAP 수립시까지 센터 방문 횟수나 1단계 운용기간 등을 감안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 최대 25만원,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 및 일반계고 재학생 참여자 (I · II 모두)는 최대 20만원 지급

- 다만, 고등학교 재학생이 소속 학교 내에서 상담·진단(1단계 운용)을 받는 경우, 참여수당 부지급
 - * 1단계 상담 전체를 위탁기관에서 하는 경우 참여수당 15만원 지급(단, 학교 및 위탁기관 상담이 혼재하는 경우, 위탁기관 방문 상담에 한해 1일 2만원 지급)
- **(기본 지급액)** 15만원, 다만, 참여자에게 직접적인 수당(금전, 금액 불문)이 지급되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경우는 중복되는 수당지급 대상기간에 대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은 부지급
 - * 주 30시간 이상 일용근로자가 더 나은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여 계속적으로 취성패에 참여하는 경우 1단계 기본금 전액지급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수당 지급대상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참여기간에 대한 참여수당은 최소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 일할계산은 수당지급 대상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참여기간을 최소 소요기간(7일 또는 21일 등)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되 기본지급액 15만원을 한도로 지급
- **(추가 지급액)** 프로그램 수료여부에 따라 5만원 또는 10만원 추가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I
 - 단기집단, 취업특강 등에 2회* 이상, 중소기업탐방(2일 이하),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20시간 미만) 수료자: 5만원
 - * ①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2회, ② 취업특강 2회, ③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1회 + 취업특강 1회
 -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수당 수급자의 경우 수당지급 대상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취업특강 등 추가 수당 지급대상 프로그램 참여일자가 1일 이상이면 5만원 전액 지급
 - 집단상담프로그램, 중소기업탐방(3일 이상),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20시간 이상)* 수료자: 10만원
 - *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 이수 여부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발급하는 ‘생애경력설계과정 수료증’으로 확인

-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수당 수급자 의 경우 수당지급 대상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추가 수당지급 대상 프로그램 참여일자가 1일 이상이면 10만원 전액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II

- 중소기업탐방(2일 이하)프로그램 참여자: 3만원
- 집단상담프로그램, 중소기업탐방(3일 이상),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20시간 이상) 참여자: 5만원
-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수당 수급자의 경우 수당지급 대상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추가 수당지급 대상 프로그램 참여일자가 1일 이상이면 5만원 전액 지급
- * 단기집단 및 취업특강 참여시 추가 지급액 없음

〈 1단계 참여수당 지급액 〉

기본지급액		추가지급액			계	
I 유형	II 유형	구분	I 유형	II 유형	I 유형	II 유형
15만원	15만원	중소기업탐방(2일이하)수료자	5만원	3만원	20만원	18만원
		단기집단 및 취업특강 2회	5만원	-	20만원	15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중소기업탐방(3일 이상),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20시간 이상)수료자	10만원	5만원	25만원	20만원

* ① 패키지 I 유형

- 참여자가 다수 프로그램을 참여하더라도, **추가 지급액은 최대 10만원**
예: 참여자가 취업특강 2회 수료 후, 중소기업탐방(3일 이상)를 수료했을 때, 추가 지급수당은 5만원이 아닌 10만원
- 단기집단 2회 수료자가 중소기업탐방(2일 이하)탐방에 참여 가능. 또한 집단상담 수료자가 중소기업탐방(3일 이상)에도 참여 가능. 다만, 추가지급액 상한 10만원은 준수

② 패키지 II 유형

- 단기집단·취업특강 2회 수료자에 대한 수당지급은 없음
- 참여자가 다수 프로그램을 참여하더라도, **추가 지급액은 최대 5만원**

예: 중소기업탐방(2일 이하)탐방 수료자가, 중소기업탐방(3일 이상) 또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료할 경우, 추가 지급수당은 5만원

○ **(I 유형 중 밀착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참여수당 지급)** I 유형 중 밀착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1단계 참여수당은 초기상담일로부터 4주 단위로 지급하며, 마지막 회차는 IAP를 수립한 자에 한해 지급

- 최초 1회 지급분은 기본 지급액 15만원 + 프로그램 수료여부*에 따라 추가 지급 (IAP 수립여부와 무관)

*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취업특강 2회·중소기업탐방(2일 이하),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20시간 미만) 프로그램 수료 5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중소기업탐방(3일 이상),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20시간 이상)프로그램 수료 10만원

- 최초 1회 지급 후에는 교통비·식비 등 실비 보상차원에서 1일 20,000원을 지급하고 1단계 프로그램 수료여부*에 따라 추가 지급

*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취업특강 2회 등 5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10만원

○ **(일반계고 재학생에 대한 참여수당 지급)** 일반계고 재학생 및 산업정보고 재학생 등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1단계를 종료한 경우 참여수당 최대 20만원 지급 (I·II 유형 모두)

- 위탁기관이 일반계고 또는 산업정보고에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은 허용하되, 이 경우 **참여수당은 부지급**

* 1단계 상담 전체를 위탁기관에서 하는 경우 참여수당 15만원 지급하되, 집단상담 등에 참여할 경우 업무매뉴얼에 따라서 추가수당 지급
(학교 및 위탁기관 상담 혼재시, 위탁기관 방문 상담에 한해 1일 2만원 지급)

4. 지급시기·방법 및 절차

○ 지급시기

- 참여수당은 1단계 IAP 수립일(1단계 수료시점) 이후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일반계고 재학생 참여자 중 1경로(2단계 훈련개시 전 IAP 수립) 참여자는 IAP수립 후, 2경로(1·2단계 통합운영) 참여자의 경우는 2단계 종료시점에 1단계 수당 지급

○ 지급방법

- **(직접 지급)**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자 본인의 계좌를 통해 직접 지급하되, '신용 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 계좌를 통한 수당 수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타인명의 계좌를 통한 실비 수급 허용
- **(일괄 지급)** 1단계 참여수당은 지급취지(실비보상 및 참여유도)를 감안하여 해당금액(1인당 15·18·20·25만원)을 일괄 지급

○ 지급절차

- **(신청서 접수)** IAP 수립 완료 후 지급대상자로부터 지급계좌 등을 기재한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서식 18)」 접수

※ 가급적 IAP 수립 당일 신청서를 접수하고,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당 지급

5. 유의사항

○ 참여수당 신청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철저

- 신청서 접수 시 신청서 내용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참여수당 지급기일 준수

- 참여자가 실업자임을 고려하여 신청서 접수 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 여부 결정·조치

※ 신청서 제출 이후 1단계 참여수당 지급 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신청서 등 관련 제출서류 안내

- 초기상담일에 1단계 참여수당 지급요건·절차 등을 안내하여 IAP 수립일에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서식 19) 등

- 제출서류: ①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② 통장사본, ③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증 또는 출석부 사본 등 프로그램 참여확인서(민간위탁기관 참여자만)

※ 이외 서류 징구 금지

○ 참여수당 환수

- 참여수당이 지급된 이후 참여대상자 요건 미충족자로 뒤늦게 확인된 경우 기 지급된 참여수당 전액 환수

○ 참여수당 청구 소멸시효

- 1단계 참여수당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으로 민법 제163조를 준용하여 3년의 소멸시효 적용
-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수당 지급 원인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산정

Ⅲ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1. 지급목적

- 훈련참여지원수당이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해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
- 경제적 지원을 통해 참여자가 직업훈련에 집중하여 직업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성실한 훈련 참여자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여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

2.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대상

- ①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 참여자
- ② 창업교육 참여자(단, 동 업무매뉴얼 II. 5. 창업지원연계대상자에 한함)
- ③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인터넷원격훈련 중 집체훈련 참여자
 - 집체훈련 참여일에 한하여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인터넷 훈련 수강자 수당지급 처리요령】

- 출결상황 관리의 어려움, 가정에서 수강 등을 감안하여 **훈련참여지원수당 부지급**.
다만, 인터넷 훈련 중 **집체훈련 참여일**에 한하여 수당지급
 - ▶ 인터넷 원격훈련의 집체훈련 참여일에 대해서는 일반훈련 참여과정으로 간주하여 처리
 - ▶ 훈련참여수당 지급시 집체훈련만을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간주하여 처리
- 2단계의 훈련기간 산정시에는 인터넷 원격훈련(원격+집체)을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처리
- 인터넷 훈련 수강시 전담자와 상담을 통해 참여 및 관리
 - * 30일 미만 단기 훈련과정의 경우 개시일로부터 2일 이내 훈련과정 등록 가능

-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되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직접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참여한 장애인
- ⑤ 청년취업아카데미 참여자
- ⑥ K-Move 스쿨 훈련 참여자
- ⑦ 인문계특화과정 훈련참여자와 교육부 산업정보교 위탁생
- ⑧ 고용노동부 인증 훈련기관의 계좌적합훈련과정 이외의 훈련과정(미인정 과정) 참여자
 - 지원 대상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중인 34세 이하 청년(I 유형 및 II 유형)으로 별도의 훈련비 지원을 받지 않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 훈련비 액수와 무관하게 훈련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원받는 경우 부지급
 - 지원 대상 훈련과정 : 고용노동부 훈련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이 타부처, 자치단체, 대학 등 타 기관의 요청으로 훈련과정을 개설하였거나, 훈련기관 자체적으로 참여자의 취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설한 계좌적합훈련과정 이외의 훈련과정(미인정 과정)
 - * 다만,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호) 제40조 4항 1호 부터 6호에 해당되는 훈련과정은 훈련참여지원수당 지원 제외
 - 최소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기준 : 훈련기간과 훈련시간이 각각 10일 이상 40시간 이상으로 출결관리가 되는 과정
 - * 출결관리확인 및 수당지급일자 및 금액 등에 대한 판단은 훈련기관에서 작성하고 관리하는 출석부(서식 55 참고)를 기준으로 함

3. 훈련참여지원수당 부지급 대상

- ① (취업자)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한 자
 - 단, 직업훈련 참여 중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취업하여 계속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수당 지급

※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 전**까지 수당 지급

- 또한, 직업훈련 참여 중 **주 30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게 된 자가 더 나은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여 취성패 참여를 계속하게 되는 경우 **근로제공 일자(일용근로일)와 중복되지 않는 훈련일자에 대해**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참고 :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자 판단

⇒ 초기상담일부터 기산하여 주30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연속해서 2회가 되거나 또는 (연속해서가 아니더라도) 4주간 2회 이상 있을 경우

- ② (생계급여수급자 등) 자치단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일반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시설수급자(단, 긴급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급)
- ③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참여자)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참여자에게 소정의 수당이 지급되므로 부지급

* 다만, 특정 요건에 해당되어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가능

- ④ (한국폴리텍대학 1년 이하 비학위과정 양성훈련 참여자) 한국폴리텍대학 1년 이하 비학위과정 양성훈련은 소정의 수당이 지급되므로 부지급

- 단, 1년 이하의 비학위 과정으로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과정은 훈련참여지원 수당 지급

- 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 참여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은 기관에 따라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므로 훈련참여 지원수당 부지급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참여자도 부지급

- ⑥ (양성훈련 참여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양성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및 숙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부지급

- ⑦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각 훈련과정마다 소정의 수당이 지급되므로 부지급
- ⑧ (한국폴리텍대학 비예산 직업훈련) 각 훈련 과정마다 소정의 수당이 지급되므로 부지급
- ⑨ 타 부처(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훈련비나 훈련수당 등을 지원하는 훈련참여자

4.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액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개월(단위기간)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월 최대금액은 284,000원
 - 다만, 고등학교 재학생은 월 최대금액 200,000원을 한도로 지원
 - * 고교재학생의 경우 지급단위기간에 졸업일자가 포함된 경우 28.4만원 지급
 - 재정지원일자리 수당 수급자의 경우 수급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훈련일수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18,000원을 지급, 월 최대 금액은 284,000원

5.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기간

- 수당수급 목적의 장기훈련 등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하여 **최초 훈련 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까지 지급**
 - * 훈련참여 가능기간과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기간이 다름에 유의
 - 훈련기관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강이 된 경우는 폐강일 이전 훈련 출석일수 1일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월 최대 금액은 284,000원
 - * 훈련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강이 된 경우 해당 월의 출석률 80% 여부는 불문
 - 훈련기관 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용센터에 훈련일자 변경신청을 하게 되어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은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가능기간(6개월) 산정시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다만, 훈련기관 등에서 훈련과정 및 일정 등에 대한 사전안내(오리엔테이션 등)시 해당 훈련과정에 방학이나 휴강기간이 있음을 안내한 경우 등과 같이 방학기간 또는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이 진행되지 않는 휴강기간이 있음을 알고 훈련과정에 참여한 경우 해당일자는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기간(6개월)에 포함

* 일반계고 재학생 참여자의 방학기간은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기간 기간산정시 불포함

- 취업지원 유예 사유에 해당되어 취업지원 유예 처리된 경우, 6개월 기간 산정시 유예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6. 출석일 인정 및 출석률 산정

- (출석일수 인정기준) 훈련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58조 등)을 준용하여 출석일수 인정기준 적용

- 지각, 조퇴, 외출은 단위기간 내 전체 지각, 조퇴, 외출 3회에 대해 1일 결석으로 처리

※ 1일 소정 훈련시간 중 지각·조퇴·외출로 당해 과정 훈련시간 50% 이상을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

- 단위기간 내 **훈련수강 포기 후 미출석일은 결석일로** 처리

- **훈련 수강포기 사유가 취업인 경우** 수강포기일 이전 훈련 참여일에 대해 훈련 참여수당을 지급(훈련일수 1일당 18,000원 기준, 월 최대 284,000원 한도, 80% 이상 출석여부 불문)하고, 수강포기 사유가 **취업 이외의 사유인 경우는** 해당 단위기간 내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 한해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 소정훈련일수가 3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6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출석일수 인정기준에 따라 부득이 결석한 경우, 결석일수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 (출석률 산정) 지급단위기간 내 모든 훈련과정의 총 출석일수가 총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수당 지급

- 지각, 조퇴, 외출은 단위기간 내 전체 지각, 조퇴, 외출 횟수 3회를 1일 결석으로 처리하여 출석률 산정

※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보지 아니함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훈련개시일 이후 훈련과정에 등록*한 경우, 훈련개시일 부터 훈련 등록일 전날까지의 기간 중 포함된 소정훈련일수는 단위기간 내 출석률 산정시 결석으로 산정

* 훈련개시일 이후 훈련과정에 등록한 경우라 함은 1단계 종료 후 2단계로 연계되어 2단계 초기상담일 이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참여자가 훈련과정 탐색 결과 이미 개강한 과정의 훈련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등록한 경우를 의미

7. 수당지급일수 산정원칙

- 지각, 조퇴, 외출은 수당지급일수 산정시 수당지급일로 처리
- 같은 날 2개 과정 이상 수강한 날의 지급인정일수 산정시 과정 모두 결석한 경우에는 지급일수에서 제외하되, 1개 과정 이상 참석(지각, 조퇴, 외출은 출석으로 간주)한 경우 수당지급일로 인정
- 같은 날 2개 이상 과정을 모두 출석하였더라도 수당지급일수는 1일로 산정
- 다수의 과정 중복 수강 중 1개 과정을 수강포기한 경우에는 나머지 과정이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과정에 대해 지급

【같은 날 2개 이상 과정 수강시 지급인정 여부 판단 예시】

* 당일에 대한 지급여부 결정시 판단 예시임

① 같은 날 2개 이상 과정에 참여한 경우

A과정	출석	출석	결석	결석	지각	지각	출석	지각	조퇴	
B과정	출석	결석	출석	결석	조퇴	결석	지각	지각	조퇴	결석
지급여부	○	○	○	×	○	○	○	○	○	×

② 각기 날을 달리하여 수강한 경우

A과정	출석		결석		지각		출석		조퇴	
B과정		출석		결석		출석		지각		출석
지급여부	○	1 ○	×	×	○	○	○	○	○	○

8.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시기·방법 및 절차

8.1.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시기

- (최초 수당) 사업 참여 후,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
- (2회차 이후 수당) 원칙적으로 1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단위기간의 종료일 익일 부터 1개월 단위로 순차적으로 지급
 - 다만, 1개월의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단위기간 산정은 최초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관련 해당 훈련과정의 총 훈련일수에 따라 구분 조치

8.2.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단위기간 산정

<훈련과정이 1개월 이상인 중·장기 과정>

- 1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단위기간의 종료일 익일부터 1개월의 수당 지급단위 기간을 연속적으로 산정·판단
- 당해 훈련과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최근의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단위기간의 종료일 익일부터 1개월을 산정·판단

<훈련과정이 1개월 미만인 단기 과정>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단위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익일 당시 참여중인 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익일부터 1개월의 수당 지급단위기간 산정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단위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익일 당시 참여중인 과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후 새로운 훈련과정 참여일부터 1개월의 수당 지급단위기간 산정

<훈련기관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훈련일자 변경신청을 하게 된 과정>

- 훈련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훈련일자 변경신청을 하게 된 과정은 해당기간 만큼 연장하여 산정

- <예시> 4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직업훈련의 최초 훈련개시일자가 1월 15일이고, 훈련 기관의 건물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여 긴급한 공사를 하게 되어 부득이 10일간(3.5~3.14) 휴강을 한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단위기간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함
- 1회차(1.15~2.14), 2회차(2.15~3.24, 휴강 10일 포함), 3회차(3.25~4.24), 4회차(4.25~5.24)

9.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방법

○ 직접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 본인계좌를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계좌를 통한 수당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타인명의 계좌를 통한 수당 지급 허용
- ※ 타인명의 계좌를 통한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준 준용

○ 월별 일괄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의 지급취지(훈련기간 중 생계부담 완화)를 감안하여 동 수당은 해당 월의 훈련참여지원수당 전액을 일괄 지급

10.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절차

- 훈련과정 및 훈련일수 대비 참여 실적은 HRD-Net에서 확인(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아닌 훈련 또는 창업교육 등은 출석부를 제출받아 확인)
- 업무담당자는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신청서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쳐 신청서 제출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 【확인순서】 ❶ 신청자 적격(사업참가자 여부) → ❷ 직업훈련일수 등 참여대상자의 지급 요건 충족 여부
- *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제출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당 지급
-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에 참여하는 청·장년층(패키지Ⅱ 유형)에 대해서는 훈련비 일부를 자부담하게 하고, 향후 취업시 환급함을 안내

11.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 시 유의사항

11.1 훈련참여지원수당 신청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철저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접수 시 신청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Hrd-Net을 통해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단위기간 중 대상자의 참여훈련과정 및 훈련일수 외 대상자의 참여 실적, 미수료 횟수 등 확인
- 특히, 1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후, 2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단위기간 산정 관련 기산시점에 유의

11.2. 여타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 조건부수급자,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등 별도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조치

11.3.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기일 준수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지급취지를 감안하여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11.4. 2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관련 신청시점 등 관련 사항 안내

- 1차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받은 참여대상자에 대해서는 2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신청 시점 등을 정확히 안내
 - 참여대상자의 1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신청 당시 훈련과정 참여여부를 감안하여 1개월의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단위기간 판단기준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

11.5. 징구서류 : 훈련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 출결 여부를 확인하여 수당 지급
 - 단, 내일배움카드제의 경우 HRD-Net에서 출결 여부를 확인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타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출석부 사본을 제출받아 수당 지급

12.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관련 전산 조치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에 따른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시,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의뢰 등 관련 전산조치 실시
 - * 전산시스템 운영 매뉴얼 참조

13. 훈련참여지원수당 수급자 등에 대한 관리

- 사업 참여 문의 및 1단계 과정 운용단계에서 직업훈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요건과 지급단위기간 산정원칙을 정확히 안내·설명
-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받은 자(직업훈련 참여자 포함)에 대해서는 훈련 참여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
 - 최초 훈련과정 참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경과 시, HRD-Net을 통해 참여자의 직업훈련 참여현황을 파악하여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요건 충족 시 빠른 시일내 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
- 훈련참여지원수당 청구 소멸시효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으로 민법 제 163조를 준용하여 3년의 소멸시효 적용
 -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훈련참여지원수당 수당 지급 원인이 발생한 날 다음날부터 산정

14. 훈련참여지원수당 환수

-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된 이후에 참여대상자가 요건 미충족 또는 부정수급 등으로 뒤늦게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된 훈련참여지원수당 전액 환수 조치

IV 3단계 참여수당

1. 지급목적

- 1단계 또는 2단계 서비스가 종료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3단계에서 집중 취업알선을 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와 상담자가 지속적인 취업상담을 진행해야 하는 바, 참여자가 취업상담을 위해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교통비 등 실비 지급
- 구인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이력서·자기소개서·면접 코칭 등 취업에 필요한 적극적인 3단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참여자가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2.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 고용센터 및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에서 집중 취업상담(최소 30분 이상) 또는 취업알선을 실시한 방문 참여자에 대해 실비(월 1회, 2만원) 지급
 - * 지급한도 : 최대 3회(총 6만원 한도). 단 3단계 최초 상담일을 지급대상에서 제외
 - * 지급방법 : 취업알선 기간 종료시 일괄 지급(지급 횟수 1회)
 - * I, II 유형 참여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 *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3단계 구직촉진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3단계 수당지급 방법 예시 】

- **(원칙)** 3단계 최초상담 일자를 수당지급 단위기간 산정의 초일로 하여 역월 상 1개월을 산정하되, 최초 상담일자는 의무 출석일이므로 수당지급 대상일자에서는 제외함
⇒ 취업알선 기간 종료시 일괄지급(지급횟수 1회)
- **(예시)** 3단계 시작일자가 7.14일인 참여자가 7.14, 8.13, 8.14, 9.10, 9.14일 방문상담을 진행한 경우 3단계 수당지급 방법

지급단위기간	방문상담일	수당지급인정일	수당지급액
7.14-8.13	7.14, 8.13	8.13	20,000
8.14-9.13	8.14, 9.10	8.14, 9.10	20,000
9.14-10.13	9.14	9.14	20,000

V

3단계 청년구직촉진수당

1부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 운영

1. 지급목적

-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34세 이하 I 유형 및 II 유형 청년층이 3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데 실제 소요되는 비용(예: 어학 학원 수강비, 자격증 취득비용, 교재구입비, 교통비·식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
-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청년들의 구직활동비용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어 구직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취업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

2. 지급대상 및 요건

- 3단계 진입한 34세 이하 I 유형 및 II 유형 청년층 참여자가 기존에 수립한 IAP를 토대로 구직활동 관련 상호의무협약 체결하고, 「구직활동이행계획서 제출 → 구직활동 이행 → 구직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

* 상호의무협약 미수립 참여자는 3단계 집중 취업알선서비스 및 기관방문시 실비(1회, 2만원)는 지급하되 구직촉진수당은 미지급

- (구직활동 범위) ▲입사지원서 제출 ▲기업 등 면접응시 ▲기타 자기 주도적 구직 활동계획(구직기술 향상분야, 어학 등 학원 수강 등)
- (주기 및 의무) 구직활동이행계획서는 상호의무협약체결일로 부터 5일 이내에 1회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서를 바탕으로 매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이행

구직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위의 3가지 활동을 2회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 구직 활동이행계획서를 작성

* 예: 입사지원서 제출 + 어학학원 수강, OO기업 면접응시 + 면접특강

3. 상호의무협약체결 및 구직활동이행

3.1. 상호의무협약체결

- 3단계 진입한 34세 이하 I 유형 및 II유형 청년층 참여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구직활동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상담사와 참여자 간 구직활동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상호의무협약을 체결
- 상호의무협약 체결시 참여자에게 자치단체 등에서 구직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하는 수당 수급여부를 명확히 확인
 -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로 추후 중복수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조치됨을 명확히 안내

3.2. 구직활동이행계획 수립

-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한 자는 협약체결일로 부터 5일 이내에 구직활동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외부망(www.work.go.kr/pkg)에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활동이행계획서를 직접 입력한 후 제출
 - * 상담사가 1단계 또는 2단계 종료일에 구직촉진수당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한 경우 참여자는 상호의무협약체결 전이라도 취업성공패키지 외부망을 통해 구직활동이행계획서 작성·제출 가능
 - * 상호의무협약체결 전 제출된 구직활동이행계획서는 협약체결 이후 상담사가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상호의무협약체결일에 구직활동이행계획에 대한 대면 상담도 가능함
- 구직활동이행계획서는 상호의무협약체결 후 1회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이때 제출하는 구직활동이행계획서의 내용은 향후 어떤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입사지원서 제출 ▲기업 등 면접응시 ▲기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계획 중 매월 2가지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참여자가 제출한 구직활동이행계획서는 상담사와 대면 또는 유선상담을 실시해야 제출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때 상담사는 참여자가 수립한 구직활동이행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해 심층 상담을 진행해야 함
- * 구직활동이행계획서의 내용에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담사는 참여자에게 기 제출된 계획서를 수정·보완한 후 다시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대면·유선상담 시 상담사가 상담내용을 토대로 수정·보완 가능
- 참여자는 필요시 제출이 완료된 구직활동이행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고, 이때 수정 필요성 및 변경된 구직활동계획에 대해 상담사와 대면 또는 유선상담을 실시해야 제출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

3.3. 구직활동이행결과보고서 제출 및 점검

-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한 자는 협약체결일로 부터 1개월을 구직활동 단위기간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단위기간 종료 후 3일 이내에 구직활동 이행결과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 취성패 외부망 ‘마이페이지’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증빙자료도 같이 첨부
- * 필수 포함사항: ▲월별 이행계획, ▲구직활동 계획서 상의 계획 이행여부(관련 증빙 서류 첨부), ▲이행과정에 대한 평가(잘한 점 / 개선 필요한 점 등)
- 단위기간은 **상호의무협약일자**를 기준으로 매 역월상 1개월을 의미하고, 상호의 무협약체결 후 2단계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3단계를 진행하는 참여자는 **3단계 전환일**을, 3단계 기간 중 취업으로 종료된 자가 3단계로 재개되는 경우는 **재개 일자**를 기준으로 역월상 1개월을 의미
- * 예: 협약일자가 2월 5일 인 경우 단위기간은 (1회) 2.5-3.4, (2회) 3.5-4.4, (3회) 4.5-6.4

4. 구직촉진수당 지급

- 상담사는 구직활동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구직활동이행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 하고, **의무사항을 모두 이수한 경우** 해당 월의 구직촉진수당 30만원(고교 재학생 20만원) 지급하되, 신청 후 7일 이내 지급(최대 3개월)

- * 청년층의 경우 3단계 기간이 최대 6개월(재학생 12개월)까지 가능하므로, 이 기간 중 상호의무 협약을 이행한 달에만 수당을 지급
 - ↳ 예: '18년 8월 5일 상호의무협약 체결시, '18년 9월 4일까지의 이행결과를 점검하여 이행시 수당 지급
- * 고교재학생의 경우 지급단위기간에 졸업일자가 포함된 경우 30만원 지급
- 수당지급은 3단계 참여 가능기간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이고, 취업으로 종료한 달이 포함된 월까지 지급(잔여 월은 지급 중단)
 - * 구직활동수당 지급단위 기간(1달) 이내에 3단계 종료일이 포함되어 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월의 구직활동계획을 이행하면, 해당 월의 수당 전부 지급
- **취업에 성공한 달**은 구직활동수당의 최종결과물을 달성한 것으로 보아 해당 월의 구직활동 이행계획 완료여부와 무관하게 수당 전액 지급(30만원)
 - * 다만, 잔여 회차의 구직활동수당은 지급하지 않음(예: 2회차 구직활동계획이행 월에 취업에 성공할 경우 3회차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 또한, 해외취업, 인턴, 일경험, 일학습병행제 등에 참여하는 경우 사실상 취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취업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참여자가 취업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구직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취업에 준해서 처리(수당수급을 위한 형식적 구직활동제한 필요)
- (3단계 1개월 미만자) 시행일 현재, 3단계 종료일까지 월력상 1개월 미만이 남은 경우도 해당 월에 상호의무협약 체결 및 구직활동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수당 지급

5. 자치단체 등 유사사업과의 중복방지 방안

□ 현황

- (내용) 직·간접적 구직활동인 자격증 취득, 어학학원 등의 학원비, 면접참여를 위한 교통비·식비 등의 명목으로 3~5개월, 월 20~50만원 지원되는 수당
- (유형) '17.5월말 현재 전국 9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사사업을 운영

□ 주요 내용

- **(기본 원칙)** 정부 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구직활동 수당과 자치단체 유사사업은 동일 기간에 중복해서 수급할 수 없도록 조치
 - 해당 청년이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지자체 사업 중 1개만 참여하도록 제한(당사자 선택)
 - 다만, 직업훈련과 연계하여 지급되는 수당 및 훈련비*, 보건복지부가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업** 등은 유사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예: 경북도 '청년취업 미래첨단기술 인력양성사업'(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배제 중)

** 예: 대전시 '면접비 지원', 광주시 '교통수당'

□ 중복여부 확인 및 사후조치

- **(기본방향)** '일모아 시스템'을 통한 청년구직활동수당 ↔ 지자체 사업간 체계적 중복 방지
 -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층 구직수당 수혜자들의 정보를 해당 자치단체가 입력하도록 요청
 -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②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기관·단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4. 정보 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 여부 확인
- 입력요청내용: 참여자 인적사항, 사업명, 지원기간 및 금액 등(일모아시스템 매뉴얼 참고)
- **(자치단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일모아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현행화 되므로, 자치단체는 실시간으로 양 사업 중복 여부 확인 가능
 - * 서울시·경기도 등은 현재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중복여부 검증 가능
- **(고용센터)** 3단계 상호의무협약 체결 단계에서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자치단체 사업에 중복여부 확인

- 중복자로 확인되는 경우 양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청

○ **(경과조치)** 자치단체에서 일모아 시스템에 해당 참여자를 누락없이 입력하기 전까지
구직활동수당 수급 내역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

- 고용센터는 수당을 지급한 익월에 해당 지자체에 명단을 일괄 송부하고 상호
대조를 요청, 중복수급시 우리부에서 지급한 수당 회수

* 자치단체 수당 지급여부를 자기 확인하도록 하고,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

□ 자치단체 사업 참여자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유예기간

○ 사업성격이 유사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대전시(청년취업희망카드), 부산시, 강원도
등의 사업 참여자는 지원종료 6개월*이후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가능

* 참여자 본인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원 종료사실 확인증 등을 통해 입증

* 자치단체 사업 종료 후, 구직노력 등 자기주도적 후속활동을 하는 기간 부여 필요

VI 취업성공수당

1부

취업성공패키지 시범 운영

1. 취업성공수당의 의의

- 취업성공수당이란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참여자**로서 동 사업을 통해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취업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
- (**취업성공에 대한 인센티브**)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궁극적 지향점인 취업 목표 달성에 대하여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
- (**취업유인기제**) 취업성공패키지 I의 정책대상은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부족한 계층으로서 이들의 취업의욕 제고는 취업성공과 직결되는 기본 전제조건인 바, 취업성공수당은 이들의 취업의욕을 높이는 기제로서의 의미를 가짐
- (**근속유도기제**) 또한 취업성공수당은 지급방식 설계에 따라 취업상태를 일정기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근속유도기제로서도 기능

2.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사전단계 초기상담일 이후 취업에 성공하거나, 기초수급자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참여 중 IAP 수립 이전에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지급요건 충족시)
- (**기초수급자 외 I 유형**)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로서 일정한 과정 참여를 전제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한 참여자

3.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 취약계층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3·6·12개월 단위로 지급

3.1. 취업의 경우

① 지급요건 1 :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 **(고용형태)** 반드시 정규직에 해당하는 일자리일 것을 요하지 않음(정규직, 비정규직 여부 무관)

- **(근로조건)** 주30시간이상 일자리에 고용보험적용대상 근로자로서 취업한 경우

- 또한, 참여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취업이라는 사업의 궁극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거리가 있는 다음과 같은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 ① 각 부처에서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② 근로기준법상 근로 관계 형성(근로자 지위)이 부인되는 일자리 ③ 직계 준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④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⑤ 공무원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취업자로서 1년 이상의 “계속 고용이 기대되는 일자리”에 취업한 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 “계속 고용이 기대되는 일자리”라 함은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참여자가 동 업무 수행을 위하여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함

- **(근속기간)** 참여자가 취업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 다만, 참여자가 취업 후 중도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변경되었으나 피보험 기간 단절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속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유관기준 ① : 이직 前 직장 취업 】

- (기본원칙) 이직 前 직장에서의 취업 또한 원칙적으로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 포함
- (예외적 제외기준) 이직 前 직장에서의 취업이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 ① 이직 前 직장에서의 취업에서 『이직』은 최후 이직
 - * 최후 이직 이전의 직장에서의 취업은 일반적인 취업성공수당 지급기준 적용
 - ② 이직 前 직장에서의 취업에서 『직장』은 이직 당시 근무했던 직장
 - * 동일 기업(사업)내 장소를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른 직장으로 봄

- ③ 이직 전 직장에서의 취업에서 『취업시점』이 이직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취업

■ (확인방법) 참여자 본인, 고용보험전산망, 사업체 관계자 등을 통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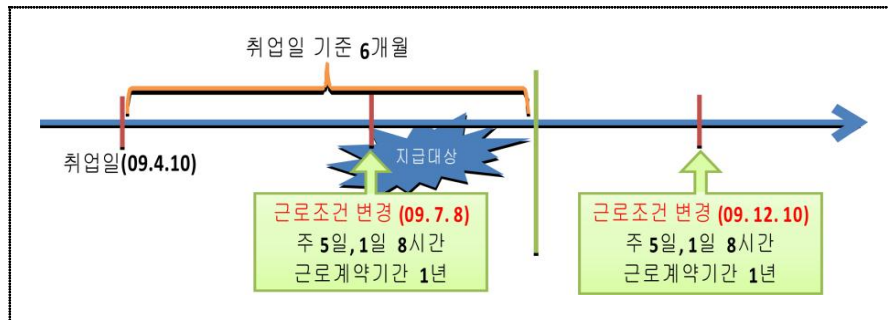
- ① (참여자에게 확인) 참여자로부터 취업사실 통지서를 제출받은 경우 참여자에게 당해 사업체에서의 근무경력 유무 및 근무기간 등을 확인
- ② (고용보험전산망 확인)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당해 사업체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장인지 여부 및 근무기간 확인
- ③ (사업체 관계자에게 확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사업체 관계자에게 참여자의 당해 사업체 근무 여부 및 근무기간 등 확인

【 유관기준 ② : 근속 중 ‘근로조건 변경’ 】

■ (기본원칙) 일정한 기준 하에서 제한적으로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 포함

⇒ 취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 이때, 취업은 사업 참여 후 이루어진 최초 취업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이직도 포함



- (취업성공수당 지급 위한 근속기간 기산점) 변경된 근로조건 적용일을 기준으로 취업성공수당 지급 관련 근속기간 산정
- (취업성공수당 지급 위한 후속조치) 근로조건 변경일부터 1개월 이내 「근로조건 변경사실 통지서(서식 41)」를 제출하도록 함

② 지급요건 2 : 취업시점

- 취업시점이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또는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기간만료일 등)의 다음날로 부터 3개월 이내(사후관리기간)에 이루어졌을 것
- 다만, 프로그램참여기간 중 취업은 1단계 IAP 수립 이후 이루어진 취업으로 한정
 - *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낮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사업취지 감안 시, 1단계 과정에서의 취업까지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악용 가능성(취업성공수당 수급 목적의 형식적 참여 소지) 또한 존재
 - * IAP 수립일과 취업일이 같은 날인 경우, IAP 수립 이후 취업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 유관기준 ① : 첫 번째 취업 후 이직 】

- (기본원칙) 사업참여 후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 이후 일정기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 포함
- (인정기준) 다음 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이직에 의한 취업(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일자리 전제)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으로 인정
 - ① 이직시기 : 첫 번째 취업일 기준, 1개월 미만 이직
 - ② 이직횟수 : 첫 번째 이직
 - ③ 신청기한 : 이직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 신청
- (인정기준 준용) 첫 번째 취업일 기준 1개월 미만 퇴사한 경우로서 퇴사일(이직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상기 원칙 준용
 - * 퇴사와 동시에 새로운 직장으로 바로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
 - * 이직일 이후 재취업 전 「재개 신청서(서식 35)」를 제출하거나 또는 재취업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 통지서(서식 42)」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 * 재개처리가 불가능한 사후관리기간에는 동 규정 적용 제외

③ 지급요건 3 : 재직 여부

-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제출 당시 재직을 반드시 전제하지는 않음

④ 지급요건 4 : 취업경로

- 취업은 고용센터 등의 알선에 의한 취업뿐만 아니라, 대상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 활동에 의한 취업도 인정

⑤ 지급요건 5 : 피보험자격 취득

- 고용보험시스템 상 피보험자격자로 취득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하나,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해야 하므로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 시 함께 제출받아 피보험자격취득 업무처리 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토록 조치하여도 무방함
 - 피보험자격 취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지급 대상자에게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추후에라도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음도 함께 안내
 - 근속기간에 따라 3·6·12개월에 30·40·8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지연되어 3·6·12개월 후에 확인된 경우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취업성공수당 전액을 일괄 지급할 수 있음
 - * 7개월에 확인된 경우 30만원+40만원=70만원을 일괄지급 가능
- 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되, 신고가 잘못된 경우 추후라도 환수될 수 있음을 안내

3.2. 창업의 경우

① 지급요건 1 : 업종

-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으로서 창업 관련 업종, 지역, 규모 등에 대하여 별도 제한을 두지는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①확인가능성 및 ②제도악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는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추가 지정 시 별도 통보)

【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는 창업 】

① 건전한 사회질서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 코드	분류명	예 시
55112 (세세분류)	여관업	여관(모텔 포함), 여인숙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요정, 룸싸롱, 한국식 접객주점, 서양식 접객주점, 바(접객서비스 딸린)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주점 클럽
※ 생계형 기타주점업(56219: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토속주점)은 제외대상 아님		
7597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외상수금대리, 채무자추적서비스, 개인신용도조사 등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무도장, 댄스홀, 콜라텍
9612(세분류)	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이 중, 터키탕업, 안마시술소

② 인터넷 창업 및 무점포 창업 : 제한적으로 인정(부록 6 참조)

- 레미콘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과 같이 건물형태의 점포가 아니더라도
자산을 투자하여 구입(또는 임차)한 차량을 활용한 경우 등도 점포로 인정

② 지급요건 2 : 사업자 등록

-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으로서 창업은 **참여자가 사업자(개인 및 법인)를 등록하고,**
일정기간 동안 **등록상태 유지**를 전제로 지급

* 사업자 등록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 법인사업자 등록자는 신규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만 지급(기 등록된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 취임한 경우는 부지급)

- 영세자영업자 참여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
중·소 분류 간 추가·전환하거나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③ 지급요건 3 : 사업장 시설요건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 공간 확보(임대차 계약서 등 확인)
 - 독서실, 고시원 등 주거만을 위한 공간을 사업장소로 신고한 경우는 불인정

④ 지급요건 4 : 매출액 요건

- 사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발행한 자에 한하여 지급

다만,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자재구매 등 매입액이 있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⑤ 지급요건 5 : 창업시점은 취업한 자의 취업시점 준용

※ (부록 6) 「인터넷·무점포 창업」 참조

※ (부록 7) 「1인 창조기업」 개관」 참조

4. 취업성공수당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4.1. 취업성공수당 지급방법

- 직접 지급
 -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해당자 본인계좌를 통해 직접 지급
 - 타인명의 계좌를 통해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1단계 수당의 타인명의 계좌 지급 절차 등을 준용
- 3회 구분 지급
 - 일정기간의 근속유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취업성공수당은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
 - 1회차 30만원, 2회차 40만원, 3회차 80만원
 - ※ 각 회차별 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재직(또는 사업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4.2. 취업성공수당 지급시기

근속기간	3개월	6개월	12개월
지급시기	4개월째	7개월째	13개월째
취업	30만원	40만원	80만원

※ 창업의 경우 취업일 대신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되, 2~3회차는 1회차 지급 시와 동일한 사업체(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를 의미) 유지를 전제로 지급

4.3. 취업성공수당 지급절차

- 취업성공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서식 32) 및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서식 33) 제출을 전제로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자는 같은 직장에서 3(6·12)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 및 근속사실,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조치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확인 방법

- ① (취업 및 근속사실)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피보험자격취득 여부 확인
- ②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내용 등을 통해 확인
- ③ 창업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
 - ※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경우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확인이 안되는 경우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 ※ 1차 지급시 확인된 사항은 2·3차 지급시 별도 서류 징구 금지

- 업무담당자는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신청서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 취업성공수당 지급

※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급하여 일괄 지급(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취업성공수당 지급시 확인 서류 및 방법

■ 취업한 경우

<1> 1차 취업성공수당

- 제출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3·6·12개월 근속여부는 반드시 고용보험 전산망으로 확인
 - 다만, 고용보험상 신고 된 내용이 실제와 상이한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 대장 등을 통해 확인

<2> 2차·3차 취업성공수당

- 제출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고용보험전산망에서 근속기간, 재직여부만 확인하여 지급

■ 창업한 경우

<1> 1차 창업성공수당

- 제출서류 : ① 지급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요건확인 가능 서류

<2> 2차·3차 창업성공수당

- 제출서류 : ① 지급신청서, ② 사업을 계속하고 매입 또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 * 최근 발행된 세금계산서, 매입 및 매출 전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1종만 제출
 - ※ 매출 및 매입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부지급

5. 타 지원제도와와의 관계

-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하는 경우 사업주는 고용지원금을, 북한이탈주민은 취업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무시에는 취업장려금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1회차 30만원만 지원

- 다만, 거주지보호기간(5년)이 종료되었거나, 취업장려금 모두를 기 수령한 북한 이탈주민이 취업하는 경우에는 3회차까지 지급 가능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내용 문의 : 통일부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또는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자

-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참여자가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지원 대상자인 경우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6.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 등의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여부

- 임신·출산, 부상·질병 등 개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지 못한 경우 당해 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취업 성공수당 지급 가능

※ 이 경우 취업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해당 대상기간 동안 불가피한 사유로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반드시 첨부

-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 등 사업체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취업성공수당 대상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지 못한 경우

- 당해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라면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무급휴직 기간, 산재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학교 조리종사원의 방학기간 중 무급휴직 기간 등

- 한편, 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동일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이 단절되는 경우에는 단절기간을 제외하고 전후의 근속기간 합산 후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 사용자가 계속 고용을 약속하고 채용서류 보완 및 고용형태 변경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퇴직, 재입사(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및 재취득)한 경우라면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과 근속 유도라는 취업성공수당의 취지를 고려해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후 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근속 기간의 단절이 발생하였다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취업 성공수당 부지급

7. 취업성공수당 지급 시 유의사항

- 취업성공수당 신청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접수 시 신청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특히, 취업일부터 3·6·12개월 근속을 전제로 지급하는 취업성공수당 관련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근속'사실 여부 확인에 유의
- 취업성공수당 지급기일 준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 신청서 제출 이후 취업성공수당 지급 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8. 취업성공수당 지급 관련 전산 조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지급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의뢰 등 관련 전산조치 실시
 - * 전산시스템 운영 매뉴얼 참조
- 취업성공수당 청구 소멸시효
 - 취업성공수당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으로 민법 제 163조를 준용하여 3년의 소멸시효 적용,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수당 지급 원인이 발생한 날 다음날부터 산정

9. 취업성공수당 환수

-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 이후에 참여대상자가 요건 미충족 또는 부정수급 등으로 뒤늦게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된 취업성공수당 전액 환수 조치

VII 타인명의로의 계좌 사용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
 - 다만, 참여자가 본인명의로의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용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되어 타인명의로의 계좌를 통해 실비를 지급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타인명의로의 계좌로 지급 가능
-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실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각종 수당 신청서와 함께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 소유주의 '본인 명의의 계좌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제출 필요
 -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계좌명의인에게 본인계좌 이용에 동의한 사실, 동의서 및 확약서 작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
 - 타인명의 계좌이용신청서 제출에 따른 수당수급여부 및 이와 관련한 계좌명의 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참여자 본인의 책임임을 반드시 고지
 - 타인명의로의 동일 계좌로 각종 수당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계좌 소유주의 '본인 명의의 계좌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는 최초 신청시에만 첨부

〈 계좌명의인 및 동의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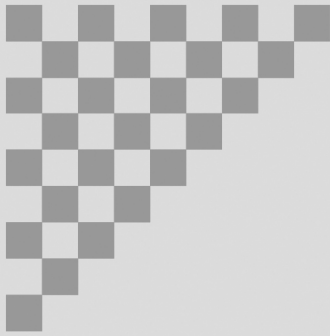
- '계좌명의인'은 '1단계 참여수당' 지급대상자와 가족관계증명서 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중 1인을 원칙으로 하되,
 - '계좌명의인'이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제출은 생략
-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1인 가구 포함)에는 통·반장, 추천기관의 장, 지인 등(20세 이상인 자)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함 (이 경우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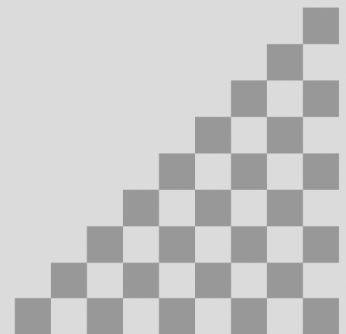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수당) 지급 요약표

구분	지원단계	지원대상	지급요건	지급액
참여수당	사전단계 (2주)	I 유형 (조건부 수급자)	○ (요건) 센터 3회이상 방문상담 시 - 1일 20,000원(최대 3회) ※ 주30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자도 지급	6만원 (지원한도)
	1단계 (1주~2개월)	I 유형	○ (요건) 센터 3회이상 방문상담 및 IAP수립한 경우(최소 21일 이상) ※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시 추가(10만원) ※ 중소기업탐방(3일이상) 참여시 추가 10만원 ※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 수료시 추가 10만원 ※ 단기·취업특강 2회 참여시 추가(5만원) ※ 중소기업탐방(2일이하) 참여시 추가 5만원	15만원(기본) + 10만원 or 5만원 =>최대25만원
		II 유형 (청년층)	○ (요건) 3회이상 방문상담 및 IAP수립한 경우 (최소 21일이상) ※ 집단상담프로그램 추가(5만원) ○ (예외) 취업역량평가 등급이 C등급 이상인 청년층, 고교재학생의 경우 ⇒ 최소 1주 이상, 상담 2회로 단축가능	15만원(기본) 20만원 (지원한도)
		II 유형 (중장년층)	○ (요건) 3회이상 방문상담 및 IAP수립한 경우 (최소 21일 이상) ※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시 추가(5만원) ※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 수료시 추가 5만원 ※ 중소기업탐방(3일이상) 참여시 추가 5만원 ※ 중소기업탐방(2일이하) 참여시 추가 3만원	15만원(기본) + 5만원 or 3만원 =>최대20만원
훈련지원 수당	2단계 (최대 8개월)	I 유형 II 유형	○ (요건) 훈련 출석일수가 단위기간 총 소정출석 일수의 80%이상 ○ 지원기간 : 최초 훈련개시일로부터 6개월 ○ 지급단위기간 : 1개월 단위 ○ 지급금액 : 18,000원(1일)	최대 월284천원 (지원한도)
참여 실비 수당	3단계 (3개월)	I 유형 II 유형	○ (요건) 취업상담·알선을 위해 센터·위탁기관 방문 시 월 1회 20,000원 지급(총 3회) - 기간만료 마지막 상담일 이후 지급 ※ 3단계 초기상담일 제외, 취업시 취업전 상담 일에 대해 지급	최대6만원 (지원한도)
청년구직 촉진수당	3단계	34세 이하 I · II 유형	○ (요건) 상호협약체결하고 구직활동이행계획을 수립후 이행결과 시 월30만원 지급 - 지급단위: 상호협약체결 ~ 1개월(총3회)	최대90만원 (지원한도)
취업 (창업) 성공수당	1단계 IAP 수립이후 ~ 사후관리 3개월전	I 유형	○ (취업요건) ①주30시간이상 ②고용보험 취득된 취업자, ③근속기간(3, 6, 12개월) ○ (창업요건) ①사업자등록, ②사업장 임대차계약, ③매출액 발생 ※ (유형업종, 인터넷창업, 무점포창업) 제외 - 지급시기 : 4,7,13개월	총150만원 3개월(30만원) 6개월(40만원) 12개월(80만원)

※ 위 사항은 기본요건 및 지원내용 요약사항이므로 기타내용은 지침을 참조할 것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I

취업지원 종료

1. 취업지원 종료의 의미

- 취업지원 종료란 일정한 사유 발생을 이유로 더 이상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
- (취업지원의 물리적 시한)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기간을 원칙적으로 최장 1년 동안 제공되므로 취업지원 시한 완료시 서비스가 종료됨
- (취업성공패키지 재참여 기산점) 취업지원 종료는 참여자의 향후 프로그램 재참여 허용 관련 물리적 기간 설정의 기준으로서 의미

2. 취업지원 종료사유

- 다음 2가지 사유 발생 시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종료
 - i) (취업 또는 창업) 1~3단계 참여 중 취(창)업하게 된 경우
 - 다만,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기간제 일자리(재정지원 일자리 포함) 또는 일용직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로서 더 나은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속 취업지원
 - ii) (원칙적 취업지원기간 만료) 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최장 1년 내에 서비스 종료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취업지원 종료절차 : 취업지원 종료사유별

3.1. 취업지원기간 만료자의 경우

-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서는 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통상 1년간의 취업지원이 종료되는 날을 기점으로 취업지원 종료 대상자에게 종료사유 및 종료일을 명시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종료 통보서」(서식 34)를 배부

- 취업지원 종료 통보 시 종료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취(창)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조치
- * 취(창)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안내
- 아울러, 일정한 경우 I 유형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도 안내

3.2. 취업지원기간 중 취(창)업한 경우

- 참여자로 하여금 취업 또는 창업 사실을 담당자에게 반드시 서면 통지(취·창업일부터 1개월 이내)하도록 사전 조치
-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서는 참여자의 취(창)업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상의 취업 또는 창업일의 전달을 취업지원 종료일로 하여 참여자에게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종료 통보서」를 배부
- 취(창)업 통지서가 제출되기 전이라도 참여자 본인을 통해 취(창)업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적시하여 참여자에 대해 취업지원 종료사실을 통보(통보서 배부)
- * 이 경우 취(창)업 통지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봄

3.3. 취업맞춤특기병 참여자의 군입대

- 취업맞춤특기병업 참여자가 군입대한 경우 기간만료자로 처리
- * 취업맞춤특기병 이외 참여자의 군입대는 중단 처리

4. 취업 후 1개월 미만 퇴사자에 대한 취업지원 종료의 특례

4.1. 예외적 특례 적용

- 사업 참여기간 중 ① 취(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자가 재개신청한 경우로서 ② 입사 후 1개월 이내 퇴사(사업자등록 폐지)한 상태에서 ③ 계속적인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사후관리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취업지원을 지속할 수 있음
- * 재개신청은 취업지원기간(사업 참여 기간) 내에서만 가능, 사후관리기간 중 신청 불가

4.2. 특례 적용요건

- **(취업·창업시점)** 취업지원 종료자로서 예외적인 계속 취업지원 대상은 **사업 참여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창업으로 한정함**

⇒ 따라서, 그 다음의 취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① 취업지원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취(창)업
- ② 초기상담일 이후 이루어진 최초 취(창)업 이후의 취(창)업*

* 예) 첫 번째 취(창)업일 기준 1개월 미만에 이직(폐업)한 경우의 새로운 취(창)업, 첫 번째 취(창)업 이후 일정기간 이내 퇴사(폐업)하여 계속적인 취업지원을 받아 새로이 취(창)업한 경우의 취(창)업 등

- **(퇴사시점)** 취업지원 종료자로서 예외적인 계속 취업지원 대상은 **사업 참여기간 중 이루어진 최초 취업 이후 1개월 미만에 퇴사한 경우로 한정**

⇒ 따라서, 첫 번째 취업일 기준 1개월 이후에 퇴사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취업성공수당 수급 목적의 입·퇴사 방지)

- **(계속적인 취업지원 희망의사 피력)** 계속적인 취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취업 및 퇴사요건 충족을 전제로,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성공 패키지 재개 신청서(서식 35)」 또는 재취업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 통지서(서식 42)」 제출

4.3. 특례 적용효과 및 유의사항

- **(적용효과)** 취업지원 종료의 일반적 효과 미적용 및 취업지원 재개
- **(유의사항)** 취업으로 인한 취업지원 종료대상자에 대하여 취업일 기준 1개월 미만 퇴사한 경우에는 취업지원 재개가 가능함을 안내

Ⅱ 취업지원 중단

1. 취업지원 중단의 개념

- 취업지원 중단이란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참여중인 취업성공패키지의 참여를 제한하고, 이후 더 이상의 취업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
- 이런 점에서 취업지원기간 만료 내지는 참여자의 취업 또는 창업을 이유로 한 취업지원 종료와는 개념적으로 차이

※ 다만, 재참여 전까지 더 이상의 취업지원을 제공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는 취업지원 종료와 중단 모두 동일

2. 취업지원 중단의 의의

- (성실한 과정참여 담보기제) 취업성공 지원 사업의 성공적 운영은 참여자의 성실한 사업 참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취업지원 중단은 참여자의 성실한 과정 참여를 담보하는 기제로서 의미
- (프로그램 재참여 관련 기산점) 이런 점에서 취업지원 중단은 취업지원 종료와 같이 당해 참여대상자의 향후 프로그램 재참여 허용 관련 물리적 기간 설정의 기준으로서 의미 존재

3. 취업지원 중단의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 중단
 - ① 참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자가 참여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경우
 - ② 직업심리검사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 정확한 직업적성 및 선호도 파악을 위한 직업심리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계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직업심리검사에 임하는 경우

* 일반적인 직업심리검사 소요시간에 비해 현저히 짧은 시간(5분 이내)에 검사를 완료함으로써 제대로 된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등

③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수립에 비협조적인 경우

⇒ IAP 수립을 위한 집중상담 등을 실시함에 있어 일반적인 상담자의 태도에서 벗어나 무응답 내지 엉뚱한 대답으로 대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

⇒ 상담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로 상담진행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담을 위한 출석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④ 세부 취업지원프로그램(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고용디딤돌 등 2단계 연계 프로그램)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였거나, 중도탈락 한 경우

⇒ 천재지변 등 정당한 이유 없이 1개 과정에서 5일 이상 계속하여 불참한 경우

* 직업훈련이 (월·수·금) 격일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훈련일수 (월·수·금·월·수)를 연속해서 불참한 경우도 해당

* 아울러, 훈련개시일 이후 7일째 되는 날까지 등록 가능한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불출석일자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훈련 등록일 이후 실제훈련 참여일부터 해당

* 다만, 질병, 본인 및 가족 등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중단사유에서 제외함

* 단위기간 내 2개 이상의 직업훈련 참여한 자가 1개 이상의 과정에 대해 중단사유 없이 참여한 경우 계속 참여 조치

⇒ 기타 각각의 세부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규정상 탈락사유에 해당되어 중도탈락자로 결정된 경우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규정 25조에 의거 계좌사용이 중지되거나, 동 규정 58조8항3호(대리출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체크한 훈련생)에 의거 훈련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 다만, 직업 훈련(국기 및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 등) 이외의 취업아카데미, 고용
대입돌 등 2단계 연계 사업에 참여하여 중도탈락 된 경우는 계속 참여 허용

⑤ 취업알선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하는 등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보이지
않는 경우

⇒ 대상자의 취업역량 및 직업선호도 등을 고려한 취업알선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를 거부하는 경우

※ 직업훈련 등 세부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임을 이유로 한 취업알선 거부는 제외

⑥ 군입대,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형식적인 참여 등 취업지원이 의미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1년간의 취업지원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형식적인 프로그램 참여태도를
보이는 경우로서 취업지원 중단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도 개선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취업지원 중단 조치 전에 취업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을 반드시 통지

⇒ 직업훈련만을 목적으로 참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민간위탁기관으로 의뢰된 참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경우

⑨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 단계별로 필수로 정한 대면상담을 위해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지체없이 출석통지하고, 출석통지 2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중단

⑩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참여자가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⑪ 구직신청 유효기간이 종료(예정 포함)되어 담당자가 재등록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구직신청이 마감된 경우

⑫ 참여자 본인이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⑬ 고용센터장 및 고용센터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위원회에서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취업지원 중단의 절차

- 취업지원을 중단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중단 사유 및 중단일을 명시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중단 통보서(서식 36)」를 즉시 배부
 - * 취업지원 중단조치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기
- 취업지원 중단 대상이 자활사업 참여자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중단 사실을 해당 자치단체에 즉시 통지

4.1. 민간위탁기관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 중단 절차

- (위탁기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중단요청서(서식 47)」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이후, 고용센터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중단 조치 사실을 통보받는 대로 전산시스템에 조치사항을 입력
- (고용센터) 위탁기관으로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중단 요청서」가 제출된 경우 요청사유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관련 지침에 따라 취업지원 중단을 통보 (서식 36)
 - 아울러, 취업지원 중단 조치 사실을 당일 중으로 위탁기관 담당자에게 유선 통보

5. 취업지원 중단의 효과

- IAP 상 여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종료
 - 참여 중인 취업성공패키지의 서비스 참여 제한 및 중단일을 기준으로 IAP 상의 나머지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도 종료
- ※ 대상자가 자활사업 대상자인 경우에는 취업종료 전 자치단체에 재심사 의뢰
- ※ 특히, 직업능력개발계좌 취득자의 경우 취업지원이 중단된 경우 중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패키지 계좌(자부담 면제)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카드유효 기간내에는 일반계좌(자부담 존재)로 전환해서 사용 가능

- 다만,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후 중단사유가 확인 된 경우는 최종 서비스 종료 일자를 중단일자로 조치
 - 향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제한
 - 취업지원이 중단된 자에 대해서는 중단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제한
 - 취업성공수당 미지급
 - 취업지원이 중단된 자 I 유형 참여자에 대해서는 취업성공수당 기준 미적용
- ※ 취업지원이 중단된 후 취업을 이유로 수당지급을 신청할 수 없음을 통지

III 취업지원 유예

1부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 운영

1. 취업지원 유예의 개념

- 취업지원 유예란 참여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세부 서비스 참여가 곤란한 경우 취업지원을 정지하고 참여대상자 자격을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것을 의미

조건부수급자의 유예

- (조건제시 유예자의 개념)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단기적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유보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함
- 조건제시유예는 제한적이며 예외적 조치이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군구담당자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결정한 건에 한하여 적용
- (조건제시기준) 2017년 자활사업 안내 책자 참조
- (자활사업 참여 결과 관리) 고용센터는 분기별(분기 첫월의 5일 이내) 행복e음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시군구로 이행여부 통지

2. 취업지원 유예의 사유

- 참여자 중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취업지원을 유예
 - ①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패키지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본인의 임신·출산으로 패키지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가구원의 질병·부상으로 패키지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은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준용

 - ④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로 패키지 참여가 어려운 경우
 - ⑤ 기타 고용센터장 또는 고용센터별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위원회(p21. 운영위원회 규정 참조)에서 일정기간 동안 패키지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활사업 대상자가 취업지원 유예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해당 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유예” 신청을 하도록 하고, 유예승인이 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취업성공패키지도 유예 조치(가급적 자치단체 담당자와 사전 유선 협의 후 조치)
- 자치단체의 유예 승인 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중단 조치

3. 취업지원 유예의 기간

- 취업지원 유예 기간은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담자가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8개월까지 허용

4. 취업지원 유예의 절차

- 취업지원을 유예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유예 신청서(서식 37)」를 작성·제출토록 조치
 - * 취업지원 유예는 취업지원 단계에 관계없이 유예사유 발생 시 신청 가능
-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유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허용여부를 결정, 서면통지(서식 38)
 - * 취업지원 유예 허용 시, 유예기간을 병기하여 통지
- 취업지원 유예 신청자가 자활사업 대상자인 경우에는 먼저 자치단체에 유예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자치단체에서 유예가 승인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유예 처리
- 전산시스템에 관련 사항 입력
 - 취업지원 유예 사유 발생에 따라 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한 경우에는 즉시 전산 시스템에 조치 사항을 입력

5. 취업지원 유예의 효과

- IAP 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중지
 - 취업지원이 유예되는 경우에는 참여 중인 프로그램의 참여 중지와 함께 유예 기간 동안 당초 수립된 취업활동계획(IAP) 상의 나머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또한 중지
- 유예기간 중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제한
 - 취업지원이 유예된 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중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제한하되, 그 기간만큼 참여기간 연장
- 취업성공수당 미지급
 - 취업지원이 유예된 자에 대해서는 취업지원 유예기간 종료 후, 취업지원 재참여 시까지 취업성공수당 기준 미적용

※ 취업지원 유예기간 중 취업을 이유로 수당지급을 신청할 수 없음을 통지
- 유예기간 중 취업된 참여자에 대한 조치
 - 취업지원이 유예된 자가 유예기간 중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근로자로 취업된 경우, 취업사실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종료

* 유예기간 중 취업자는 서비스 종료사유를 취업으로 처리하되, 취업성공수당이나 취업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아님에 유의

동 대상자가, 취업일 기준 1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한 경우에는 취업지원 재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조치

IV 취업지원 이관

1. 취업지원 이관의 개념

- 취업지원 이관이란 참여자의 거주지 이전 등을 사유로 새로운 고용센터 및 민간 위탁기관을 통해 계속해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을 의미

2. 취업지원 이관의 의의

- 참여자가 거주지 변경 등으로 인해 고용센터 및 민간위탁기관을 변경하더라도 계속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서비스가 중단없이 연속적으로 참여자에게 제공되도록 함을 의미

3. 취업지원 이관의 기본원칙

- **(이관은 허용, 새로운 시작은 제한)** 참여자 본인이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지원을 이관하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제한
- **(취업지원 중단 기준 준용)** 이관 대상임에도 새로운 시작을 요구하며 이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중단 기준 준용
 - 이 경우, 참여자에 대해 취업지원 중단을 통보하고, 프로그램 최종 참여일을 중단일로 간주

4. 취업지원 이관의 절차

- 거주지 등의 변경으로 관할 고용센터의 변경을 원하는 참여자는 거주지 변경 전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성공패키지 이관 신청서」(서식 39)를 작성·제출
- 「이관 신청서」를 접수한 고용센터는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변경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이관 통보서」 송부

- 「이관 통보서」(서식 40)를 접수한 고용센터 담당자는 통보서가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유선연락을 통해 면담일시를 지정·통지 후, 면담 실시
- 민간위탁기관에 의뢰된 참여대상자가 이관되는 경우 이관받은 고용센터에서는 동 참여 대상자를 다시 관할 민간위탁기관으로 재의뢰

4.1. 민간위탁기관 참여자에 대한 이관절차

- 위탁기관에 배정된 참여자가 거주지 이전 등으로 타 위탁기관에 이관을 원할 경우, 이관 허용
- **(위탁기관)** 위탁대상자가 타 기관 이관을 원하는 경우 위탁기관을 경유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이관 신청서(서식 39)를 고용센터에 제출
 - 고용센터로부터 이관 조치 통보를 받는대로 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이관을 받는 기관은 위탁대상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상담일정 등 협의
- **(고용센터)** 이관 요청서 접수 시 요청 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종전 위탁기관, 신규로 이관받을 기관 및 위탁대상자에게 이관을 통보(서식 40)
 - **(참여자가 배정당시 위탁기관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주소지 이전 시 한정적으로 이관 허용
 - **(고용센터의 배정 등 참여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참여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부실한 경우 등 위탁기관 변경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이관사유를 넓게 인정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이관 신청서 및 이관 통보서(서식 39, 40)

5. 취업지원 이관의 효과 및 후속조치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의 자격 유지 및 기존 IAP 상의 취업지원 지속
- * 다만, 2단계 서비스 중 ‘직업훈련’을 제외한 여타 프로그램은 당해 센터 관할 프로그램 일정 등을 감안한 조정 필요(IAP 변경 조치)

- 『진단·의욕증진·경로설정』 단계 참여 중 이관된 경우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 담당자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과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
 -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 담당자는 이관 전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서 진행된 제반사항 및 관련 정보를 감안하여 후속절차 진행
 - * 필요한 경우 이관 전 기관 담당자와 유선연락을 통해 참여대상자의 특성 등을 상세히 파악
- 『직업능력 증진』 단계 참여 중 이관된 경우
 - 이미 수립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내용을 가급적 유지하되, 세부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상담과정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변경
 - ※ 이관 전의 훈련과정이나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일 것임
 - IAP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취업활동계획의 주요 취업지원경로는 가급적 유지하면서 참여가능한 유관 프로그램을 확인·조치
 - 기존 IAP 상 취업지원경로에 따른 유관 프로그램 참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기존 취업지원경로 변경·추진
- 『집중 취업알선』 단계 참여 중 이관된 경우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상 취업알선 기간을 감안하여 집중 취업알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6. 행정사항

- 취업지원 종료·중단·유예·이관과 관련한 처리내용을 즉시 전산시스템에 입력
- 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사전(IAP 수립시·세부프로그램 참여시 등)에 기준을 안내하고, 중단 사유 해당 소지가 있는 경우 주의 조치 등을 통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V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부정수급 조치

1부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 운영

1. 참여자의 부정수급 유형

1.1. 부정수급의 개념

- 참여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사전단계 포함)한 경우 및 각종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자 한 행위

1.2. 부정수급 유형

-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로 취업 중인 자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취업중인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하고자 한 경우
- 1단계 참여 중 취업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실을 숨기고 IAP수립하여 참여수당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
- 사업장에 이미 채용이 확정(예정)된 자가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목적으로 또는 이에 동조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자 한 경우
- 참여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취업(퇴직)과 관련된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자 한 경우
-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훈련수강 시 대리출석 또는 허위출석부 작성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에 참여한 경우
-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에 참여한 경우 등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허위 기타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각종 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한 경우

2. 부정행위에 따른 조치

2.1. 부정수급액 환수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 환수

2.2 부정수급자의 재참여 제한

- 허위, 기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및 각종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자 한 경우 부정수급 처분일로부터 5년간 재참여 제한

2.3. 자진신고자의 처리

- 부정행위자가 조사 착수 전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이후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 부정행위를 모두 밝힌 경우
 - 부정수급 처분일로부터 재참여 제한기간을 3년으로 완화

2.4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

- 참여자에게 지급한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구직촉진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일을 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여 5년간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 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 수당지급일을 시효의 기산점으로 함

2.5 부정수급자 전산망 입력

- 참여자의 부정수급 조치결과는 처분일로부터 즉시 전산 입력

2.6 부정수급 규정 적용

- 동 부정수급 관련 규정은 '18년 부정수급 처분대상자 부터 적용됨(참여연도 불문)

2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운영 지침(개정예정)

- *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상반기 중 개정지침 별도 시행(개정 전까지는 현행 규정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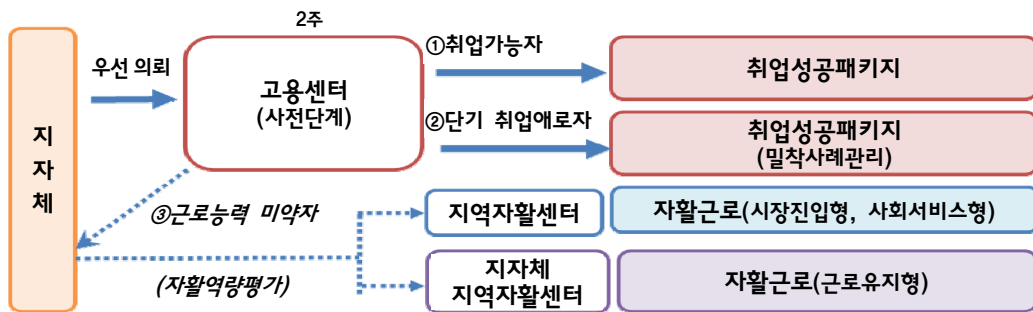


I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개요

1. 추진배경

-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위해서는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고용-복지 연계 체계 구축 필요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은 우선적으로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에 의뢰하여 일반노동시장 진입을 지원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 사업(사전단계) 흐름도〉



2. 실시 시기 및 지역

- '14.5월부터 전국 85개 고용센터 관할 지역 중 참여자 접근성이 높은 지역* 1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
- 고용복지+센터 설치 지역 중 사전단계 미실시 지역에도 '15.7월부터 사전단계 적용
- * 고용센터(출장센터 제외)가 설치된 전체 지역(광역시·도의 경우 관할 '구'를 모두 포함하고, 나머지 지역은 고용센터 소재 시·군에서 시행)

3. 단계별 운영 방안

- (자치단체) 조건부수급자 고용센터 우선 의뢰
- (우선 의뢰 대상) 자활사업 배치가 필요한 모든 조건부수급자(신규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사업 재배치가 필요한 기존 조건부수급자*) 고용센터 우선 의뢰 원칙

- * 취업성공패키지, 자활근로 등 자활사업 유형 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자활센터 내 재배치, 자활근로사업 유형 내 변경 등은 미해당)

< 조건부수급자 고용센터 우선 의뢰 원칙 >

- 자활사업 배치가 필요한 조건부수급자(신규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사업 재배치 필요한 기존 조건부수급자*)는 모두 고용센터로 우선 의뢰
 - * ‘취업성공패키지’, ‘자활근로’ 등 자활사업 유형 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자활센터 내 재배치, 자활근로사업 유형 내 변경 등은 미해당)
 - ** 조건부과제외자 및 조건제시유예자는 ‘고용센터 우선 의뢰’ 대상에서 제외
단, 조건부과제외 사유 및 조건제시 유예 사유가 해제된 시점에는 ‘고용센터 우선 의뢰’ 실시
- 개인·가구 여건 등 고용센터로 우선 의뢰하는 데 있어 예외사유 불인정

○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운영

- 사전단계를 2주(초기상담일 기준) 운영하여 참여자에게 초기상담, 심층상담 및 취업가능성 진단, 직업심리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후 취업준비도 평가 및 진단회의 등을 통해 3가지 유형으로 자활경로 설정
 - * 참여자의 기초 여건 진단, 취업준비도 평가 및 진단회의 등을 통해 고용센터 담당자(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와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의 협의 하에 자활경로 설정
- ▲ **(취업가능자)** 취업의욕 및 능력이 높아 즉시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바로 배치 → 1단계 2주 진행
- ▲ **(밀착 사례관리 대상자)** 취업가능성은 있으나 단기적으로 취업애로요인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밀착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1단계 특화 프로그램 6주 제공, 예외적 4주 연장가능
- ▲ **(자치단체 이관자)** 개인·가구여건 등으로 인한 취업애로요인이 단기적으로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자치단체로 이관
 - * 고용센터는 진단회의 후 지자체 재의뢰 시 재의뢰사유, 그간의 상담이력, 진단회의 결과 등을 함께 지자체로 송부
 - * 지자체는 재의뢰자를 대상으로 자활역량평가 등을 실시하여 자활근로 등 특화사업에 배치

Ⅱ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운영

1. 조건부수급자 고용센터 우선 의뢰

- (자치단체 기초 상담) 자치단체(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에서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및 취업성공패키지 안내
 - 조건부수급자 고용센터 의뢰 시 서비스 진행 내용, 사전단계 불참 시 제재사항, 사전단계 종료 후 자치단체로 이관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
 - *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는 조건부수급자 기초 상담 내용(개인·가구여건 파악, 그간 자활사업 참여 및 복지서비스 수혜 이력 등)을 고용센터 담당자(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와 공유
- (고용센터 우선 의뢰) 조건부수급자 기초 상담 후 고용센터 의뢰 실시
 - * 우선 의뢰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자활역량평가 불필요
 - ** 행복e음 시스템 상에는 자활역량평가란에 “0”점 처리
 -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는 가급적 고용센터 오리엔테이션 당일 수급자와 함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 고용센터 의뢰자 조건 이행 여부 처리 방안

(Q) 자치단체의 고용센터 의뢰일(전산의뢰)과 사전단계 오리엔테이션 참여일 간의 차이(gap)가 발생하는 경우 생계급여 처리 방법은?

* (예시) 4월 25일에 지자체에서 고용센터로 의뢰하였으나, 사전단계 오리엔테이션 참여가 5월 6일 이후로 늦어질 경우, 4월 생계급여 처리 방안

(A) 원칙적으로 사전단계 오리엔테이션 참석 여부를 기준으로 조건이행 여부 판단 후 생계급여 지급 처리

①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거나, 오리엔테이션 일자가 도래하지 않은 등 수급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 조건이행으로 처리

② 오리엔테이션에 불참하거나, 연락 두절로 오리엔테이션 일자를 정하지 못한 경우 ⇒ 조건불이행으로 처리

- 자치단체와 고용센터는 고용센터 의뢰자가 의뢰(전산의뢰) 이후 1주일 이내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고용센터는 오리엔테이션 참석 여부를 철저히 업무 전산망에 입력·관리

* 오리엔테이션 참여 시점마다 업무 전산망에 입력하되, 매월말(늦어도 익월 5일까지) 해당 월 참여자에 대한 일제 정리 필수

○ **(의뢰 취소)** 자치단체에서 고용센터로 우선 의뢰하였으나, 실제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거나 연락 두절된 경우 '의뢰취소'로 처리

- 고용센터는 2회 이상 사전단계 참석 요청 통보 후, 미참여자에 대해 자치단체로 '의뢰취소' 요청

* 취업성공패키지 업무 전산망 상 참여자 '보류'에 등재한 이후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에게 의뢰취소 요청자 정보 공유 필수

- 자치단체는 고용센터 '의뢰취소' 요청을 토대로 행복e음 전산에서 의뢰취소 처리

- 의뢰취소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는 의뢰한 것으로 보되, 실제 사전단계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참여자는 조건불이행으로 처리

* 자치단체는 '의뢰취소자'의 경우 자활사업 지침에도 불구하고 의뢰취소 결과에 따라 조건불이행 처리

2. 사전단계 세부 운영 지침

① 사전단계 운영 원칙

○ **(운영 기간)** 원칙적으로 초기상담일 이후 2주간 운영

- 초기상담일 이후 2주 내에 사전단계 참여자의 자활경로 설정 완료

* 사전단계 운영 기간 산정에 오리엔테이션일은 포함되지 않음



-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이후 「초기상담」, 「심층상담(2회차 상담) 및 취업가능성 진단」 필수

* 오리엔테이션 포함 최소 3회 서비스 제공 필수

① 「심층상담(2회차 상담) 및 취업가능성 진단」을 통해 1차 자활경로 설정

- i) 취업의욕과 역량이 높으며 조기에 일반노동시장 취업의사가 있는 자는 즉시 취업성공패키지로 배치
- ii) 참여자의 취업 준비를 위한 기초 여건 미비 등으로 근로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즉시 자치단체 이관

② 1차 자활경로 설정 자 이외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업심리검사 상담*(직업 선호도검사, S형) 또는 심층상담을 거쳐 최종상담 과정에서 취업준비도 평가 및 진단회의를 통한 최종 자활경로 설정

* 참여자의 개인·가구 여건 등에 따라 취업의욕 및 능력이 낮은 자를 대상으로 직업 선호도검사(S형)를 활용한 상담을 실시

- 사전단계 상담·서비스는 3~5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실시
- 고용센터 담당자(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는 사전단계 상담내용·서비스 제공 내역 등을 상세하게 입력하고,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와 사전단계 진행 상황 등 공유
- *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도 사전단계 참여자에 대한 기초상담 내용 및 서비스 진행 관련 의견 제시, 고용센터와 공유

② 자활경로 설정

- (1차 자활경로 설정) 심층상담(2회차 상담) 및 취업가능성 진단 결과에 따라 1차 자활경로 설정

① 취업의욕과 역량이 높으며 조기에 일반노동시장 취업 의사가 있는 자는 취업준비도 평가를 실시, 평가 점수를 참고하여 고용센터(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와 자치단체(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의 협의 하에 즉시 취업성공패키지로 배치 가능

■ 즉시 취업성공패키지 배치자 판단 기준

- 심층상담(2회차 상담) 이후 취업준비도 평가 점수가 총점 85점 이상인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취업성공패키지로 배치 가능

- ② 참여자의 취업 준비를 위한 기초 여건이 미비하여 근로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기초 여건 진단 평가를 실시, 평가 점수를 참고하여 고용센터 담당자(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와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의 협의 하에 즉시 자치단체 이관 가능

참고

기초 여건 진단 평가

- 심층상담(2회차 상담) 과정에서 참여자의 취업 준비를 위한 기초 여건 파악
- 기초 여건 진단표를 활용하여 참여자의 기초 여건을 진단하여, 평가점수가 18점 미만인 경우에는 심층상담(2회차 상담) 이후 즉시 자치단체 이관 가능

< 기초 여건 진단표 >

항 목	양 호	의 심	부 족
1. 수리능력	3	2	1
2. 인지능력	3	2	1
3. 대인관계	3	2	1
4. 의사소통·표현능력	3	2	1
5. 외모·위생	3	2	1
6. 문해력	3	2	1
7. 일상생활 능력	3	2	1
8. 사회생활 능력	3	2	1
9. 감정·정서표출	3	2	1

기초 여건 진단 평가 점수

점

- (최종 자활경로 설정) 1차 자활경로 설정자 이외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업심리 검사 상담(직업선택도검사, S형) 또는 심층상담을 거쳐 최종상담 과정에서 취업 준비도 평가 및 진단회의를 통해 최종 자활경로 설정

- (취업준비도 평가) 사전단계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면 최종 상담을 실시하면서 고용센터 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가 취업준비도 평가 실시

* 취업준비도 평가는 '구직욕구(45점)', '건강상태(30점)', '가구여건(25점)' 등 3가지 항목으로 평가

■ 취업준비도 평가 활용

- 사전단계 참여자의 자활경로 설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므로 아래의 기준을 적절히 활용
- 평가 점수 활용법
 - 평가결과 종합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취업가능자로 평가 가능
 - 평가결과 종합 점수가 35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밀착 사례 관리 서비스 대상자로 평가 가능
 - * 다만, ❶ 건강상태 항목 점수가 12점 이하인 경우 또는 ❷ 가구여건 항목 점수가 5점인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자치단체 이관자로 평가 가능
 - 평가 점수가 35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자치단체 이관자로 평가 가능

참고

취업준비도 평가 지표

① 구직욕구 : 45점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노는 것 보다 일하는 것이 낫다	1	2	3	4	5
2.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1	2	3	4	5
3.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도 일단 취업하는 것이 좋다	1	2	3	4	5
4.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1	2	3	4	5
5. 취업관련 행사나 채용박람회에 참석할 의사가 있다	1	2	3	4	5
6. 가정에 조금이라도 경제적 보탬이 된다면 취업하겠다	1	2	3	4	5
7. 대부분의 사람이 기피하는 일이라도 일단 취직하겠다	1	2	3	4	5
8. 제시된 임금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선 취업하겠다	1	2	3	4	5
9. 나는 일자리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취업하겠다	1	2	3	4	5

② 건강상태 : 30점

항 목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 근로능력이 있다	2	4	6	8	10
2. 나는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2	4	6	8	10
항 목	1주에 한번 이상	2주에 한번 정도	1개월에 한번 정도	3개월에 한번 정도	없음
3. 질병(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병원(약국) 방문횟수는?	2	4	6	8	10

③ 가구여건 : 25점

세부기준	평가점수
1. 취업애로요인이 없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25
2. 취업애로요인이 있으나 개선을 통하여 6개월 내 취업이 가능한 사람	15
3. 취업애로요인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	5
취업준비도 평가 점수 합계	점

■ 취업준비도 평가 시 유의 사항

- 취업준비도 평가는 자활사업 참여 경로 설정 및 취업성공패키지 프로파일링 기준 등에 활용되므로 가급적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 (구직욕구 항목) 전담자가 직접 참여자를 상담하면서 자연스럽게 실시하고 참여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
- (건강상태 항목) 참여자의 정신적 건강 평가 시 알콜(약물) 중독, 우울증, 심리불안, 감정 조절 장애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평가
 - * 필요시 기초 여건 진단 평가 도구 활용
- (가구여건 항목) 취업에 걸림돌이 되는 가구여건이 단기간(6개월)에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취업애로요인 개선 여부 판단
 - * 주요 취업애로요인 : 가구원의 질병 · 부상, 양육 · 부양 등으로 인하여 보육 ·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등

- **(진단회의 등을 통한 최종 자활경로 설정)** 취업준비도 평가 점수를 활용하여, 고용센터 담당자(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와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등이 진단회의를 통해 합의제로 최종 자활경로 설정

* 1차 자활경로 설정자 이외의 참여자에 대해서는 진단회의를 통해 최종 자활경로 설정

** 진단회의 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자활·복지담당 공무원도 참석

■ 진단 회의 절차

○ 개최 시기

- 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최소 1주(7일) 이상 경과한 이후로 하되, 2주(14일)를 초과하여 실시하지 않도록 함

○ 구성

- 고용센터소장(취업성공패키지과장)(위원장), 고용센터 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 자치단체 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으로 구성
- * 직제상 취업지원(취업성공패키지)과장이 없는 고용센터는 고용센터소장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

○ 평가

- 취업준비도 평가지, 참여기간 중 제공한 서비스 내용, 상담 내용, 취업애로요인 해소사항, 직업선호도검사 해석결과 등을 진단회의에 제출
- 고용센터 담당자(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 의견, 취업준비도 평가 점수 등을 종합하여 합의제로 최종 자활경로 설정

※ 고용복지+센터의 경우 센터내 사례관리협의체에서 대상자에 대한 자활경로설정이 이루어졌다면, 진단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같음

- **(최종 자활경로 설정 결과)** ❶ 취업가능자, ❷ 밀착사례관리 대상자, ❸ 자치단체 이관자의 3가지 유형으로 최종 자활경로 설정

⇒ ❶ **(취업가능자)** 취업의욕 및 능력이 높아 즉시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바로 배치

- * 사전단계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서비스가 중복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
-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의 서비스를 생계급여수급자가 사전단계에서 제공받은 경우에는 생략 가능

② (밀착 사례관리 대상자) 취업가능성은 있으나 단기적으로 취업애로요인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밀착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③ (자치단체 이관자) 개인·가구여건 등으로 인한 취업애로요인이 단기적으로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자치단체로 이관

* 자치단체 이관자 사유는 ①취업의사 없음, ②개인의 건강상 이유, ③가구여건, ④기타를 선택하여 입력하되, 사유가 중복으로 나타나는 경우 모두 선택하여 입력

- (결과 입력) 자활경로 설정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반영

* 종합의견란에 판정결과, 이관 사유, 필요한 서비스, 기타 의견 등을 상세하게 입력 (고용센터 담당자 및 자치단체 담당자 공동 기재)

** 자활경로 설정 결과 통보 시 판단에 활용된 자료(취업준비도 평가표, 서비스 제공내역 등) 및 그간의 상담이력 등을 자치단체와 공유

③ 사전단계 세부 프로그램 운영

③-1. 오리엔테이션

* 자치단체와 고용센터는 고용센터 의뢰자가 자치단체 의뢰(전산의뢰) 이후 1주일 이내 사전단계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

○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목적과 참여자 지원, 의무사항 등에 대해 설명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간 상호 성실 이행협약서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

* 상호 성실 이행협약서는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참여시 '내일을 위한 약속'과 같은 내용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연계자는 재작성 불필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도 재작성 불필요)

○ 향후 추진일정,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 내용 등 설명

③-2. '사전단계' 서비스 참여 통지

○ 오리엔테이션 당일 최초 상담일을 지정하여 통보

- 오리엔테이션 실시 당일 1차 상담일정 통보서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본인에게 직접 전달



- 최초 상담(초기상담)은 오리엔테이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실시
- 상담완료 후에는 다음 상담일을 정하고, 상담일정 통보서를 출력하여 본인에게 제공
- 지정된 일자에 상담 또는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참여촉구 통보서를 발송
- 통보서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등기(환수) 우편으로 발송하고, 아울러 대상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참여 안내

※ (문자 메시지 예시) 000님 고용센터의 11/15일 상담 불참에 따른 1차 통보서 발송
 - 11/30까지 상담(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 홍길동

- 1회차 불참시에는 자치단체에 유선으로 불참사실을 통보하고, 참여자 방문 또는 면담 실시 요청
- 참여자가 상담일시에 불출석한 경우 불출석 사실을 기록하여 참여태도를 지속적으로 관리(매 상담일에 불출석한 경우 기록)

③-3. 초기상담

- 초기상담(1회 30분 이상)을 통해 개인특성(특히 취업취약성)을 판단하고, 일을 통한 자립과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단
- 심리적 측면(자존감, 사회성, 의욕수준, 심리적 안정감 등)의 파악을 통해 의욕증진 필요사항 진단
- 생활 패턴(일상 생활시간 및 생활패턴, 언어 및 습관적 행동, 음주·가족생활 등)의 파악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 진단
- 취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주요 애로요소(양육, 부양, 치료, 주거 등)의 파악을 통해 개선 및 지원 필요사항 진단

3-4. 심층상담 및 취업가능성 진단

- 초기상담 이후, 2회차 심층상담(1회 60분 이상)을 통해 참여자의 취업 의욕·역량 및 취업준비를 위한 기초 여건 등을 중점 파악
 - 심층상담(2회차 상담)과정에서 참여자의 취업가능성을 진단하여 1차 자활경로 설정 가능
 - ① 취업의욕과 역량이 높으며 조기에 일반노동시장 취업의사가 있는 자는 즉시 취업성공패키지로 배치
 - ② 참여자의 취업 준비를 위한 기초 여건 미비 등으로 근로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 되는 자는 즉시 자치단체 이관
 - 2회차 심층상담 이후 필요한 경우 사전단계 기간 동안 추가 상담 가능(상담 횟수 및 시간 별도 제한 없음)

3-5.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상담

◆ 1차 자활경로 설정자 이외의 참여자 중 취업의욕 및 능력이 낮은 자를 대상으로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검사, S형)를 활용한 상담 실시

- 워크넷 직업선호도검사(S형)*를 실시하여 직업흥미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참여자의 취업의욕 및 동기 제고를 위한 상담 제공
 - * 직업선호도검사(S형)는 성인이 좋아하는 활동, 관심 있는 직업, 선호분야를 측정, 수검자의 흥미유형에 적합한 직업들을 제공(20분 소요)
 - ↳ 직업흥미 육각형의 모형이 크기가 매우 작게 진단된 경우 전반적으로 일에 대한 흥미와 구직의욕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며, 흥미육각형 모형의 모양이 일관도와 변별도가 높을수록 안정된 진로선택 및 직무적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 가능
 - 취업의욕 및 능력이 낮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어떤 업무환경에서 보다 잘 적응하고 강점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하는 방식으로 상담 진행

4 서비스 중단 및 참여 제한, 수당 지급

4-1. 중단

- 참여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사전단계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참여자에게 서면 통지 및 자치단체 이관
 - ① 참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거나 상담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 ② 형식적인 참여 등 취업할 가능성이 없고, 중단조치 할 수 있음을 통지한 후에도 개선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중단 처리하는 경우 자치단체에 통보됨과 아울러 중단 처리시 수급권 중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필히 안내
 - 자치단체는 고용센터에서 중단 처리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조건 불이행으로 보아 급여 중지 처리(근거자료는 고용센터 서비스 중단 통지로 같음)
- 중단 처리시에는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와 긴밀히 협의
 - * 중단 처리 시 자치단체에 중단 사실 통보와 함께 그 간의 서비스 제공 내역, 상담 이력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자치단체와 공유

4-2. 취업 종료

- 사전단계 참여 중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취업으로 종료 처리
- 취업으로 종료된 자는 취업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사전단계 재참여 제한. 단, 취업 후 1개월 이내 퇴사한 경우에는 재참여 허용

4-3. 참여제한

- 자치단체 이관자·중단자는 이관일·중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고용센터로 재의뢰 금지
 - 다만, 취업애로요인이 해소되어 자치단체(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에서 취업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센터(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와 협의 후 참여 조치 가능

4-4. 사전단계 참여수당 지급

- 사전단계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 관련기관에 출석한 날에 대해서는 교통비, 식비 등 실비 보상차원에서 1일 20,000원의 참여수당 지급
 - * 1일 2회의 상담 또는 서비스에 참여하더라도 2만원만 인정
 - * 사전단계 운영 기간과 실업급여 수급기간(대기기간 포함)이 중복되는 대상자의 경우 중복기간에 대해서는 사전단계 참여수당 부지급
-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출석한 날도 수당지급일수에 포함
-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한 자도 참여수당 지급
- 참여수당은 사전단계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에게 사전단계 서비스 종료 후 수당지급 신청서를 받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 중도탈락자는 사전단계 참여수당 부지급

4-5. 취업성공수당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조건부수급자의 탈수급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 사전단계 초기상담일 이후 취업에 성공하거나, 조건부수급자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참여 중 IAP수립일 이전에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 지급(지급요건 충족시)

5 사업 운영 모니터링 지속 실시

- (고용부·복지부) 매월 고용센터 의뢰 현황(조건부수급자 규모 대비 의뢰율 현황 등) 및 지자체 재의뢰 현황, 취업성공패키지 및 지자체 자활사업 참여 실적 등을 토대로 정기 점검회의 개최
 - * 필요시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고용센터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애로사항 개선 지속
 - (지자체) 개별 수급자에 대해 고용센터 의뢰현황, 기존 자활사업 참여 유형, 지자체 재의뢰 현황 등을 별도 관리
- ⇒ 지자체는 매월 5일까지 전월 추진실적을 정리하여 복지부 보고, 복지부는 고용부와 추진실적 공유·공동 관리

- (고용센터) 사전단계 참여자에 대한 상담 이력 등 사전단계 진행 현황을 해당 지자체와 공유, 취업성공패키지 연계자에 대한 집중 취업지원 실시

3. 자립지원직업상담사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① 추진배경

- 고용센터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취업취약계층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등 적극적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 받기 어려운 상황
- 사전단계 미 실시 지역 중 고용센터 접근성이 낮은 일부 지역에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가 직접 취업성공패키지를 운영, 완결된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강화

② 운영 지역 : 9개 시·군(사전단계 미 실시 지역 중 자립상담사 배치지역)

- 강원권(철원군), 경남권(합천군), 경북권(청도군), 전북권(임실군), 충남권(계룡시,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 충북권(영동군)
- ※ 수요파악을 통해 자립지원직업상담사의 취업성공패키지 직접 운영지역 확대 추진(3월 중 실시 예정)

③ 세부 운영방안

- ❖ 취업성공패키지 주요 서비스 제공은 자립지원 직업상담사가 우선 전담
 - * 전담 업무량을 감안, 고유업무(자활역량평가 및 자활경로 설정 등) 조정
- ❖ 수당 지급, 내일배움카드 발급 등 행정업무는 고용센터에서 지원

- (대상자 발굴) 생계급여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 등 취업대상자 발굴 및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 제공
 - * 취업성공패키지 II 대상자는 관할 고용센터로 연계
- (자립지원 상담사) 생계급여수급자 등 해당 참여자의 신청서 접수(관할 고용센터로 Fax 등으로 송부), 구직표 전산등록, 일정안내 등

- (고용센터 담당자) 신청서 접수 → 전산 등록 후 배정

○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주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1단계: 상담) 초기상담, 직업심리 검사, IAP 수립 등 1단계 서비스 전담 제공 및 취업애로요인 제거를 위한 지역 사회복지 자원 연계 진행

* (고용센터 담당자) 서비스 진행 상황 관리, 단계별 상담도구 등 운영 노하우 공유(직업 심리검사 결과 접수 및 해석 등), 집단 상담 등 전문서비스 지원, 취업수당 지급

- (2단계: 훈련) 기초 훈련 상담, 고용센터 직업훈련과 연계 및 자치 단체 실시 훈련 · 지역일자리 인턴 등 지자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 지원

* (고용센터 담당자) 직업훈련 적정성 판단 및 내일배움카드 발급 훈련 안내 및 카드 발급, 훈련 성실참여에 대한 월별 과정 관리(유선 및 출석상담) 등

- (3단계: 취업알선) 지역일자리지원센터 등과 협업을 통한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 (고용센터 담당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와 협업하여 알선 및 사후관리, 고용센터 만남의 날 등 정보 제공, 취업성공수당 지급 등

〈 단계별·담당자별 세부 내용 〉

구분	근무지원 시·군(자립지원직업상담사)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
1단계 상담	-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IAP 수립 등 1단계 서비스 제공 - 취업애로요인 제거를 위한 지역 사회복지 자원 연계 중심	1단계 서비스 진행 상황 관리 - 집단상담 등 전문서비스 지원
2단계 훈련	- 기초적인 훈련 상담은 자치단체에서 수행 후, 고용센터 연계 - 자치단체 훈련 및 지역일자리 인턴 등 지원	-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와 협의하여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 적정성 판단 - 내일배움카드 발급 훈련 실시
3단계 알선	워크넷 및 지역일자리지원센터등과 연계한 취업알선(동행 면접 지원) 및 사후관리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와 협업하여 알선 및 사후관리 지원

○ 기타사항

- 자활대상자 불이행 통보 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여 중단처리 절차 준수 및 지자체에 불이행 관련 문서 통보는 고용센터에서 수행

- 세부 전산 활용방법 등을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시 자체 교육 실시

- 시군구별 조건부 수급자 수 등을 감안하여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취업성공패키지 세부 운영 방안 조정 가능

- 기타 기본적인 내용은 취업성공패키지 운영매뉴얼 준용



참고 1 취업패 사전단계 실시지역 및 자립상담사 취업패 운영 지역

지역	고용센터	사전단계 실시 지역
서울	서울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	서초구
	서울강남	강남구
	서울동부	송파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서울서부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남부	영등포구, 양천구
	서울강서	강서구
	서울북부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서울관악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인천	인천	남동구,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인천북부	계양구, 부평구
	인천서부	서구
경기	부천	부천시
	김포	김포시
	의정부	의정부시
	구리	구리시
	남양주	남양주시
	동두천	동두천시
	고양	고양시
	파주	파주시
	수원	수원시
	용인	용인시
	화성	화성시
	성남	성남시
	경기광주	광주시
	이천	이천시
	안양	안양시
	광명	광명시
	안산	안산시
	시흥	시흥시
	평택	평택시
	오산	오산시

지역	고용센터	사전단계 실시 지역
강원	춘천	춘천시
	강릉	강릉시
	속초	속초시
	원주	원주시
	태백	태백시
	삼척	삼척시
	영월	영월군
부산	부산	부산진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사하구, 영도구, 연제구
	부산동부	수영구,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부산북부	북구, 사상구, 강서구
경남 울산	창원	창원시
	마산	창원시 (구.마산시)
	울산	남구, 중구, 북구, 동구, 울주군
	김해	김해시
	밀양출장	밀양시
	양산	양산시
	진주	진주시
	통영	통영시
	거제	거제시
대구 경북	대구	수성구, 중구
	대구강북	북구
	대구동부	동구
	경산	경산시
	대구서부	서구, 달서구, 남구
	대구달성	달성군
	칠곡	칠곡군
	포항	포항시
	경주	경주시
	구미	구미시
	김천	김천시
	영주	영주시
	문경	문경시
	안동	안동시



지역	고용센터	사전단계 실시 지역
광주 전북 전남	광주	북구, 동구, 서구, 남구
	광주광산	광산구
	전주	전주시
	정읍	정읍시
	남원	남원시 (17년)
	익산	익산시
	김제	김제시
	군산	군산시
	목포	목포시, 무안군
	해남	해남군
	순천	순천시
	여수	여수시
대전 충북 충남	대전	서구,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
	공주	공주시
	세종	세종시 (17년)
	청주	청주시 (구.청원군 포함)
	천안	천안시
	충주	충주시
	제천	제천시
	음성	음성군
	보령	보령시
	서산	서산시
	87개 고용센터	134개 시군구

참고2 (보건복지부) 자활근로 참여기간 제한기준 통보

1. (공통) 원칙적으로 최대 36개월, 자활근로 유형 변경 시 최대 60개월 참여 가능

<유형변경 산정 방법>

- ◆ 유형변경은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상호 간 유형이 변경된** 다음의 경우를 의미함
 - 사회서비스형인 A 사업단에서 시장진입형인 B사업단으로 이동한 경우 (반대의 경우에도 가능)
 - 동일한 사업단(A)에 참여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단(A)이 매출액 증대로 사회서비스형에서 시장진입형으로 변경된 경우 (반대의 경우에도 가능)
 - 사회서비스형, 또는 시장진입형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다가 인턴도우미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반대의 경우에도 가능)
- ◆ **인턴도우미 형 간의 이동은 유형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인턴형, 복지도우미, 자활도우미, 사회복지시설도우미 상호 간 이동은 인턴도우미 형 내에서의 변경이므로 유형변경이 아님

2. (공통)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최대 참여기간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통장 가입기간 만료 시까지 자활근로 참여 가능

- 다만, 최대 참여기간 종료 후 통장 가입기간 미도래로 지속 참여하는 경우에도 통장 종료해지 하는 경우 자활근로 참여 종료

<통장 가입자의 자활근로 참여기간 산정 예시>

- ◆ A씨는 '15.12.31일자로 자활근로 참여기간이 만료되지만, '13.10월부터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하여 성실하게 적립하고 있음. 이 경우 A씨는 '16.10월까지 통장유지와 함께 자활근로 참여 가능하며, 통장 만료기간이 도래함과 동시에 자활근로 종료됨
- ◆ B씨는 '15.12.31일자로 자활근로 참여기간이 만료되지만, 내일키움통장 만료기간이 2년이 남아 '16년에도 자활근로 참여. 그러나 '16년 자활근로 참여도중 개인사정으로 통장 해지. 이 경우 B씨는 자활근로 참여 종료하게 됨

3.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사업 실시지역

- 조건부 수급자
 - 내일키움통장 미가입자, 가입하였으나 기간 만료된 자는 참여만료기간 도래 시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의무 참여

- 취성패 사전단계 탈락, 취성패 과정 진행 중 중도 탈락, 취성패 과정 이수 후 미취업으로 인해 **지자체로 재의뢰되어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자활근로 참여 기간 재산정**
- 자활근로 참여기간 종료로 취성패 사전단계로 의뢰하게 되는 경우, **각 지역 고용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대상자 의뢰**
- * 참여기간 종료된 경우 고용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유예 가능하며, 유예 기간 동안에는 자활근로 참여 가능

○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 참여자

- 내일키움통장 미가입자, 가입하였으나 기간 만료된 자는 **참여만료기간 도래 시 자활근로 참여 종료**
- 이 경우 최대한 취업성공패키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 자활근로 참여 종료 후 1년 후에도 미취업 상태인 경우 자활근로 재참여 가능

4.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사업 미실시지역

○ 조건부 수급자

- 내일키움통장 미가입자, 가입하였으나 기간 만료된 자는 **참여만료기간 도래 시 자활역량평가 재 실시**
- 자활역량평가 점수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자활근로 재배치

○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 참여자

- 내일키움통장 미가입자, 가입하였으나 기간 만료된 자는 **참여만료기간 도래 시 자활근로 참여 종료**
- 이 경우 최대한 취업성공패키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 자활근로 참여 종료 후 1년 후에도 미취업 상태인 경우 자활근로 재참여 가능

5.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다변화 시범사업 수행기관(7개소)

- '15년부터 시작된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다변화 시범사업 수행기관의 경우 '15년 1월부터 참여한 것으로 기산하여 참여기간 관리
- (유형 다변화) 남원, 마산희망, 봉화, 시흥작은자리,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 (기능 다변화) 인천 부평구(부평남부, 부평지역자활센터)

III

생계급여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 ◆ 취업가능자는 일반 저소득층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 ◆ 취업가능성은 있으나 단기적으로 취업애로요인 해소가 필요한 자 등은 **밀착 사례 관리 특화 프로그램** 지원

1 생계급여수급자 전담반 운영

- 생계급여수급자 밀착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센터 담당자 1인당 연간 관리인원 상한을 100명(신규참여자 기준)으로 제한
- 사전단계 담당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본단계까지 전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담의 효율성 및 수용성 제고

2 생계급여수급자 밀착 사례관리 대상자 특화 서비스 제공

<1> 운 영

- 수급자 1인에 대해 고용센터 전담자와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직업상담사)가 **2인 1조로 서비스 제공**(총괄담당은 고용센터)
 - 수급자 고용센터 의뢰 → 사전단계 → 본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
 - ▲고용분야 서비스는 고용센터 상담원이 제공,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발굴 및 연계 등 취업애로요인 제거를 위한 서비스는 자치단체 담당자와 역할분담
 - * 자립지원 직업상담사가 시군구 사회복지서비스, 자치단체 내 사례조정회의 및 희망복지 지원단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연계하고 필요시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 참여자가 취성패 진행 중 단기적 취업애로요인이 발생한 경우, 사전단계를 거치지 않고 밀착사례관리 대상자 분류하여 특화 프로그램 제공 가능

<2> 단계별 서비스

□ 1단계 : 고용·복지 욕구 파악을 통한 취업지원계획 수립

- (운영원칙) 1단계는 개인의 취업애로요인 및 복지욕구 파악을 토대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 개인에 대한 진단이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단기문제해결상담, 롤모델 상담 등 다양한 상담기법을 활용하여 심층상담 실시
 -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연계 강화
- (운영기간) 최소 6주 ~ 최장 10주까지 운영가능
 - 주 1회 이상 대면상담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취업애로요인 및 복지욕구 파악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개인·가구여건 등 애로요인 해소를 위해 1단계 중 참여 유예 가능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 애로요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사례관리 회의 (고용센터+자치단체)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 등이 포함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
 - * 그간 생계급여수급자의 자활 참여 이력 및 복지서비스 이용 경로를 파악하여 복합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공공 및 민간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방안 마련
- (상담내역 기록) 자립지원직업상담사도 전 단계에 걸쳐 참여자와의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내역에 대해 철저히 전산 입력
- (1단계 참여수당) 초기상담일로부터 4주 단위로 지급하며, 마지막 회차는 IAP를 수립한 자에 한해 지급
 - 최초 1회 지급분에 대해서는 기본 지급액 15만원 + 프로그램 수료여부*에 따라 추가 지급
 - *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취업특강 2회 5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10만원
 - 최초 1회 지급 후에는 교통비·식비 등 실비 보상차원에서 1일 20,000원을 지급하고 프로그램 수료여부*에 따라 추가 지급
 - *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및 취업특강 2회 5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10만원

□ 2단계 : 직업능력개발 및 직장적응력 증진

- 내일배움카드 등 훈련이 필요할 경우 우선 지원하고, 고용노동부 훈련 뿐 아니라 자치단체 및 타부처 훈련 등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
- 직장적응력 증진을 위한 청·장년 인턴 연계 활성화

□ 3단계 : 집중 취업알선

- 밀착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동행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취업알선시 고용촉진 지원금 제도 등을 적극 활용
- 취업알선 단계까지 성실하게 참여하였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취업알선 기간을 추가 최장 3개월 연장 지원 가능
 - * 취업알선 기간 중 연락두절 등 불성실 참여자에 대해서는 중단 조치

<3>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지청(센터)별로 지역 내 사회서비스 사업 제공 기관과 MOU 체결 등 고용-복지네트워크 구축 강화
 - * 종교단체, 기타 협회, 각종 사회공헌, 개인기부 등 민간자원 탐색 및 연계 활성화
- 지역일자리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구인 발굴 및 지역 내 틈새일자리 발굴을 위한 일자리 네트워크 활용

◆ 복지 네트워크 예시(부산시)

- (건강) 건강가정지원센터, 알콜상담센터, 정신건강센터, 부산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 (의료) 이랜드 복지재단, 부산의료원, 병원 사회복지시설
- (아동 양육·학습) 각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드림스타트 센터
- (청소년 자녀지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방송통신고 등
- (신용회복 관련) 광역자활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 (가사, 생계지원) 희망복지지원단, 푸드마켓, 자원봉사센터 등

참고

2인1조 밀착관리 서비스 가이드

	고용센터(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	자치단체 담당자 (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직업상담사)
고용센터 의뢰	- 고용센터 우선 의뢰자 기초상담 자료 공유 - 우선의뢰 예외자 사유 및 현황 공동 관리	- 생계급여수급자 초기상담(개인·가구여건 파악 / 자활사업 참여 이력 / 복지서비스 수혜 등) - 취업가능자 및 애로요인자 등 고용센터 우선 의뢰
	- 고용센터 OT 참여 공동연락 체계 → OT 불참자, 연락두절자 등 공동 관리 (고용센터) OT불참자 참여 통지 → (자치단체) 불성실 참여자 조건 불이행 및 급여중지 조치	
사전단계	- 초기상담 : 자치단체 초기상담자료 활용 - 심층상담 통해 취업가능자 및 자치단체 조기 이관자 일차적 판단 - 직업심리-선호도 검사 실시 - 복지서비스 연계 방안 마련 및 서비스 의뢰 현황 등 공유 - 생활문제 파악 및 취업가능성 진단	- 고용센터 상담내용 공유 및 일차적 판단 의견 제시 - 참여자 애로요인별 복지서비스 연계 방안 마련 - 이행특례 등 자립지원 제도 안내(영상) - 자치단체 사례조정회의 및 희망복지지원단 연계 및 지속 관리
	2주내 1) 취업가능자 / 2) 밀착사례관리 대상자 / 3) 근로미약자(자치단체 이관) 구분 - 고용센터 전담자 및 자립지원직업상담사 등 협의 판정에 기초하여 결정	
패키지 <1단계>	- 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EAP연계 등 서비스 제공 - 취업애로요인 진단(개인 및 가구진단)	- 복지요구 진단 및 설계 -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복지 자원 연계 (희망복지지원단 등 연계 협업) -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제공
	- 주1회 이상 대면상담(센터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필수 제공 - 애로요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사례관리 회의(센터 전담자 +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 + EAP 상담사) 및 IAP 수립	
<2단계>	- 카드발급 / 훈련참여 - 월 1회 이상 대면상담 필수 - 취업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패키지 참여 유예 적용 - 애로요인 해소 관련 자치단체 연계 - 민간사회복지자원서비스 발굴 및 연계	- 자치단체 및 민간 훈련 발굴·협업 - 고용센터 대면상담 지원 (필요시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 패키지 진행 중 지자체 복지서비스 연계자 및 참여 유예자 관리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적극 연계
<3단계>	- 생계급여수급자 알선강화(동행면접 원칙) - 구직기술 및 이력서 컨설팅 - 구인발굴 - 모의면접 - 지역내 틈새일자리 발굴을 위한 일자리 네트워크 운영 - 탈수급 현황 관리 확인	- 지역일자리센터 연계한 알선 적극 지원 - 필요시 생계급여수급자 직접 알선 지원 - 구인발굴 - 중단자 등 불성실 참여자 제재 확행 (조건 불이행 및 급여 중지 조치) - 고용복지연계 업무 내역 고용센터 보고 - 탈수급 현황 관리 및 자립지원제도 안내

3부

민간위탁사업 운영



I

민간위탁사업 운영방향

【 기 본 방 향 】

- ◆ 패키지 I 은 고용센터 전담, 패키지 II는 전량 민간위탁 원칙
- ◆ 민간위탁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경쟁 및 성과지향형 위탁기관 운영
- ◆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의 처우개선 등을 통한 취업지원의 질 제고

1. 개 요

- (위탁 내용) 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청년·중장년) 참여자에 대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에서 정하는 단계별 종합적인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 * '17년까지 위탁사업자의 위탁내용에 포함된 '청년 내일채움공제 운영'은 별도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예정(기 참여 중인 기관은 해당 참여자의 지원기간 종료시까지 서비스 제공)
- (목표 인원) 청년 160,000명, 중장년층 30,000명
- (위탁 기간) 2018년 2월 1일 ~ 2019년 1월 31일(1년 계약)

2. 주요내용

2.1. (위탁사업비) '기본금'과 '성공금(인센티브)'으로 구성

- (기본금) IAP 수립시 1회차 기본금 30만원, 초기 상담일 이후 6개월 경과한 시점에도 참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6개월 시점에서 2회차 기본금 나머지 10만원 지급(총 40만원 한도)

◇ **훈련기관 겸업기관 및 대학내 사무소 위탁비 기본금 하향조정**

① 직업훈련 겸업기관: 3단계(취업알선) 중 중복되는 비중(1/3수준)을 고려하여 **40만원 → 25만원***으로 조정

② 대학내 사무소((구)대학내 분사무소): 시설비·사업운영비 절감 가능성을 고려하여 **40만원 → 30만원**으로 조정

※ 분할지급 관련 세부 내용은 별도 시달

- (취업인센티브) 참여자가 더 나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초기상담 이후 **조기 취업의 정도와 취업한 일자리의 임금수준, 참여자의 취업역량**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급

〈'18년 위탁사업비 지급체계 개편〉

2017년						2018년					
						○ 취업역량평가(A, B 등급-취업역량 낮음)					
구 분	기본금	임금 연동 인센티브				구 분	기본금	임금 연동 인센티브			
		~140 미만	~180 미만	~230 미만	230 이상~			~165 미만	~200 미만	~230 미만	230 이상~
6월미만 취업	30	60	80	100	150	6월미만 취업	30	70	90	110	160
12월이내 취업	40	40	60	80	130	12월이내 취업	40	50	70	90	140
15월이내 취업	40	20	40	60	100	15월이내 취업	40	30	50	70	100
* 3개월 이상 근속시 인센티브 지급						* 3개월 이상 근속시 인센티브 지급					
						○ 취업역량평가(C, D 등급-취업역량 높음)					
구 분	기본금	임금 연동 인센티브				구 분	기본금	임금 연동 인센티브			
		~165 미만	~200 미만	~230 미만	230 이상~			~165 미만	~200 미만	~230 미만	230 이상~
6월미만 취업	30	50	70	90	140	6월미만 취업	30	50	70	90	140
12월이내 취업	40	30	50	70	120	12월이내 취업	40	30	50	70	120
15월이내 취업	40	10	30	50	100	15월이내 취업	40	10	30	50	100
* 3개월 이상 근속시 인센티브 지급						* 3개월 이상 근속시 인센티브 지급					
						○ 적용시점: '18년도 취업인센티브 지급 대상자 부터 변경된 임금수준 적용					

2.2. 위탁사업자의 사무소 개설 관련

- (사무소 형태 일원화) 주·분사무소 구분 없이 기존 주사무소의 인적·물적 요건과 동일하게 일원화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사무소'로 운영

* 분사무소 폐지에 따라서 종래 '협업형 위탁사업자' 제도는 폐지

** 분사무소 폐지에 따라서 '17년도 분사무소로 운영된 기관을 '18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사무소'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로 선정된 후 (구)분사무소의 주소지 소재 관할 고용센터 약정체결하고 모든 위탁사업 관련 행정업무의 지도감독을 받음

- 일원화에 따른 예외규정 및 유예기간

- (구)대학 내 분사무소는 대학공간의 특수성을 감안, 시설요건의 일부 완화*,

* 전용공간 15㎡ 현행유지, 단체프로그램운용 공간과 구직정보탐색공간은 대학 내 시설 활용가능성 여부로 판단

- 위탁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격오지)은 관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 별도 상담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 정기 출장상담 진행

- '17년도 분사무소로 운영된 기관이 '18년도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년간 ('19.1.31.까지) '18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시설·인적요건 등 유예

* '17년도 위탁사업자로 선정 당시 허가받은 시설요건 및 업무담당자를 '18년도 사업시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만 유예규정이 적용(신규 시설로 사업장 이전, '17년에 근무하지 않은 신규자 채용시는 '18년도 신설된 시설·인적요건 적용)

2.3. 공모대상 지역 및 선정기관 수

- '17년도 위탁기관 평가결과, 지청별 위탁목표인원 및 위탁기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노동지청 단위로 선정

* '18년부터 주·분사무소 사무소 운영 일원화에 따라서 지방 고용노동지청별로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1개 이상의 사무소 신청 가능

Ⅱ 민간위탁기관의 선정 및 관리

1. 위탁기관 선정

1.1. 자격 요건

- 공모 신청일 현재 위탁사업을 희망하는 고용노동지청 관할 지역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아래 해당자

①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②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기관(사업자)은 제외

① 사업 신청을 한 사업체의 대표(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ii)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고용센터에서 결격사유 등을 확인

②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관련 위탁사업에 참여했던 기관(사업자)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i) '17.12.31. 이전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에 참여하여 위탁약정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사업자)

ii) '17.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 참여기관(사업자)으로서 민간위탁 기관의 약정해지 요청에 의해 약정해지 되어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사업자)

iii) '17년도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평가결과에 따라서, 당연 약정해지 및 1년간 참여제한이 통보된 기관(사업자)

1.2. 시설 요건

○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시설요건을 구비

* '18년도 공모 신청시 '17년 분사무소는 기존 시설요건('17년도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공고시 공표된 요건)으로 참여 가능

- **일반사무소:** '취업지원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공간, 단체 프로그램 운용 공간, 온라인 구인정보 탐색 관련 시설 등 구비

구 분	상담 공간	단체프로그램 운용 공간	구직정보 탐색 공간
면 적	6.6평방미터 이상 (약 2평 이상)	16.5평방미터 이상 (약 5평 이상)	10평방미터 이상 (약 3평 이상)
구조 및 시설	· 오픈되지 않은 공간 · 독립된 별도 공간	· 단체 프로그램 운용 위한 기본 시설* 구비 * 테이블, 의자, 마이크시설 등	· 오픈된 공간 가능 ·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3대 이상 구비
비 고	전용공간 내지 전용시설일 것을 요하지는 않음		

- (구)대학내 분사무소는 대학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설요건의 일부 완화***, **격오지****는 관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 별도 상담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 정기 출장상담 진행

* 전용공간 15㎡ 현행유지, 단체프로그램운용 공간과 구직정보탐색공간은 대학 내 시설 활용가능성 여부로 판단

↳ 다만, 대학내사무소의 안정적 알선기능 지원을 위해 동 대학내사무소가 개설예정인 관할 고용노동지청 내에 동일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증)의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의 무료·유료직업소개소 등 관련 요건 구비)이 있어야 함

** 격오지: 위탁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행정구역상 시·군 지역과 도서 지역을 의미

- '17년도 분사무소로 운영된 기관이 '18년도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년간 ('19.1.31.까지) '18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시설·인적요건 등 유예

- * '17년도 위탁사업자로 선정 당시 허가받은 시설요건(주·분사무소 모두) 및 업무담당자를 '18년도 사업시 **실질적으로 유지·승계**하는 경우만 유예규정이 적용(사업장 이전 등 신규 시설 활용, '17년에 근무하지 않은 신규자 채용시 '18년도 신설된 시설·인적요건 적용)

↳ 실질적 유지·승계: 기존 사업장의 물리적 공간 및 업무담당자를 유지하는 등 당해 기관의 실질적 소유주가 동일한 가운데 법인 변경 등으로 사업장 명칭 등이 기존과 달라지지만 취업성공패키지 운영을 위해 기 발급받은 워크넷 기관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 격오지의 출장상담 진행

- * 위탁기관에서는 출장상담 장소, 출장주기(요일 및 시간 등), 출장상담자 등을 포함한 출장상담 진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위탁기관에 출장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위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출장상담 진행계획 제출 필요)
- * 출장상담 진행시에는 기관코드를 별도로 부여할 수 없고, 상담 후 사무소에 복귀하여 관련 상담내역 등을 입력해야 함(이때, 상담일시 등록은 익일까지 가능)

1.3. 인적 요건

- 민간위탁 사업자는 담당자 2명(1일 8시간 근로자 기준) 이상을 지정·운용
 - * '업무담당자'는 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직업훈련 등 2단계프로그램 연계, 취업알선, 동행면접, 사후관리 등 취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 타 사업 겸직불가
- (자격 및 경력)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삭제
7.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 (담당자 수) 업무담당자 1인당 참여자 수가 12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담자를 지정·운영

- (고용형태) 업무담당자는 당해 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시간제 근로 포함)로서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 경과규정: '17년도 운영기관은 '17년도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시의 업무전담자 및 지원자 요건으로 참여 가능

1.4. 취업지원프로그램 요건

- 위탁대상자의 자존감 향상, 구직의욕 증진 등을 위한 개별 상담 및 집단프로그램 운영능력 구비

1.5. 위탁기관의 소재지 변경

- 위탁사업 운영기간 중 위탁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가 속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지역 내에서 소재지 변경 가능
- 위탁기관은 소재지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약정체결 된 고용센터 및 동일 지청 내 이전 예정 지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이전계획 및 참여자 관리문제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협의 필요
- 위탁기관은 이전장소가 확정된 경우 시설요건 등을 완비한 후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소재지 변경 통보
- 소재지 변경신고를 받은 고용센터는 소재지 변경신고 내용에 따라 시설 요건 등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실사 후 요건충족시 이전승인 통보

2. 위탁기관 관리

2.1. 고용센터 역할

- 민간위탁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고용센터의 Gateway 기능 강화
 - ① 참여자 배정 : 자격요건 확인, 향후 프로세스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 후 위탁기관 배정
 - * 내일배움카드제는 당연히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훈련 필요성, 훈련시 취업가능성 제고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발급여부 결정
 - ② **수요자 선택형 민간위탁** : 수요자가 민간위탁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의 성과 및 정보* 제공 → **성과 중심형 민간위탁**
 - * 기관 위치, 전년도 참여자 수 및 취업률, '17년도 기관평가 결과 등
 - ③ **훈련심사** : 민간위탁기관의 취업역량평가 결과, IAP 내용 검토 및 훈련의 필요성 등 적절성 검토

2.2. 위탁기관의 사업추진

- 위탁기관의 단계별 필수서비스 제공내용은 2018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제2부(취업성공패키지 세부 운영)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되, 그 이외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
- 위탁기관은 2018년도 위탁약정서,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기타 사업지침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기타 위탁기관 공모시 제출한 자체 사업계획서에 따라 내실 있는 사업운영을 위해 노력

2.3. 추진상황 모니터링

- (참여자 관리) 위탁기관(사업자)은 참여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참여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서비스 제공
 - 본부 및 고용센터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위탁대상자별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상황 및 적정성 등 확인
 - 고용센터는 성과관리시스템(<http://espms.work.go.kr/>)을 통해 위탁기관별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위탁기관에 통보
 - 고용센터는 위탁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 등 징구 지양

2.4. 위탁약정 해지

- 위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위탁약정'을 해지
 - ①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② 위탁기관(사업자)의 사업체 폐업 등으로 더 이상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관할 지역 내 타 위탁기관에 비해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업추진 의지 및 역량이 떨어져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 개선계획서, 소명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 후 처리
- ④ 위탁기관이 위탁약정 해지를 요청해 온 경우
- ⑤ 참여자 모집광고가 허위 또는 부정정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 ⑥ 위탁수수료의 횡령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 ⑦ 최근 2년간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 ⑧ 참여자 모집과정에서 인센티브, 학교발전기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참여자 모집과 관련한 위탁기관과 협업기관(참여자 포함)간 금품거래 행위가 확인된 경우
- ⑨ 기타 위탁약정서의 약정해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위탁기관 점검 조치결과 처분 기준에 따라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위탁약정 해지 시, 위탁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던 참여 대상자는 관할 고용센터의 관할구역에 있는 인근 위탁기관에 이관하여 취업지원 계속 제공
 - 관할 고용센터 내에 다른 위탁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광역단위 위탁기관 중 인근 기관으로 이관

3. 취업성공패키지 별칭, 로고, 간판 등 사용

- 취업성공패키지 별칭 및 로고를 홍보물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하고, 특히 외부에서 식별 가능한 간판으로 제작하여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설치, 기본금 사용 가능
- 간판설치 기준
 - BI 적용 사인 디자인 A(출입문 표찰): 주 출입문에 필수 설치
 - BI 적용 사인 디자인 B·C(건물 외부 간판): 건물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게 설치 하되 B와 C를 같이 설치하거나 B 또는 C 중 택일
- 취업성공패키지 BI 디자인(색깔 및 비례 준수, 재질은 자율)

취업성공패키지 BI _ 기본형(가로조합)

취업성공패키지
취업 J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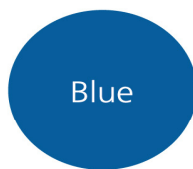
취업성공패키지 BI _ 기본형(세로조합)

취업성공패키지
취업 J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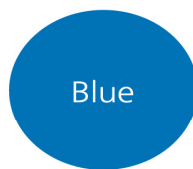
취업성공패키지 BI _ 컬러 가이드라인



Main Colors



Pantone 2935 C
CMYK C90 M50 K20
RGB R0 G94 B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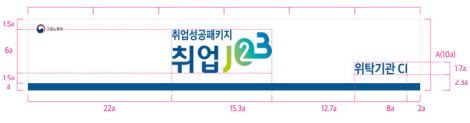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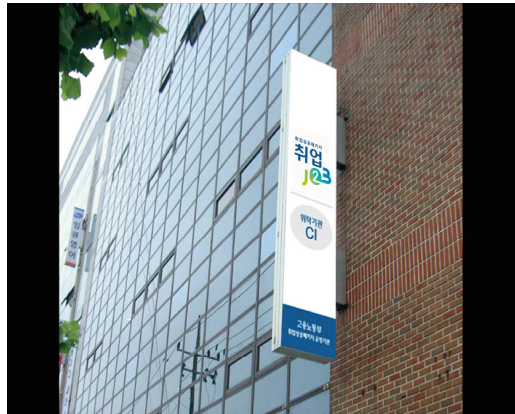
Pantone 3005 U
CMYK C100 M35 K9
RGB R0 G115 B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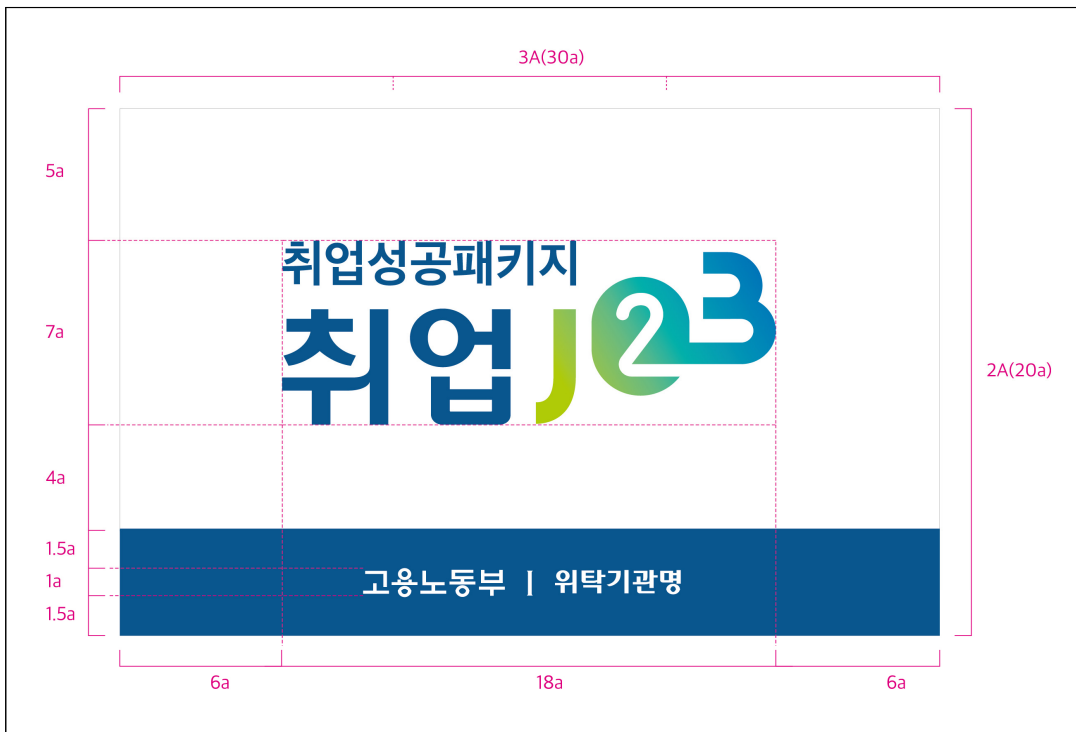
Pantone 3255 U
CMYK C75 Y40
RGB R0 G177 B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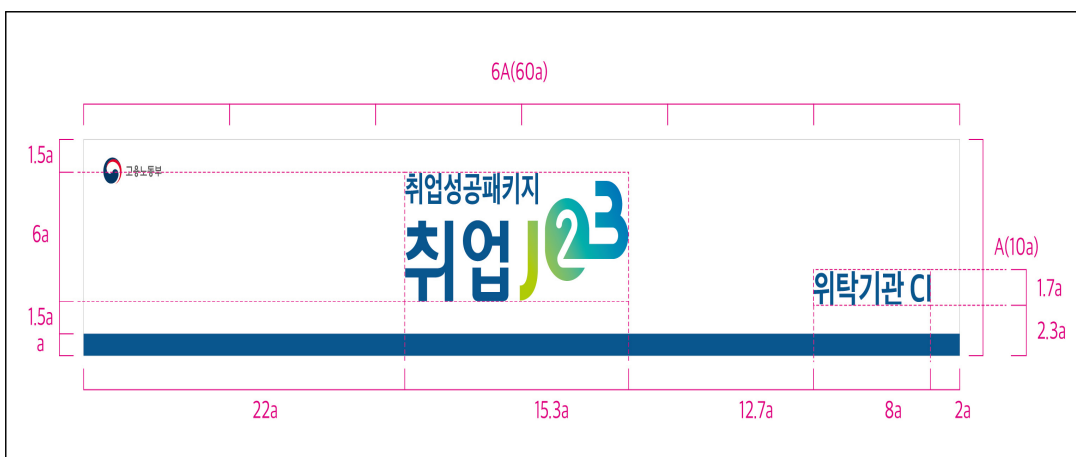
Pantone 381 U
CMYK C40 Y100
RGB R175 G202 B11

취업성공패키지 BI 적용 사인 디자인	
사인 A _ 비례 	
사인A	적용예시
사인 B _ 비례 	
사인B	적용예시
사인 C _ 비례 	
사인C	적용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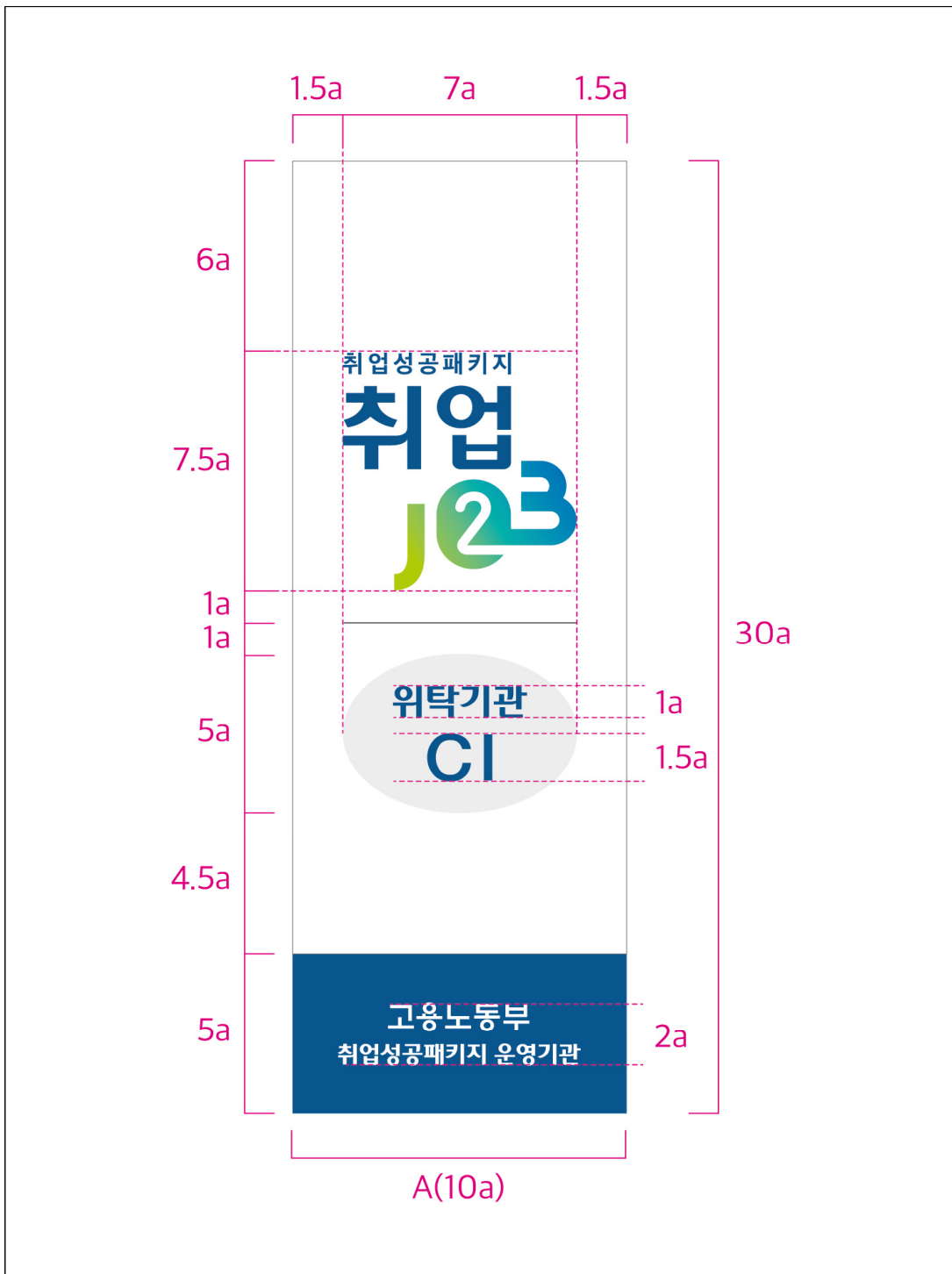
<사인 A 비례>



<사인 B 비례>



<사인 C 비례>



III 참여자 모집 및 배정

1. 참여자 모집

- 민간위탁기관의 자체 모집 가능

2. 참여자 배정원칙 및 절차

- **위탁기관 자체 모집자**: (위탁기관) 신청서 송부 → (고용센터) 참여 적격여부 판단 → (고용센터) 참여요건 충족시 출석 통보 → (고용센터) 향후 프로세스 및 유의사항 안내, 모집한 위탁기관에 배정 → (위탁기관) 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 모집자**: (고용센터) 참여 적격여부 판단, 참여요건 충족시 출석통보, 향후 프로세스 및 유의사항 안내, 민간위탁기관 선택 안내 및 배정 → (위탁기관) 서비스 제공
- **고교 마지막학년 재학생·대학(원)생 최종학기 재학생 등 청년이면서 I 유형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고용센터에서 I 유형 프로세스 및 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되
 - 낙인효과 등을 의식하여 또래와 동일한 II 유형으로 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동의서(서식 52) 등 제출 후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서비스 받을 수 있음 (이때 각종 참여자 수당도 변경된 II 유형 기준으로 지급)
 - * 민법에 따라 20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참여자의 동의 뿐 아니라 친권자(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받아야 함
- **고용센터 모집 참여자의 경우**, 위탁기관 배정 전 참여자에게 위탁기관 위치, 전년도 위탁기관 평가결과 등 위탁기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충분히 안내한 후, 참여자가 최대한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지원
 - 다만, 위탁기관의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 1인당 상시관리인원 한도는 반드시 준수
- 위탁기관에 배정된 참여자가 타 위탁기관으로 이관을 원할 경우 이관조치를 허용

IV 위탁업무 처리 절차

1. 위탁절차 개요

- (고용센터)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위탁대상자를 수탁기관에 의뢰
- (위탁기관) 고용센터로부터 전산으로 의뢰받은 경우 위탁대상자와 최대한 신속하게 유선 통화 조치
 - 참여자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위탁사실을 설명하고, 조속한 시일(1주일 이내) 내 초기 상담일자를 협의·결정
 - 위탁대상자와의 초기 상담일시가 결정된 경우, 전산으로 초기상담일을 기재하여 출석통지 발송(1일전 SMS 발송 병행)

2. 위탁기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용

2.1. 기본원칙

- 위탁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는 전적으로 위탁기관 책임 하에 운용·관리
- 위탁대상자에 대한 개인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제공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현황은 전산시스템에 신속하게 입력 조치
- 2018년도 참여자에 대한 단계별 서비스는 2018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2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세부 운영규정을 준수

2.2. 취업지원 및 추진실적 관리

- (취업지원) 위탁배정이 완료되면 1차 상담 실시 등 자율적인 취업지원 실시
 - 개인상담, 집단 프로그램 참여 및 직업심리검사 실시 등

- * 위탁대상자를 의뢰받은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대상자와의 유선연락 등을 통해 1차 상담일을 협의·결정 조치(1차 상담 불참 시, 2차 초기상담일 기준 5일 내 2차 통보 → 2차 통보 불응 시, 취업지원 중단/신청 취소)

- **(전산입력)**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단계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방문(대면)상담 일시는 즉시 입력
 - 대면상담 시작시 상담시작 시간을 입력하고, 상담종료시 종료시간은 즉시 입력
 - * 워크넷 시스템 개발완료시('18.1월중) 부터 적용
 -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내역은 상담일로부터 3일 이내 전산시스템에 입력
 - 전산입력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입력일로부터 3일 이내 수정 가능
 - 서비스 제공내역 모니터링은 전산에 입력된 시기 및 내용을 기준으로 조치

3. 직업훈련 참여 지원

3.1. 기본원칙

- 위탁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서비스 제공은 위탁기관 담당자와 고용센터 담당자 간 유기적인 협조 하에 실시
-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위탁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관리는 위탁기관의 책임하에 실시

3.2. 훈련참여 요건 강화

- 참여수당이나 취미형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유인을 줄이고 취업 지원 강화
-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자의 불요불급한 훈련 수요를 줄이기 위해 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과에 따른 훈련비 차등 지원

취업률 유형		70% 이상	55%이상 70%미만	45%이상 55%미만	35%이상 45%미만	35% 미만
일반실업자		95%	90%	70%	50%	20%
취성패	II 유형			80%	70%	50%
	I 유형		100%			90%

* 실업자 등 훈련실시규정에 따라 변경 가능

3.3. 직업훈련 참여 지원 절차

- **(훈련추천)** 위탁기관은 참여자에게 직업훈련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훈련상담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고 고용센터에 추천서 송부
- **(계좌 카드 발급)** 고용센터 담당자는 훈련상담결과를 토대로 '실업자 등 직업능력 개발훈련 실시 규정'에 따라 계좌카드 발급

* 훈련 참여 주의사항 등을 참여자에게 필히 고지

- **(훈련참여 과정 관리)** 위탁기관 업무담당자는 계좌카드 발급 이후 위탁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과정관리를 실시하고, 관리 상황 및 상담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실시간 입력

* 위탁대상자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현황에도 관리 상황 내용 포함

4. 참여자 특성에 맞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위탁기관의 경우에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참여자에 대한 취업역량평가 실시
 - 초기상담일에 업무담당자가 직접 취업역량평가 실시
 - 취업역량평가 등급을 참고하여 IAP 수립 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5. 참여자 수당 지급

-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지급 관련 신청서는 위탁기관이 1차 확인하고 일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
- 고용센터는 위탁기관으로부터 ‘각종 수당지급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요건을 확인하여 참여자의 계좌로 지급 조치
 -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고용센터에서 **직접 지급**해야 하고, 위탁기관을 통한 간접지급 금지

6. 행정사항 및 유의사항

6.1. 위탁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 위탁기관이 전담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로서 당해 기관에 전담자에게 OJT를 실시할 경험 있는 전담자가 없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OJT 실시
- 그 밖의 교육·훈련 필요사항은 본부, 컨설팅 담당기관 등에서 실시

6.2.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 업무담당자 간담회 개최

- 위탁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과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
- ⇒ 위탁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전담자의 업무 수행능력 향상, 추진실적 점검 등을 위해 (지)청별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조 강화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세부 프로세스

1.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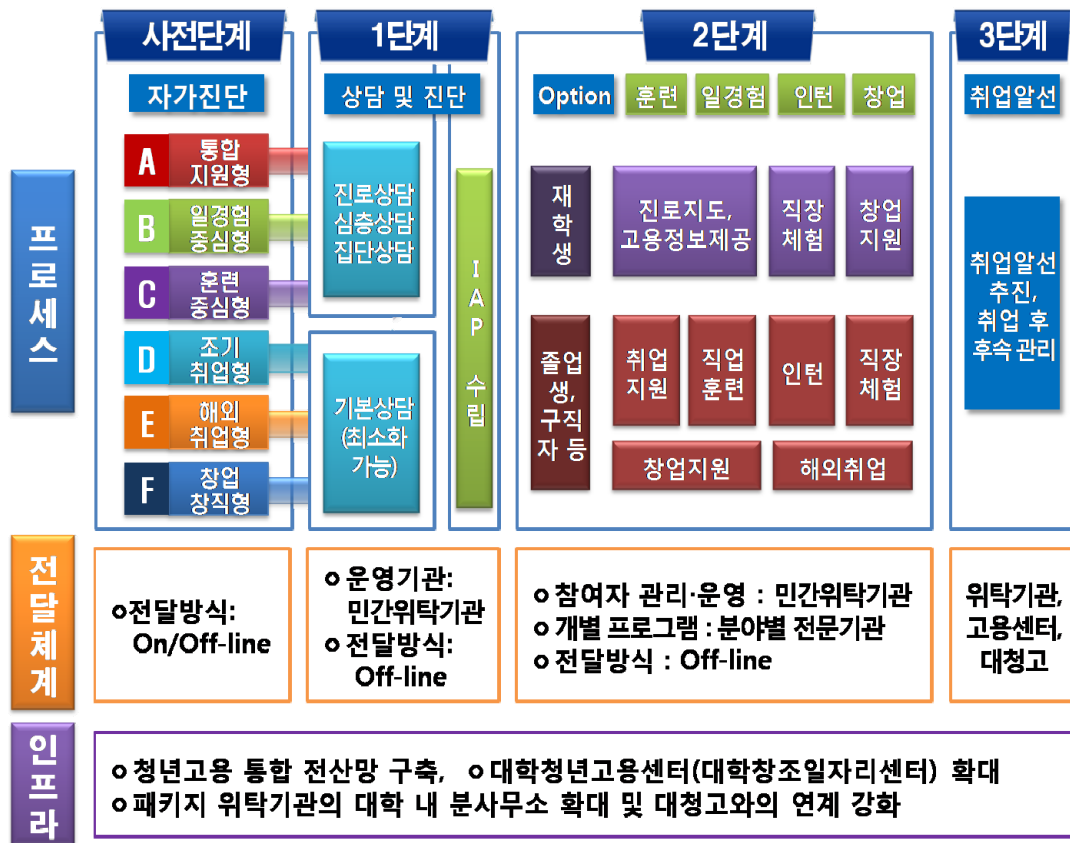
- 정년연장 시행, 세계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청년고용문제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
- 이에 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 청년을 대상으로 보다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세스를 개편하여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2.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기본 운영방향

- 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청년)의 참여대상, 민간위탁을 통한 사업운영방식을 유지 하되,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프로그램 개편
 - 청년층의 니즈 파악을 위한 기초단계로서 자가진단을 신설
 - 훈련중심의 2단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인턴 등 일경험, 해외취업, 창업지원 등의 프로그램 연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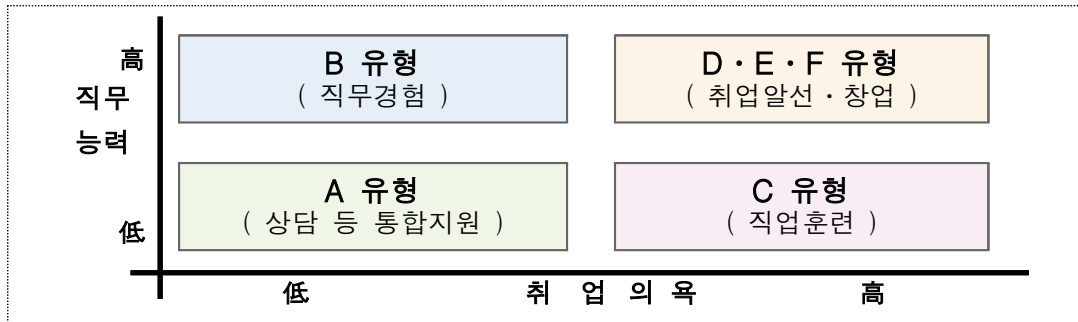
3. 참여대상 : '15년 추경 이후 II유형 청년층 참여대상을 유지

- 만 18세~34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고졸이하 비진학, 대졸이상 졸업자), 영세 자영업자(연 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재학생 및 대학교 마지막 학기 재학생(만15세~34세인 경우)
- 맞춤형 특기병의 경우 육·해·공군 대상



〈1〉 사전단계

- Off-line(고용센터, 대청고), On-line(인터넷), 모바일(스마트폰) 등을 통해 회원 가입, 개인정보 입력 후 사업 참여
 - 로그인 후 참여자가 스스로 취업지원 유형에 대한 자가진단 실시[On-line(인터넷), 모바일(스마트폰)을 통해 실시]
-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취업의욕 및 직무능력을 기준으로 6가지 유형으로 분류, 향후 취업지원 경로 설정에 활용(사전단계 유형별 세부 취업지원 서비스, 참고 4)



- * ① A유형(통합지원형): 1단계(직업의욕고취)→ 2단계(훈련, 일 경험)→ 3단계(집중 취업알선),
- ② B유형(일경험중심형): 1단계→ 2단계(인턴, 일경험)→ 3단계
- ③ C유형(훈련중심형): 1단계→ 2단계(직업훈련)→ 3단계,
- ④ D유형(조기취업형): 1단계 상담 후 바로 3단계로 연계,
- ⑤ E유형(해외취업형): 1단계 상담 후 인력공단 등 해외취업지원 기관으로 연계
- ⑥ F유형(창업창직형): 1단계 상담 후 중기청,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으로 연계

* 청년취업성공패키지의 자가진단에 대해서는 연구용역('17년 상반기)을 통해 질문문항, 프로세스 등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예정

○ 참여자의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유형(①on-line·모바일 접속, ②고용센터 직접방문, ③위탁기관 방문)에 따라 사전단계 프로세스 진행(참여방식에 따른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흐름도, 참고 2)

- ①on-line·모바일 접속의 경우 자가진단 실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도록 안내 하며, 고용센터에서 자격심사후 위탁기관으로 연계
- ②고용센터 직접방문 시 센터 내 컴퓨터를 활용하여 참여자가 직접 자가진단을 실시하도록 안내, 자격심사 후 위탁기관으로 연계
- ③위탁기관 방문 시 위탁기관 내 컴퓨터를 활용하여 참여자가 직접 자가진단을 실시하도록 안내, 위탁기관에서는 신청서를 고용센터로 송부하고 고용센터에서는 참여자 자격심사 후 위탁기관으로 연계

* 대학창조일자리센터(또는 대학청년고용센터)로 방문 시 대학창조일자리센터(또는 대학 청년고용센터)에서는 우선 대학내 위탁기관 분사무소로 연계한 후 사전단계 진행

VI 위탁수수료 지급

1. 위탁수수료 지급 기준

- 위탁수수료는 '기본금'과 '취업인센티브'로 분류·지급

【 위탁수수료 지급 단가 】

◆ 취업역량평가(A,B 등급-취업역량 낮음) (단위: 만원)

구 분	기본금	임금 연동 취업인센티브			
		~165미만	~200미만	~230미만	230이상~
6월 이내 취업	30	70	90	110	160
12월 이내 취업	40	50	70	90	140
15월 이내 취업	40	30	50	70	100

* 3개월 이상 근속시 인센티브 지급

◆ 취업역량평가(C,D 등급-취업역량 높음) (단위: 만원)

구 분	기본금	임금 연동 취업인센티브			
		~165미만	~200미만	~230미만	230이상~
6월 이내 취업	30	50	70	90	140
12월 이내 취업	40	30	50	70	120
15월 이내 취업	40	10	30	50	100

* 3개월 이상 근속시 인센티브 지급

◆ 취업인센티브 지급단가 적용시점: '18년 취업인센티브 지급대상자부터 적용

1.1. 기본금

1.1.1 (일반 위탁기관) 참여자 1인당 최대 40만원

- 1단계 서비스를 위탁대상자에게 제공하고 IAP 수립했을 때 1회차 기본금 30만원을, 초기 상담일 이후 6개월 경과한 시점에도 IAP를 수립했던 당해 참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6개월 경과 후 2회차 기본금 나머지 10만원 지급
- 다만, 일반계고 재학생으로 1·2단계 통합과정(2경로) 참여자의 경우 IAP수립 시 1회차 30만원, 2단계 종료시 2회차 10만원 지급

1.1.2. (직업훈련 겸업기관) 참여자 1인당 최대 25만원

- 취업성공패키지와 직업훈련을 겸업하는 위탁기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겸업 훈련기관의 직업훈련(2단계)에 연계한 경우 해당 참여자에 대한 기본금은 1인당 25만원 지급(취업알선 등 중복되는 업무비중을 고려, 40만원→25만원)

【 직업훈련 겸업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조정 】

◆ 위탁사업비 단가 조정 대상

- 취업성공패키지와 직업훈련을 겸업하는 위탁기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겸업 훈련기관의 직업훈련(2단계)에 연계한 경우 해당 참여자 1인당 기본금은 25만원 지급

◆ 직업훈련 겸업기관의 범위

- ①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과 직업훈련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비영리법인은 고유번호)가 동일한 경우
- ② 법인이 아닌 사업체로서 사업자등록번호(비영리법인은 고유번호)는 다르나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과 직업훈련기관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 ③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과 직업훈련기관이 동일 법인에 속하는 경우

◆ 위탁사업비 지급 방법

- ① 직업훈련 겸업기관에 대한 기본금은 일반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다만, 직업훈련 겸업기관에 직업훈련(2단계) 연계사실이 추후 확인되는 경우 취업인센티브 등 **향후 지급될 위탁사업비에서 상계**처리**

* IAP 수립시 1회차 기본금 30만원 지급, 초기상담일 이후 6개월 경과시점에도 IAP를 수립한 참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6개월 경과 후 2회차 기본금 나머지 10만원 지급

** 대상자 1인당 기본금 25만원이 되도록 상계처리로 반환조치(직업훈련 겸업기관으로 2단계 연계 확인시점에 지급된 기본금이 30만원이면 5만원을 상계처리로 반환, 40만원이면 15만원을 상계처리로 반환)

- ② 적용시기 및 대상: **2018년 2월 1일 이후** 2단계 직업훈련 연계자부터

* 직업훈련 겸업기관 여부 판단은 '18년 약정체결시 뿐만 아니라 연중 직업훈련 겸업기관으로 변경시 즉시 적용

◆ 직업훈련 겸업기관에 대한 현황조사 및 지도점검

- ① 2018년도 위탁기관 약정체결시 2단계 직업훈련 연계 현황조사표 성실입력 지도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동의서 징구

* 대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여부 및 출자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세·법인세 등 납세관련 증빙서류 등

- ②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2단계로 연계할 때 워크넷 취업성공패키지 전산망에 직업훈련연계 현황을 입력하여 기본금 감액대상자 관리

<직업훈련연계 현황조사표(예시)>

참여자명	훈련 기관명	2단계 연계 직업훈련기관 유형					기타 기관
		상기 직업훈련 검업기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a)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과 관련된 직업훈련기관**		
		동일사업자 번호	동일대표	동일법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소유(b)	(a)+(b)가 50% 이상 출자한 기관	
김○○	A사	✓					
이○○	B사				✓		
박○○	C사						✓

* 위탁사업비 조정 대상

** 위탁사업비 합리화 등 향후 위탁사업 운영 계획 수립시 활용 예정

- ③ 2018년도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정기·수시)시 2단계 직업훈련 연계 현황이 사실과 다르게 입력되었는지 지도·점검 실시
- ④ 지도·점검시 별도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위 ①의 증빙자료를 통해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부적정 내용 확인시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위반시 조치기준에 따라 불이익 조치

1.1.3. (대학 내 사무소 설치 기관) 참여자 1인당 최대 30만원

- 시설비 및 사업운영비 절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대상자 1인당 기본금은 30만원을 지급(40만원→30만원)하되, IAP수립시 일괄 지급

1.1.4. (직업훈련 검업기관이 설치한 대학 내 사무소) 참여자 1인당 최대 30만원 지급하되, 직업훈련 검업기관으로 2단계 연계시 25만원 지급

- 시설비 및 사업운영비 절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대상자 1인당 기본금은 30만원을 지급(40만원→30만원)하되, IAP수립시 일괄 지급

- 다만, 직업훈련 겸업기관이 설치한 대학 내 사무소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겸업 훈련기관의 직업훈련(2단계)에 연계한 경우 해당 참여자에 대한 기본금은 1인당 25만원 지급

1.1.5.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본금 추가지급) 집단상담프로그램(단기 제외) 운영시, 참여자 1인당 기본금 10만원 추가 지급

1.2. 취업인센티브

- 참여자가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피보험 자격취득시 신고된 월평균 보수** 및 초기상담 이후 조기취업 정도를 동시에 고려해 '취업 인센티브'를 지급
- 참여자가 더 나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초기상담 이후 **조기취업의 정도와 취업한 일자리의 임금수준, 참여자의 취업역량**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급
- 아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①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일자리에 취업, ②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 ③ 취업 후 3개월 경과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 ①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
-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 ③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일자리
- ④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으로서 제한이 되지 않는 일자리 취업 등

- 다만, 참여자가 **파견업체***에 취업한 경우는 취업성공인센티브를 **부지급**함

-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허가받은 파견업체(근로개선지도과 등을 통해 확인가능) 및 고용보험전산망상 피보험자격 취득사업장의 업종이 **인력공급업**(예: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 등)인 사업체
- * 각 고용센터는 근로개선지도과 등에 파견업체 명단을 요청하여 상시 관리하고 수당 지급시 파견업체로 확인되는 경우 취업인센티브 부지급 처리

- (일반참여자 대상) 취업인센티브 지급

◆ 취업역량평가(A, B 등급-취업역량 낮음)

(단위: 만원)

구 분	임금 연동 인센티브			
	~165미만	~200미만	~230미만	230이상~
6월 이내 취업	70	90	110	160
12월 이내 취업	50	70	90	140
15월 이내 취업	30	50	70	100

* 3개월 이상 근속시 인센티브 지급

◆ 취업역량평가(C, D 등급-취업역량 높음)

(단위: 만원)

구 분	임금 연동 인센티브			
	~165미만	~200미만	~230미만	230이상~
6월 이내 취업	50	70	90	140
12월 이내 취업	30	50	70	120
15월 이내 취업	10	30	50	100

* 3개월 이상 근속시 인센티브 지급

○ (일반계고 재학생 참여자 대상) 취업인센티브 지급

- 졸업연도 1.1.부터 6개월 이내 취업자에 대하여 지급

* 일반계고 비진학 참여자의 경우 취업역량이 낮고, 참여기간이 1년 이상을 감안, 초기 상담일 이후 12개월 이내 취업자기준 일괄 적용

(단위 : 만원)

일반계고 재학생 대상 취업인센티브(패키지 II)			
~ 165 미만	~ 200미만	~ 230미만	230이상 ~
50	70	90	140

기간만료 후 3개월 이내 취(창)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 기간만료 후 3개월 이내 취(창)업자가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민간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지급 대상

【 자체 채용 시 취업 인센티브 지급 여부 】

□ 위탁기관의 자체 채용 판단기준

- 자체 채용이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민간위탁사업자가 위탁받은 참여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체의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말함
 - ① 당해 민간위탁업체
 - ② 당해 민간위탁업체 대표자가 경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체
 - ③ 당해 민간 위탁업체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경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체
 - ④ 당해 민간위탁업체 또는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체

□ 자체 채용시 취업 인센티브 지급 여부

- 민간위탁기관이 해당기관의 참여자를 자체 채용할 경우 취업인센티브 부지급

□ 창업자에 대한 취업인센티브 지급 방식 관련

- 창업자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자료를 토대로 판단
 - 자료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의 ‘**㉠** 사업소득명세서’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 i) 주업종코드(㉠)가 IAP 및 상담과정에서 참여자가 하고자 했던 분야의 창업
 - ii) 소득금액(㉠: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으로 간주하고, 사업자신고일을 취업시점으로 간주하여 취업인센티브 지급

2. 위탁수수료 신청 및 지급

2.1 기본금

- (위탁기관) 위탁대상자에 대해 IAP를 수립한 날의 다음달 5일까지 「민간위탁기관 위탁수수료 지급 신청서(서식 48)」 및 「위탁수수료 지급 신청 총괄표(서식 25)」를 작성, 고용센터에 제출

- 위탁인원 중 IAP 수립 이후 중도탈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도탈락일의 다음 달 위탁수수료 지급 신청시 「민간위탁기관 기본금 반환 신고서(서식 49)」 및 「기본금 반환 대상자 총괄표(서식 50)」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 * 위탁수수료 지급 신청 월의 전(前)월에 발생한 중도탈락자는 모두 총괄표에 기재(IAP 수립 2월 초과자도 기재)
 - * IAP 수립 직후 중도탈락이 발생되어 기본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본금 지급 신청과 동시에 기본금 반환 대상 신고
- **(고용센터)** 위탁기관으로부터 「민간위탁기관 위탁수수료 지급 신청서(서식 48)」가 제출되는 경우 지급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지급

2.2 취업인센티브

- **(한국고용정보원)**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DB상 취업 인센티브 수급요건을 갖춘 참여자 정보를 고용센터와 수탁기관에 제공
 - * 고용보험 DB상 개인별 보수총액, 소정근로시간, 자격취득일, 계약 종료일 등
- **(위탁기관)**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매월 20일까지 고용센터에 취업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식 48)
- **(고용센터)** 수탁기관으로부터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취업 인센티브 지급

☞ 참여자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기본금 및 취업인센티브 지급

- 고용센터에서 배정받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1단계 수료 후 취업처리 된 경우 기본금 및 취업인센티브 지급 방법
- 고용센터에서 참여자에 대한 기본요건 확인 후 참여자를 위탁기관에 배정하고 있는바, 위탁기관에서 1단계를 적정하게 운영하였으나, 참여자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위탁기관의 고의·과실이 없다면) 위탁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기본금은 지급하되, 취업인센티브는 부지급(참여자의 취업은 위탁기관의 서비스 제공 결과로 볼 수 없음)

3. 위탁수수료 관리 및 사용

- (기본금 전용계좌 사용) 위탁수수료 중 기본금은 수입 및 지출일자 및 금액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위탁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금 지출은 해당 계좌에서 직접 지급하는 등 투명하게 관리
- (기본금 사용) 위탁수수료 중 기본금은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이 가능

* (기본금 사용처의 주요 예시) 취업성공패키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건비, 업무담당자 이외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업무분장, 수행범위 및 수행내용 등 확인 필요, 업무분담 비율 고려), 위탁사업 수행 공간(전용공간이 아닌 경우 면적비율 고려)에 대한 시설관리비, 유지·보수비, 인테리어비, 문구 및 물품구입비, 전기 및 통신사용료, 프로그램 운영시 참여자 제공 다과 및 간식비,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업무담당자 교육비 및 워크숍 경비 등

- 기본금은 해당 연도 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위탁약정체결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2년 후 익월 중 기본금 계좌에서 사용 잔액*을 인출가능

* 인출가능금액(사용 잔액): 해당 연도 총 지급액 - 해당 연도 총 지출액

* (적용예시) 2015년도 위탁약정체결 기관의 경우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 후 익월인 2018년 1월 중 기본금 계좌에서 2015년 사용잔액(수입-지출) 인출 가능

4. 위탁수수료 반환 및 회수

- (부정·부당수급) 위탁수수료를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허위 등으로 지급받은 부분에 한하여 지급된 위탁수수료 전액 반환 조치
- (중도탈락·이관) 기본금은 원칙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종료시까지 위탁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위탁기관에 지급한 것이므로 IAP수립 후 2개월(월력기준) 이내에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위탁인원 1인당 기본금 20만원 반환

* 서비스 중단 사유: 중도탈락, 타 위탁기관 등에 이관조치, 약정해지 등

- 다만, 위탁인원 1인당 30만원을 지급받은 대학내 사무소 설치기관은 20만원을, 1인당 25만원을 지급받은 직업훈련 겸업기관은 15만원을 반환하되, 직업훈련 겸업기관이 1인당 3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20만원 반환

- * 일반 위탁기관이 IAP 수립 후 2개월 이내에 참여자 중도탈락시 1인당 10만원을 지급 받게 되는 것과 동일하도록 대학내 사무소 및 훈련겸업기관에 대한 반환금액 결정

- * (IAP 수립전) 기존 위탁기관 기본금 미지급, 참여자가 이관된 기관에 기본금 지급
- * (IAP 수립 후 2개월 내) 기존 위탁기관이 수령한 기본금 중 20만원(기본금 최대 지급액의 1/2)을 반환 받아 이관기관에 지급
- * (IAP 수립 후 2개월 경과 후) 이관 기관에 기본금은 미지급하나 참여자 취업시 취업 인센티브 지급

- **(약정해지)** 약정해지로 인해 IAP 수립 후 2개월(월력 기준) 이내에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인원 1인당 기본금 20만원 반환

- * 반환금은 별도로 전산망에 입력

- 약정해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정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수수료에 대한 정산 실시

VII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의 부정수급 조치

1. 위탁기관의 부정수급·부당인출 유형

1.1. 부정수급·부당인출의 개념

- (부정수급) 위탁수수료를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지급 받으려한 행위
- (부당인출) 위탁수수료 중 기본금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자 인출(타 계좌이체 포함)한 경우

1.2. 부정수급·부당인출 유형

〈부정수급 유형〉

- 참여자의 취업(예정) 사실을 알고도 사업에 참여시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1단계 참여 중 참여자의 취업이 확정된 사실을 알고도 IAP를 수립한 경우
- 상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전산망에 등록(기재)한 경우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서 정한 상담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취업성공 패키지 담당자의 휴가 또는 교육기간 중 대체 상담을 실시한 경우
-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을 실제 운영하지 않거나 운영기준에 맞지 않게 실시하고 위탁수수료를 수령하거나 수령하고자 한 경우
-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각종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기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부당인출 유형〉

- 위탁수수료 중 기본금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자 인출한 경우
- 위탁수수료 중 기본금을 별도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지 않고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거나 관리한 경우

2. 부정수급 등 위탁약정서 위반에 따른 조치

2.1. 부정수급·부당인출액 반환

- 위탁기관이 고의로,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 환수
- 위탁기관이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및 지침, 위탁약정서를 위반하여 위탁수수료 중 기본금을 부당하게 인출하거나 사용한 경우 위탁수수료 전용 계좌로 해당 금액 반환

2.2. 부정수급·부당인출에 대한 조치

2.2.1.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약정해지
-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 최근 3년(최종 처분시점 기준) 이내에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이 있는 경우 약정해지
 - 최근 3년(최종 처분시점 기준) 이내에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이 없는 경우 경고

2.2.2. 부당인출

- 기본금을 위탁사업에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경고

- 기본금을 별도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지 않고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인출한 경우 주의

2.2.3. 횡령

- 취업성공패키지 대표자 또는 직원(기타 관계자 포함) 등이 위탁수수료를 횡령하거나 유용한 경우 약정해지
 - 다만, 위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하였으나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가 위탁수수료를 횡령하거나 유용한 경우는 경고조치

2.3. 형사고발

- 위탁기관·브로커 등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부당하게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거나 위탁기관 대표가 위반행위에 직접 가담하는 등 부정수급의 의도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고발)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비를 위탁기관 대표자 또는 직원(기타 관계자 포함)이 횡령하는 등 위탁사업비 사용에 있어 중대한 문제가 발생된 경우 사안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사의뢰(고발) 가능

VIII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1. 목적

-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이 위탁약정서,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기타 운영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점검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 도모

2. 지도·점검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 제13조(감독)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위탁약정서 제10조(위탁약정해지 및 관련 조치), 제14조(운용지침 등의 준수), 제15조(점검 및 평가)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사후관리 위탁약정서 제12조(운용지침 등의 준수), 제13조(사업장 점검 등)
- 취업성공패키지 업무 매뉴얼 및 기타 운용지침

3. 지도·점검 대상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센터와 위탁약정서를 체결한 민간위탁 기관 계약 당사자

4. 지도·점검의 종류

- 정기 지도·점검
 -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민간위탁기관(사후관리기관 포함)을 모두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반기별 1회(연 2회 실시) 계획 수립 후 실시
- 수시 지도·점검
 - 정기 및 특별 점검 외 감사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조사 또는 수사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획 수립 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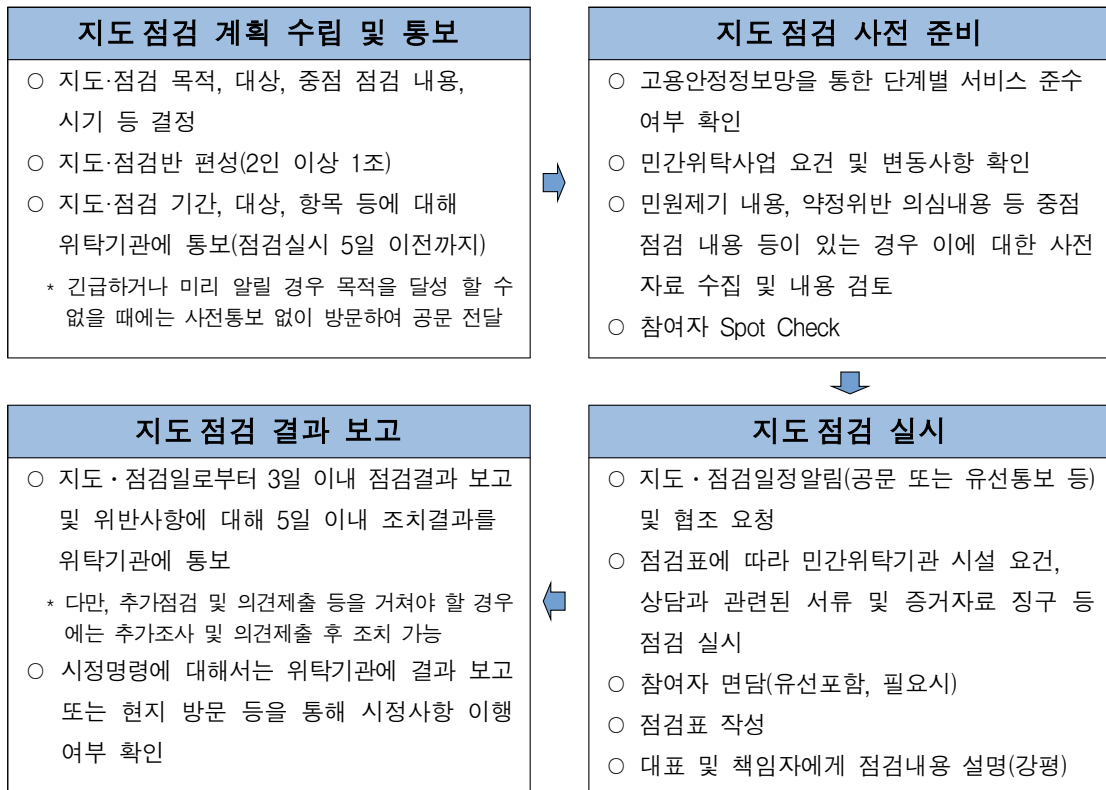
- 다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 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고 지도·점검 후 결과보고서로 갈음 할 수 있음

○ 특별 지도·점검

-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탁수수료 부정수급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민간위탁기관에 대하여 본부의 소관 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시하여 실시
- 지도·점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본부에서 수립·시달하며, 필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자체 계획 수립 가능

5. 지도·점검 절차

5.1. 지도·점검 절차



5.2.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통보

5.2.1. 공통 사항

- 민간위탁기관의 최근 2년간 조치내역, 평가 결과, 제기된 민원 등을 참고하여 효과적인 지도·점검 계획 수립
- 최소 2명 이상으로 지도·점검반을 구성

5.2.2. 정기지도·점검 계획

- 관할 센터 내 운영 중인 민간위탁기관(사후관리기관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센터 별로 반기 1회(연 2회) 지도·점검 시기, 방법, 중점 점검사항을 중심으로 계획
- 민간위탁기관에 지도·점검에 대한 취지, 대상, 기간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협조 유도 및 지도·점검의 공정성 등 확보

5.2.3. 수시지도·점검 계획

-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도·점검 실시이유, 대상, 기간, 내용 방법 등을 중심으로 계획

1. 감사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수사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2. 약정위반사항에 대한 민원제보 등이 발생한 경우
3. 고용안정정보망 전산입력 내용 및 제출 서류 검토 등을 통해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수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다만, 전산입력 내용 및 제출서류 검토 등으로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또는 단순한 민원성 제보에 대한 확인인 경우는 계획수립을 생략할 수 있고 지도·점검 후 결과보고서로 같음

5.2.4. 특별지도·점검 계획

- 본부에서 수립·시달된 지도·점검 계획(지도·점검 목적, 대상 선정기준, 기간, 내용, 방법)에 따라, 필요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자체 계획 수립 가능

5.2.5. 지도·점검 민간위탁기관 통보

- 현장 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일시, 대상, 항목, 준비서류 등을 위탁기관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점검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하여 점검에 대한 협조 공문 전달

5.3. 지도·점검 사전 준비

5.3.1. 관련서류 내용 검토

- 민간위탁사업 대표자, 소재지 및 위탁 사업자 요건 및 사업계획서 내용 확인
- 민간위탁기관의 직업안정법령 위반 여부 확인
- 최근 2년간 민간위탁기관에서 발생한 약정위반사항에 따른 조치사항 및 결과 확인

5.3.2. 고용안정정보망을 통한 단계별 서비스 준수여부 확인

- 점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단계별 참여자, 취업자등 현황 확인
- 참여대상자에 대한 단계별 서비스 제공 주기(회수) 준수 여부 확인

5.3.3. Spot Check

- 지도·점검 대상 민간위탁기관 위탁대상자의 일부를 선정하여 단계별 서비스 진행여부 적정성 확인(Spot Check 시작일 현재 진행인원의 3%)
 - Spot Check는 점검 전 확인이 원칙이나, 사정에 따라 점검 후 실시 가능

5.3.4. 기타 내용 확인

- 외부 기관 조사 요청내용 및 민원제기 내용 등 중점 점검 내용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전 자료 수집 및 내용 검토
- 이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및 전산내용 검토

5.4. 지도·점검 실시

5.4.1. 기본 내용

- 현장방문을 통한 지도·점검시에는 가급적 사전에 민간위탁기관에 점검일정 통지 및 협의 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하여 점검에 대한 협조 공문을 전달
- 지도·점검은 현장점검이 원칙이나, 전산입력 내용 및 제출서류 검토 등으로 위반 행위가 명확히 확인되어 별도의 현장점검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점검으로 현장 점검을 대체 할 수 있음
- 현장 방문시 신분증을 제시한 후, 지도·점검의 목적, 방법, 일정 등에 대해 설명 및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시 안내문(공문) 전달
- 민간위탁기관의 사업요건, 단계별 서비스 관련서류, 기본금 사용에 대한 적정성 등 점검 항목에 대한 검토 및 현장 확인(필요시 관련자 면담 진행)
- 점검표 작성 및 대표자(또는 책임자)에게 점검내용 설명(강평)

5.4.2. 위탁약정서 위반사항 적발 시

- 위탁약정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민간위탁기관의 대표자(또는 책임자) 및 위반행위자로부터 확인서 징구
- 확인서에는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확인서 서명을 거부하거나 증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확인서에 그 사유를 명시
- 지도·점검 결과 적발된 약정위반 사항에 대하여 대표자(또는 책임자)에게 위반 내용을 설명하고, 개선사항 발생 시 조치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도
- 대표자 등이 위반행위를 인정한다고 하여 서면 진술서만 징구하고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추후 진술반복 및 증거인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증거확보

5.5 지도·점검 결과 보고

5.5.1. 지도·점검 복명

- 지도·점검 후 3일 이내에 지도·점검 결과를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 점검 당시 현장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대표자·책임자 확인서 및 징구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

5.5.2. 위반사항 조치 결과 통보 및 전산 입력

- 위반사항이 있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후 5일 이내에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 결과 통보
 -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계획서 또는 재발방지계획서 제출도 병행하여 통보
 - 추가조사 및 의견 제출을 거쳐야 하는 경우 등 5일 이내 조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장복명서 등에 사유를 명시
- 지도·점검 결과를 고용안전정보망에 입력

5.5.3. 조치 결과 확인 및 보고

- 위반행위 조치와 더불어 시정명령 및 개선계획서(또는 재발방지계획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적정여부 검토 후 종결
 -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조치기준에 의거 “약정해지” 조치
 - 개선계획서 또는 재발방지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치 기준(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의거 “경고” 조치

6. 자료요청 및 위원회

- 지도·점검 담당자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민간위탁기관 관계자와 참여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청년장학재단 등 유관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 ‘기타 중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와 같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기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또는 지도·점검 전반에 대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p21. 운영위원회 규정 참조)에 의견을 묻고 그 결정을 따를 수 있다.

7. 위탁약정서 및 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

7.1. 일반기준

- 민간위탁기관(사업자)이 위탁약정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개별 기준”에 따라 조치하며, 기타 개별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반행위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한 위반행위의 조치기준 적용
-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하는 위탁 수수료는 전액 환수
- 하나의 위반사항이 동시에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기준 적용
- 지도·점검일 기준 동일 위반행위가 다수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조치 1건으로 처리
 - 다만, 개인정보 등의 유출하였을 경우에는 발생건수 별로 조치
- 점검일 기준 다수의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위반행위별로 조치기준 적용
- 위 각 항목의 ‘위반행위’라 함은 2. 개별기준표의 구분 1~5의 ①~⑦ 각호를 의미하고, ‘위반사항’이란 개별기준에 열거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위탁약정서 내용 및 기타 관련법, 지침 위반 등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수행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
- ‘18년 이후 약정 체결한 민간위탁 기관 중 ‘17년 이전 분사무소였던 기관은 ‘17년 이전 처분내역 승계(기관 코드를 기준으로 함)

7.2 개별기준

구 분	위 반 행 위	조 치 기 준
1. 위탁수수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횡령 및 위탁수수료의 부당인출 등 목적 외 사용을 한 경우	① (부정수급)부정수금액 500만원 이상	약정해지
	② (부정수급)부정수금액이 500만원 미만으로 최근 3년(최종 처분시점 기준) 이내에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이 있는 경우	약정해지
	③ (부정수급)부정수금액이 500만원 미만으로 최근 3년(최종 처분시점 기준) 이내에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이 없는 경우	경고
	④ (횡령)취업성공패키지 대표자 또는 직원 등이 위탁수수료를 횡령한 경우	약정해지
	- 다만, 위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가 위탁 수수료를 횡령한 경우	경고
	⑤ (부당인출) 기본금을 위탁사업에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지출 이외의 목적으로 부당인출한 경우	경고
	⑥ (부당인출) 기본금을 별도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지 않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인출한 경우	주의
2. 위탁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	① 월말 기준 위탁인원 대비 '중도탈락 인원' 실적이 연속하여 2월 이상 15%를 초과하는 경우(신규 위탁약정을 체결한 위탁기관은 체결일로부터 3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적용)	약정해지
	②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또는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약정해지
	③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약정해지
	④ 약정서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위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한 경우	약정해지
	⑤ 참여자 모집과정에서 인센티브, 학교 발전기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참여자 모집과 관련한 위탁기관과 타 협업기관(참여자 포함)간의 금품 거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약정해지
	⑥ 위탁사업자 요건을 위반한 경우	경고
	⑦ 위탁사업자 요건은 갖췄으나, 변경사항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의

구 분	위 반 행 위	조 치 기 준
3.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	① 개인정보 등의 유출로 인해 참여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약정해지
	② 개인정보 등의 유출이 발생한 경우	경고 (발생 건당)
4.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상담서비스를 고의 거짓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 참여대상자별 역량평가를 허위로 조작한 경우 • 위탁된 참여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상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으로 허위 서류 작성 또는 전산 기재 • 집단상담 출석부나 참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업무담당자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상담 및 집단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 계획된 집단상담 시간을 줄이는 등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 민원 신청서류 등을 허위, 대리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사후 알선 등 허위 취업알선을 한 경우	경고
	②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내용의 전산기록·관리 등을 해태한 경우	주의
	③ 초기상담 지연 실시하거나 단계별 서비스 주기 및 횟수를 위반한 경우	주의
	④ 기타 중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경고
5. 기타	① 2년(최종 처분일기준) 이내에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약정해지
	②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경고
	③ 기타 중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경고
	④ 기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주의
	⑤ 취업성공패키지 별칭, 로고, 간판 등 미사용한 경우	주의

*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시(경고, 주의)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병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약정해지

* 기타 중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기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 있음

IX 민간위탁사업 평가

※ '18년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평가계획은 별도 지침 시달 ('18.2월 중)

2018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 발행일 2018년 1월

■ 발행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실

■ 편 집 고용서비스정책관 권 혁 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과장 윤 영 귀

서기관 장 중 서

사무관 조 남 식

사무관 김 원 빈

주무관 강 현 경

■ 도 움 (지방관서 담당자) 서울 전중원, 서울강서 박경분,
인천 이장근, 대구 장현우, 광주 윤영호

■ 전 화 (044)202-7379

■ 인 쇄 문중기획 (044)858-8580
